

기
통/48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변천 자료집

2007. 8



B57653

목 차

실시연도별 총조사 항목리스트 ('60년 이후)	1
---------------------------	---

인구에 관한 항목

1. 성명	5
2. 본관	7
3. 가구주와의 관계	10
4. 성별	14
5. 연령	16
6. 교육정도	19
7. 혼인상태	23
8. 종교	26
9. 출생지	28
10. 1년전 거주지	31
11. 5년전 거주지	34
12. 통근학여부	37
13. 통근학지	37
14. 이용수단	37
15. 소요시간(출발도착시간)	37
16. 초혼연령	43
17. 총출생아수	45
18. 생존아수	45
19. 사망자녀수	45
20. 경제활동상태	49
21. 종사상의 지위	57

22. 산업	61
23. 직업	65
24. 개인소득	69
25. 심신장애	73
26. 전공학과	77
27. 아동보육실태	80
28. 고령자 생활비 원천	82
29. 컴퓨터 활용 상태	84
30. 인터넷 활용 상태	86
31. 개인휴대용 통신 기기	88
32. 현직업 근무 연수	90
33. 자녀 거주 장소	92
34. 남북이산가족	93
35. 근로 장소	94
36. 추가 계획 자녀 수	95

가구·주택에 관한 항목

37.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96
38. 가구 구분	103
39. 점유 형태	112
40. 사용방수	120
41. 식수종류(상수도)	125
42. 취사연료	128
43. 난방연료	131
44. 난방시설	133
45. 문화시설 및 가재(정보통신기기)	139
46. 주거시설형태	142
47. 임차료	149

48. 가구소득	153
49. 외벽재료	155
50. 지붕재료	159
51. 연건평	162
52. 대지면적	165
53. 건축년도	168
54. 총방수	172
55. 동거가구수	176
56. 거주가능가구수	178
57. 편익시설수	179
58. 조명시설	183
59. 거주기간	185
60. 거주층	187
61. 자동차 보유 대수	189
62. 주차 시설	192
63. 주인가구 및 주택 소유 여부	194

실시연도별 총조사 항목리스트('60년 이후)

□ 인구항목

항목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총 계	37	15	31	28	39	30	45	28	50	44
	전수	37	9	15	11	23	30	33	17	20	21
	표본	0	6	16	17	16	0	12	11	30	23
	기본항목 계	10	9	8	6	7	7	6	7	8	8
기본항목	성명	●	●	●	●	●	●	●	●	●	●
	본관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	●
	성별	●	●	●	●	●	●	●	●	●	●
	연령(생년월일)	●	●	●	●	●	●	●	●	●	●
	교육정도		●								
	졸업여부	●	●	●	●	●	●	●	●	●	●
	취학여부	●	●	●							
	수학년수	●									
	전공학과					○					○
	문맹여부	●	●	●							
	혼인상태	●	●	●	●	●	●	●	●	●	●
	종교						●		●		●
	국적	●									
	남북이산가족										●
	인구이동 계	1	-	2	1	6	3	7	5	7	5
해이동	출생지	●		○		○	●	●	○	●	
	전 거주지										
	1년전 거주지					○	●	○		○	
	5년전 거주지			○	○	○	●	○	○	○	○
	통근(학) 여부					○		●		○	○
	통근(학)지					○		●	○	○	○
	통근(학) 시간							●	○	○	○
	이용교통수단					○		●	○	○	○

※ ● 전수조사, ○ 표본조사

항목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출산력	출산력 계	1	2	1	2	2	3	4	-	1	3
	초혼연령				○	○		○			○
	총출생아수	●	○	○			●	○		○	
	사망자녀수				○	○	●	○			○
	동거자녀수										○
	별거자녀수										○
	생존아수						●	○			○
	추가계획자녀수										○
* 지난1년간 출생아수		○									
경제활동	경제활동 계	7	4	6	10	7	3	4	4	5	5
	경제활동상태			○	○	○	●				
	취업여부		○	○	○	○		○	○		○
	구직(활동)여부	●			○	○				○	○
	취업가능성										
	비구직이유	●									
	주요한일	●									
	조금이라도 한일	●									
	근로장소										○
	취업형태				○	○					
	취업시간				○						
	취업기간(개월)			○							
	추가취업희망				○						
	종사상의 지위	●	○	○	○	○		○	○	○	○
	산업	●	○	○	○	○	●	○	○	○	○
	직업	●	○	○	○	○	●	○	○	○	○
	개인소득				○						
현직업근무년수									○		
활동제한·고령·기타	활동제한·고령·기타 계	-	-	-	-	1	-	-	-	8	3
	활동제한					●					○
	고령자생활비원천(60세이상)										○
	자녀거주장소(60세이상)									○	
	생계수단(60세이상)									○	
	주부양자(60세이상)									○	
	거동불편여부(60세이상)									○	
	아동보육									○	○
	어머니동거여부										
	컴퓨터활용상태									○	
인터넷활용상태									○		
개인휴대용통신기기									○		

※ ● 전수조사, ○ 표본조사

□ 가구항목

항목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가 구	가구 계	11	-	7	4	10	10	15	7	16	11
	거처의 종류	●		●	●	●	●	●	●	●	
	단독주택 종류									●	
	가구구분					●	●	●	●	●	●
	점유형태						●		●	●	●
	거주기간	●							○	○	○
	임차료						●	○	○	○	○
	사용방수	● (+연건평)					●	●	●	●	●
	점유(소유)관계	●		●	●	●	●	●	●		
	가구의 심신장애자					●	●				
	문화시설 및 가재			●	○	●	●	●			
	정보통신기기 보유									○	
	주거(전용)시설	●						●			
	부엌 시설	●						●	●		
	화장실 시설	●		○		●	●	●		●	●
	목욕 시설							●			
	식수(상수도)시설			○				●		○	
	식수사용형태									○	
	주된연료				○						
	취사연료			○		●	●	●		○	
	난방연료					●					
	난방시설						● (주택쪽에 포함)	●	●	○	●
	아궁이형태	●									
	조명시설			○							
	굴뚝상태	●									
	대청마루유무 및 평수	●									
	식수종류(이용식수원)	●					●		●		
	가구소득								○		
	자동차보유대수										○
	주차시설										○
주인가구여부 및 주택소유 여부										○ (주택소유 제외)	●
거주층											○

※ ● 전수조사, ○ 표본조사

□ 주택항목

항목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주택	주택 계	7	-	7	5	6	4	9	5	5	6
	거처의 종류										
	건물층수										●
	대지면적					●		●	●	●	●
	연건평			●			●	●	●	●	●
	거주가능가구수						●	●	●	●	●
	총방수			●	●	●	●	●	●	●	●
	동거가구수			●	●	●	●	●			
	건축연도	●		●	●	●		●	●	●	●
	건물수선상태	●									
	다가구주택						(●)				
	집 또는 거주의 개수	●									
	건물내 입주여부	●									
	지붕재료	●		○	○	●		●			
	외벽재료	●		○	○	●		●			
	편익시설(부엌, 화장실 등)						●	●	●	●	●
	* 주된 난방시설					●					
	주택용도			○							
	건물의 종류	●		●	●						

※ ●전수조사, ○표본조사

* (●)는 항목으로 카운트 되지 않았음.

* 2005년도는 총 44개 항목에 시도항목 3개가 포함되었으며, “거처의 종류” 항목이 주택 항목으로 이동.

항목번호 1 : 성 명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조사대상 확인
- 전국 및 지역별 인구 파악
- 조사 중복·누락 방지
- 자료내검 단계에서 전화 등을 이용한 재질의시 대상자 확인

* 조사자료의 개인비밀보호차원에서 「성명」 항목에 대한 Coding 작업은 없었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행정구역별, 성·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별 인구 등
- 경제활동상태별, 산업·직업별 인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사원이 누락·중복 확인 질문 별도로 함	현재 이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택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면 가정부, 점원이나 친척 같은 분도 포함됩니다	현재 이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모두 몇분입니까? 가구주(세대주)부터 빠짐없이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함께 생활하는 분이면 친척, 가정부, 점원 등도 포함됩니다.)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전산입력 하지 않음	전산입력 하지 않음	전산입력 하지 않음	전산입력 하지 않음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을 빠 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가구주부터 기 입하여 주시고 가구원이 6명 이 상인 경우에는 조 사표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p>	<p>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 (이름)을 빠짐없 이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가구주부터 기입하 며 가구원이 6명 이상 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합니다.</p>	<p>1. 성명 <2.본관 참조></p> <p>이 데에서 살고 계시는 분의 성명 (이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 오. □안에는 성씨 를 한자로 기입합 니다.</p> <p>· 가구주, 배우자, 자 녀의 순으로 기입합 니다.</p> <p>· 가구주는 호주나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 니다.</p>	<p>1. 성명</p> <p>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이 름)과 성별을 빠짐 없이 기입하여 주십 시오.</p> <p>· 가구주,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의 순으로 기입합니다.</p> <p>①번 가구원</p> <p>홍길동</p> <p>①남자 ②여자</p>
조사항목 정의	-	-	성명은 차후 조사착 오나 내용검토시 대 상자확인 및 중복·누 락방지를 위해 활용	-
자료공표 여부	전산입력 하지 않음	전산입력 하지 않음	조사표 scan 작업 실시	전산입력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p>- 2개월 이상 체 류하거나 거주하 고 있는 모든 사 람들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이 주소에 체류 하는 사람 중 다 른 상시 거주지 가 없는 사람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가구에 상주하 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이 주소에 거주하는 모 든 사람들을 자신을 포함 하여 기입하 여 주십시오.</p>	<p>- 2006년 5월 16일에 이 주 소에 상시 거 주하는 모든 사람(일시적으 로 집을 떠나 사람 포함)을 기입 하십시오.</p>
조사항목 정의	-	-	-	-	-

6.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중복자나 누락자 재확인 질문 실시여부 및 방법 : 상주개념을 기준으로 누락·
중복자 조사 및 내검단계에서 재확인

항목번호 2 : 본관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성씨, 본관별 인구현황 파악
 - 전체 인구규모 :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 등
- 성씨, 본관별로 지역별 인구분포 파악
 - 집성촌 실태 및 분포 등
- 족보연구 등 성씨 본관 연구자료
- 신규 성씨 및 본관 발생 현황 등 파악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성씨 항목
- 성씨 및 본관별 가구 및 인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	-	-	* 성은 한자로 기입하고 본관을 질문하십시오. 본관
조사항목 정의	-	-	-	성씨는 한자로 본관은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입한다. 이때 성씨 조건표를 참조하도록 한다.
자료공표 여부	-	-	-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	2. 본관 본관은 어디입니까?(한글로 기입합니다.) ①번 가구원 ... ⑤가구원 본관 본관	-
조사항목 정의	-	-	• 성씨는 한자로(조사표 뒷면 한자를 참고) • 본관은 가구원별로 기입합니다. 고향이나 출생지가 아닌 본관(本貫)을 조사합니다. ※ 본관[本貫]=관향(貫鄉)=[시조(始祖)의 고향] a place of origin.	-
자료공표 여부	-	-	공표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조사내용	-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성씨 수

- 1930년 (250개 성씨, 성씨 및 본관을 처음으로 조사)
- 1960년 (258개 성씨, 미확인 11개 성씨 포함)
- 1975년 (249개 성씨, 가구주의 성씨만 한자조사 성씨의 종류 및 시도별 분포상황 발표)
- 1985년 (275개 성씨, 3,349개 본관, 10대 성씨 : 金 李 朴 崔 鄭 姜 趙 尹 張 林)
- 2000년 (286개 성씨, 4,179개 본관, 10대 성씨 : 金 李 朴 崔 鄭 姜 趙 尹 張 林)

- ※ 1. 『세종실록지리지』 : (최초의 전국 성씨관계 자료) 250여성(망성포함)
2. 1486년(성종 17)에 편찬 『동국여지승람』 : 277성 수록, 세종 이후에 귀화한 성과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성씨 250성(망성포함)를 모두 수록한 결과 277성이나 포함
3. 영조 이의현(李宜顯) 《도곡총설 陶谷叢說》 : 298성 수록
4. 고종 《증보문헌비고》 : 고문헌 망라 496성 수록
5. 1930년 (10. 1.)국세조사 : 성씨에 대한 최초의 전체조사 실시 전국에 250성이 있음

6. 1960년 (12. 1.)인구주택국세조사 부대조사 : 8.15광복 후 최초의 성씨조사 실시
258성이 있음(성씨 한자조사).
7. 정부수립이후의 조사는 북한지역이 제외된 남한만의 조사라는 데서 1930년도의
조사결과와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남북분단에 따른 대규모의 인구가이동
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성씨 구성에도 변동이 컸다. 남한지역에만 사는 성씨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만 있는 성씨도 많다.
8. 1975년도(10.1.)의 247성 (1985년 인구및주택센서스 한국인의 성씨 및 본관 조
사보고 : 249성)
9. 1985년 11월 1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1975년 247성에 25성이 추가되어 성은 272성, 본관은 3,435개로 나타났다.
10. 이 때 나타난 인구 100명 미만의 희귀성씨 40여개는 호적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와 고아출신이 입적하거나 외국인의 귀화 때 생겨나는 등 최근에 만들
어졌다. (조사보고: 52개 성씨)
이 조사에서 나타난 10대 성씨의 본관수를 보면 김씨가 285, 이씨 241, 박씨
128, 최씨 127, 정씨 122, 강씨 33, 조(趙)씨 56 윤씨 44, 장(張)씨 63, 임(林)
씨 60개로 각각 집계된다.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성씨, 본관 항목의 조사 필요성
 - 성씨, 본관은 한사람의 생애동안 변화가 없으므로 성씨·본관별 인구변화는 크지 않으나
 - 창씨 등으로 신규 성씨·본관이 계속 발생('85년 이후 신규 성씨는 없으며, 신
규본관은 15개로 나타남)
 - 국사편찬위원회 등 학자들이 조사표가 역사적인 사료로 가치가 있으므로 영구
보관을 요청하기도 함

항목번호 3 : 가구주와의 관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가구에 있어서의 지위)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가구·가족 특성변화, 가족 형성·해체 분석 연구
- 핵가족화, 탈가족화 관련 가족연구
- 아동 및 고령자의 가구구조 파악
-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각종 복지정책 수립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가구주, 가구의 세대구성, 가족구성 상태
- ◎ 맞벌이 가구주 부부, 적생아
-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연령별 인구
- 거처의 종류별 거처수, 가구수, 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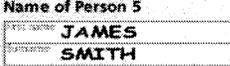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가구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가구주, 처, 장남의 처, 차남의 장녀, 동거인등	가구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예)가구주, 처, 장남의 처, 장남의 장녀, 하숙인등	이분은 가구주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이름및가구주와의 관계】 현재 이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모두 몇분입니까? 가구주(세대주)부터 빠짐없이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함께 생활하는 분이면 친척, 가정부, 점원등도 포함됩니다.)
조사항목 정의	-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이분은 가구 주와 어떤관 계 입니까? 「장남」, 「장남의 자 녀」등과 같 이 구체적으 로 기입합니 다.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란 가구원 중 가 구를 실질적으로 대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 당 번호에 ○표 합니다.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가구주의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7. 손자녀·그 배우자 8. 증손자녀·그 배우자 9. 조부모 10. 형제자매·그배우자 11.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 기타 친인척 13. 기타 동거인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해당되는 한 곳에 만 ○표 합니다.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가구주의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7. 손자녀·그 배우자 8. 증손자녀·그 배우자 9. 조부모 10. 형제자매·그 배우자 11.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12. 기타 친인척 13. 기타 동거인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 떠한 관계인지 해당되 는 한 곳에만 표시 합 니다.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가구주의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7. 손자녀·그 배우자 8. 증손자녀·그 배우자 9. 조부모 10. 형제자매·그 배우자 11.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 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 13. 기타 친인척 14. 기타 동 거인
조사항목 정의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 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 질적으로 대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 로 대표하는 사람으 로 응답자가 가구주 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가구주가 된다.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 로 대표하는 사람이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는 그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가구주로 봄니 다. (반드시 생활능 력이 있는 의사결정 권자를 가구주로 봄) 13.기타동거인은 혈연관 계가 전혀 없는 하숙생, 가사종사자 등을 말합니 다.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 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 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 는 사람입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조사내용	- 2.102 After identification of the reference member of the household a) spouse b) partner in consensual union(cohabiting partner) c) child d) spouse of child e) grandchild or great-grandchild f) parent(or parent of spouse) g) other relative h) domestic employee i) other person not related to the head or other reference member f)&g) may be consolidated as other relative and h)&i) can be consolidated as other unrelated person	- 가구주와의 관계 1. 남편/아내 2. 친아들/친딸 3. 남여 형제 4. 부모 5. 손자녀 6. 인척관계 7. 기타 친인척 ----- 1. 하숙생 2. 하우스메이트, 룸메이트 3. 동거에인 4. 양자녀 5. 기타
조사항목 정의	2.98 가구주란 가구에 관한 사항에서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지배적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구주는 자신 소유(또는 임차)의 주택이 나 아파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거주 또는 체류자 중 성인부터 기입하면 된다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 가구주의 관계</p> <p>· 배우자의 조부모 및 형제자매는 각각 “조부모”,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손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각각 “손자녀”, “형제자매”에 포함된다.</p> <p>1. 가구주/대표자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7. 손자녀 8. 조부모 9. 형제자매 10. 기타 친인척 11. 동거 고용인 12. 기타</p>	<p>-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p> <p>1. 부부 2. 동거인 3. 자녀 4. 의붓자녀 5. 형제자매 6. 부모 7. 계부모 8. 손자녀 9. 조부모 10. 기타 친인척 11. 기타 동거인</p> <p>- 5번가구원의 기입 예</p> <p>Name of Person 5 </p> <p>Relationship of Person 5 to Person → 1 2 3 4</p> <p>Husband or wif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Partn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Son or daughter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Step-chil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Brother or sist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 가구원은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한다.</p> <p>1. 부부 2. 이성사실혼자 3. 동성사실혼자 4. 자녀 5. 사위/며느리 6. 손자녀 7. 부모 8. 배우자의 부모 9. 형제자매 10. 배우자의 형제자매 11. 하숙인 12. 룸메이트 13. 기타-구체적으로</p>
조사항목 정의	-	-	<p>- 양자녀, 입양아, 사실혼자와의 사이의 자녀는 자녀로 기입한다.</p> <p>- 기타관계의 예</p> <p>· 조부모 · 사촌 · 조카 · 하숙인의 배우자 · 룸메이트의 자녀 · 고용인</p>

6. 최근 조사결과

○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 구성비

가구주와의 관계	2000년		2005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 계	45,222,126	100.0	46,316,446	100.0
- 일반가구	44,711,584	98.9	45,737,011	98.7
- 가구주	14,311,807	31.6	15,887,128	34.3
- 가구주의 배우자	10,107,017	22.2	10,285,165	22.2
- 자녀	16,751,647	37.0	15,977,739	34.5
- 자녀의 배우자	302,899	0.7	265,785	0.6
- 가구주의 부모	1,198,663	2.7	1,119,028	2.4
- 배우자의 부모	123,194	0.3	118,222	0.3
- 손자녀 또는 그배우자	703,405	1.6	770,346	1.7
- 증손자녀 또는 그배우자	8,041	0.0	7,508	0.0
- 조부모	29,375	0.1	21,145	0.0
- 형제자매 또는 그배우자	577,038	1.3	567,617	1.2
- 형제자매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87,534	0.2	98,070	0.2
- 부모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	-	11,889	0.0
- 기타 친인척	181,210	0.4	183,753	0.4
- 기타 동거인	329,697	0.7	423,616	0.9
- 미상	57	0.0	-	-
- 집단가구	510,542	1.1	579,435	1.3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세대구성 및 가족관계 구성시 일부 문제가 있음
 - 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그 배우자를 찾기 곤란함.
 - 손자녀·그 배우자, 증손자녀·그 배우자, 형제자매·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도 같은 경우임.
 - 형제자매가 여러명 있을 경우 형제자매의 자녀와 그 부모를 연결하기 곤란함.
- 자녀유형 분리 : 계부·모, 양부모 분리 여부
- 기본 분류체계는 선택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기입하게 하는 방법의 검토 필요

항목번호 4 : 성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성비, 남녀별 인구구조 분석
- 여성 경제활동 현황 파악 및 고용정책 수립
- 인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타 항목과 연계되어 많이 분석 연구됨.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성비 : 연령별 지역별 성비
-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 인구
- 성, 연령,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성별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이 름)과 성별을 빠짐 없이 기입하여 주 십시오.
				①번 가구원
				홍길동 ①남자 ②여자
조사항목정의	-	-	-	-
자료공표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2.116 The sex(male or female) of every individual should be recoded in the census questionnaire.	-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성명 기재란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여	-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조사항목정의	UN권고안 : ※Of all the topics investigated in population censuses, sex and age are more frequently cross-classified with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than are any other topics. ※Aside from the importance of the sex-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in itself, accurate information on the two topics is fundamental to the great majority of the census tabulations.				

6. 최근 조사결과(연령별 성비)

(단위 : 여자 100명당 남자수)

	1995			2000			2005		
	전 국	동 부	읍면부	전 국	동 부	읍면부	전 국	동 부	읍면부
0-4세	113.4	113.4	113.4	110.2	110.2	110.1	108.1	108.0	108.6
20-24	111.4	105.8	144.2	108.3	100.4	152.5	109.7	105.0	143.9
50-54	101.7	103.0	97.3	99.4	104.5	86.5	99.8	100.1	98.9
85세+	29.8	28.3	31.7	27.4	25.7	29.4	33.7	32.4	35.8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가장 기본적인 항목일 뿐더러 타 항목과 연계 쉽게 파악될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미상이 다수 발생
- 영문 표기에 이견 : sex와 gender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합니다. _____ 살</p> <p>이분은 몇 년도에 태 어났으며 무슨 띠입니 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년도와 띠를 기입 합니다. _____ 연도 _____ 띠</p> <p>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 일은 언제입니까? 양력 입니까? 음력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는 관계없이 실제로 쇠는 생일을 기입합니 다.</p> <p>이 난은 앞면에 있는 만나이 환산표를 보시 고 정확한 만나이를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 시오. 만 _____ 살</p>	<p>호적이나 주민등록 과 관계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 입니까? _____ 살(띠)</p> <p>-그리고 실제 생년 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언제입니 까? ① 양력 ② 음력</p> <p>_____ 년 월 일</p>	<p>5. 나이 호적이나 주민 등록과 관계없 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 입니까? · 세는 나이를 모르 실 경우에는 띠로 응답하셔도 됩니 다. □□□살 □ 띠</p> <p>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 으로 언제입니 까?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양력 ② 음력</p> <p>※띠, 나이, 출생 년도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나 각종 분류부호집 에 수록되어 있는 “연령조건표”를 참조하여 다시 확인한 후 수정 합니다.</p>	<p>3. 나이 호적이나 주민 등록과 관계없 이 집에서 세는 나이로 몇 살입 니까?</p> <p>_____ 띠</p> <p>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 으로 언제입니 까?</p> <p>46 띠</p> <p>1960 9 15</p> <p>※나이, 띠, 생년 월일이 불일치 하는 경우 부호 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령조건 표”를 참조하여 다시 확인한 후 수정합니다.</p>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만나이)	공표(만나이)	공표(만나이)	공표(만나이)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 기본항목 (2.118)- - 출생년월일을 조사하는 방법 과 최근 생일때 나이를 직접 질문하는 방법이 있다.</p>	<p>나이와 생년월일은 어 떻게 됩니까 _____ 살 생년월일_월_일_년</p>	<p>출생년월 (1) 명치 (2) 대정 (3) 소화 (4) 평성 (5) 서기 _____ 년 _____ 월</p>
조사항목 정의	<p>연령은 출생일부터 센서스 조사 일까지의 태양력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정확한 나이를 조사하되 특히 15세 이하의 인구는 정확 하게 조사해야 한다.(2.117)</p>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출생년월 일 월 년	출생년월 일 월 년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추정하여 기입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단위: 천명, %)

	1990			1995			2000			2005		
	전 국	동 부	읍면부	전 국	동 부	읍면부	전 국	동 부	읍면부	전 국	동 부	읍면부
계	43,390	32,290	11,100	44,554	34,992	9,562	45,985	36,642	9,343	47,041	38,338	8,703
0-14세	11,135	8,511	2,624	10,236	8,307	1,929	9,639	7,897	1,742	8,986	7,491	1,495
15-64세	30,093	22,261	7,472	31,678	25,171	6,507	32,973	26,743	6,230	33,690	28,100	5,590
65세 이상	2,162	1,158	1,004	2,640	1,515	1,126	3,372	2,001	1,371	4,365	2,747	1,618
총부양비	44.2	43.4	48.4	40.6	39.0	46.9	40.6	37.0	50.0	39.6	36.4	55.7
유소년부양비	37.0	38.2	35.1	32.3	33.0	29.6	29.2	29.5	28.0	26.7	26.7	26.8
노년부양비	7.2	5.2	13.4	8.3	6.0	17.3	10.2	7.5	22.0	13.0	9.8	29.0
노령화지수	19.4	13.6	38.3	25.8	18.2	58.4	35.0	25.3	78.7	48.6	36.7	108.2

※ - 총부양비=(유소년인구(0-14)+노년인구(65세이상인구))/청장년인구(15-64)*100
-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0-14)/청장년인구(15-64)*100
- 노년부양비=노년인구(65세이상)/청장년인구(15-64)*100
- 노령화지수(Aged-child ratio)=노년인구(65세이상)/유소년인구(0-14)*100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연령 조사항목 축소방안
- 누락·중복율이 높은 연령층의 조사방법
 - 20 - 30세 : 경제활동, 0 - 4세 : 동반가족, 70세 이상 : 고령으로 타지에 부정기 거주
- 100세 이상 고령자 연령 조사방법 : 실제 나이 확인이 어려움
 - 본 조사 시와 고령자 확인 조사 시 차이 많이 남
 - 100세 이상은 주민등록연령과 차이가 크며, 실제보다 높게 응답하는 경향

항목번호 6 : 교육정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획리)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국가 각종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여성교육에 관한 자료 : 여성 지위 향상 등 여성관련 정책 자료
- 산업·직업별 학력자료 : 산업 및 노동정책의 기초자료
- 교육은 사회적 신분, 소득이나 계층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로서 다른 변수와의 연계분석에 중요하게 사용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취학(재학, 휴학)상태, 국민 평균교육년수, 학력 구성비
- 교육정도별, 연령별, 성별 인구,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 또는 졸업하셨습니다가?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셨음 다음중 어찌에 해당됩니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학교는 언제까지 다 나셨습니까? (* 5세 이상자에게만 질문) ① 안다셨음 ② 국민 ③ 중학 ④ 고등 ④ 초대· 전문 ⑤ 대학이상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 니까? ① 안다셨음 ② 국민 ③ 중학 ④ 인문고 ⑤ 상업고 ⑥ 초대 ⑦ 대학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등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안다셨음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안다셨다면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까? ④ 안다 ⑤ 모른다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 표	공 표	공 표	공 표

조사년도	1990	1995	2000/2005
조사표 내용	<p>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 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입합니다. ※ 대학원의 경우는 석사학위 과정이상을 말합니다. ※ 현재 1학기 이상 휴학상태 인 경우는 중퇴에 해당됩니다.</p> <p>①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② 국민 ③ 중학 ④ 고등 ⑤ 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p> <p>-----</p> <p>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p>	<p>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교육으로 간주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은 정규교육으로 인정합니다.</p> <p>① 안받았음(미취학포함) ② 국민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초급·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p> <p>-----</p> <p>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p>	<p>6. 교육정도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교육으로 봅니다. · 검정고시 합격은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동은 「①안받았음(미취학에 포함)」에 O표 합니다.</p> <p>①안받았음(미취학포함)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4년제미만) ⑥대학교(4년제이상) ⑦대학원석사과정 ⑧대학원박사과정</p> <p>-----</p> <p>①졸업②재학③휴학④중퇴</p>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조사 내용	<p>-교육정도에 관한 분류는 UNESCO의 ISCED(국제표준 교육분류) 체계를 권고함.</p> <p>- level0: Pre-primary education level1 : Primary education level2 : Lower secondary education level3 : (Upper)Secondary education level4 :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level5 : Tertiary education</p>	<p>-지난 3개월 동안 정규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11번 질문으로) ○ 공립학교, 공립대학 ○ 사립학교, 사립대학</p> <p>-몇 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까? ○ 유아원 ○ 유치원 ○ 1-4학년 ○ 5-8학년 ○ 9년-12학년 ○ 대학교(1-4년) ○ 대학원 또는 전문학위 대학원 (예, 의학, 치과의, 법학과)</p> <p>-최종학력은 어디까지입니까 ○ 학교를 마치지 않았음 ○ 유치원 - 4학년까지 ○ 5학년 - 6학년까지 ○ 7학년 - 8학년까지 ○ 9학년 ○ 10학년 ○ 11학년 ○ 12학년 중퇴(졸업장 없음) ○ 고등학교 졸업 ○ 1년미만 대학학점 ○ 1년이상 학점, 학위 없음 ○ 준학사 ○ 학사 ○ 석사 ○ 전문학위 ○ 박사학위</p>
조사항목 정의	-Educational attainment is defined as the highest grade completed within the most advanced level attended in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country where the education was received	-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 내용	<p>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입한 후에 화살표에 따라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재학 중인 사람은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최종 졸업학교(중도 퇴학한 사람은 그 전의 졸업학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p> <p>1. 재학 2. 졸업</p> <p>① 초등·중등학교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④ 대학, 대학원</p> <p>-----</p> <p>3. 미취학</p> <p>① 유치원 ② 보육시설 ③ 유아/기타</p>	<p>-정규교육을 받는 학생입니까? Yes→재학기간동안 이 거주지에 있었습니까?</p> <p>-16세~74세인 경우 취득한 자격사항을 체크함</p> <p><input type="checkbox"/> 1+ O levels/CSEs/GCSEs (any grades)</p> <p><input type="checkbox"/> 5+ O levels, 5+ CSEs (grade 1), 5+ GCSEs (grades A-C), School Certificate</p> <p><input type="checkbox"/> 1+ A levels/AS levels</p> <p><input type="checkbox"/> 2+ A levels, 4+ AS levels, Higher School Certificate</p> <p><input type="checkbox"/> First Degree (eg BA, BSc)</p> <p><input type="checkbox"/> Higher Degree (eg MA, PhD, PGCE, post-graduate certificates/diplomas)</p> <p><input type="checkbox"/> NVQ Level 1, Foundation GNVQ</p> <p><input type="checkbox"/> NVQ Level 2, Intermediate GNVQ</p> <p><input type="checkbox"/> NVQ Level 3, Advanced GNVQ</p> <p><input type="checkbox"/> NVQ Levels 4-5, HNC, HND</p> <p><input type="checkbox"/> Other Qualifications (eg City and Guilds, RSA/OCC/R, BTEC/ADEXCEL)</p> <p><input type="checkbox"/> No Qualifications</p>	<p>26.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하였습니까?</p> <p>○예, 고등학교 졸업 ○예, 고등학교 동등자격 ○아니오</p> <p>27. 이 사람은 정규수습이나 기타 Trade certificate or diploma를 취득하였습니까?</p> <p>○예, 정규수습인가 ○예, 기타 Trade certificate or diploma ○아니오</p> <p>28. 이 사람은 단과대학, CEGEP 또는 종합대학이 아닌 곳에서 인가 또는 졸업을 하였습니까?</p> <p>○예, 3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에서 인가 또는 졸업 ○예, 3개월에서 1년미만의 프로그램에서 인가 또는 졸업 ○1-2년의 프로그램에서 인가 또는 졸업 ○2년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인가 또는 졸업 ○아니오</p> <p>29. 이 사람은 대학학위, 인가 또는 졸업을 하였습니까?</p> <p>○예, 학사이하의 인가 또는 졸업 ○예, 학사학위 취득(LLB포함) ○예, 학사이상의 인가 또는 졸업 ○석사학위 취득 ○예, 약학, 치과, 수의학, 검안에 관한 학위 ○예, 박사학위 취득 ○아니오</p> <p>30. 이 사람이 최고 학위, 인가 또는 졸업으로 수료한 전공은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자동차공학, 도시공학, 치과기술, 항공공학, 의학실험기술, 보육, 농업경제)</p> <p>31. 최고 학위를 수료한 지역은 어디입니까?</p> <p>○캐나다 내()</p> <p>○기타 지역()</p> <p>32. 2005년 9월 이후로 대학이나 CEGEP, 단과대학이나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p> <p>○예, 초등, 중, 고등학교 다님 ○예, Trade school, 단과대학, CEGEP, 비종합대학 기관 다님 ○예, 종합대학 다님 ○아니오</p> <p>2005년 9월 이후로는 학교에 다닌 적 없음</p>
조사항목 정의	-	-	-

6. 최근 조사결과 : 교육정도별 인구

(단위 : 천명, %)

	1995		2000		2005		'95~'00 증감률	'00~'05 증감률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6 세 이상	29,929	100.0	31,475	100.0	30,829	100.0	5.2	△2.1
초등학교졸업이하	7,431	24.8	4,249	13.5	4,132	13.4	△42.8	△2.8
중 학 교 졸업	4,342	14.5	3,693	12.7	3,576	11.6	△14.9	△3.2
고등학교 졸업	12,467	41.7	12,405	39.4	12,389	40.2	△0.5	△0.1
대학(4년제미만)졸업	1,206	4.0	2,880	9.2	3,534	11.5	138.8	22.7
대 학 교 졸업이상	4,483	15.0	5,039	16.0	7,198	23.3	12.4	42.8

주 : 중퇴인구는 하위학력에 포함, 재학인구는 제외.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일반적으로 교육은 과장 응답
 - “전공학과” 항목과 연계하여 대학이상의 경우 과장응답을 최소화
- 박사학위까지 세분하는데 따른 부담
 - 행정자료와의 비교성
 - 세부 분할표의 경우 빈도수가 적게 나타나 개인정보의 노출이 우려

항목번호 7 : 혼인상태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배우관계)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장래 가구형성 및 소멸 예측 자료
- 가구추계의 기초자료
- 여성의 혼인상태는 출산력 분석 자료
- 연령·취업상태와 연계되어 복지,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혼인상태별, 성별·연령별·가구주와의 관계별·세대구성별 인구
- 모의 혼인상태별 동거자녀수·취학자녀수
-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15세 이상자에게 질문)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15세이상)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15세이상)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2005
조사표 내용	(만15세 이상 되는 분만 기입합니다.) 이분은 결혼하였습니까? 사실상의 혼인상태에 O표 합니다.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16살(세는나이)부터 기 입합니다]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상태에 O표 합니다.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세는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24.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 인 상태에 O표 합니다.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 (2000)	영국 (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 기본항목 - 혼인상태 분류 (2.126) ○ 미혼(single or never married) ○ 유배우(married) ○ 사별(widowed and not remarried) ○ 이혼(divorced and not remarried) ○ 별거(married but separated)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 유배우 ○ 사별 ○ 이혼 ○ 별거 ○ 미혼	- 배우자 의 유무(신고 무에 관계없 이 기입하 주십시오) ○ 미혼 ○ 유배우 ○ 사별 ○ 이혼	-	-혼인상태 ○ 미혼 (법적 으로 결혼 적 없음) ○ 유배우 ○ 별거 ○ 이혼 ○ 사별
조사항목 정의	혼인상태는 각국의 결혼관 련 법이나 관습에 따른 개 개인의 상태를 말한다.	-	-	-	-

6. 최근 조사결과 : 혼인상태별 인구

(단위: 천명, %)

	1995			2000			2005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 국	34,318	16,995	17,323	36,347	17,981	18,366	36,779	17,747	19,032
유배우	60.7	61.2	60.1	60.6	61.2	60.0	61.2	63.2	59.3
사 별	7.4	1.8	13.0	7.4	1.8	12.8	7.7	2.1	12.9
이 혼	1.1	1.0	1.2	1.9	1.8	2.1	3.1	2.9	3.2
미 혼	30.8	36.0	25.7	30.1	35.2	25.1	28.1	31.8	24.5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혼인상태 분류 : 별거 분리여부
 - 현재는 이혼이 예상되는 별거는 → 「이혼」, 재결합이 예상되는 별거는 → 「유배우」로 조사됨.
- 미혼모 조사
 - 사회통념상 미혼으로 조사하는게 타당
- 동거
 -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 배우자 있음(지침서 기준)
 - 10대, 20대 초반 동거의 경우 사회통념상 유배우 관계로 보지 않음

항목번호 8 : 종교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 종교단체별, 지역별 종교인구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종교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종교인구의 경제사회적 특성 분석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종교인구 비율
- 연령 및 성별 종교인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85	1995	2005
조사표 내용	무슨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① 불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유교 ④ 원불교 ⑤ 천도교 ⑥ 대종교 ⑦ 대순진리회 ⑧ 기타 ⑨ 없음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① 불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천도교 ⑦ 대종교 ⑧ 대순진리회 ⑨ 그밖의 종교()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종교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기독교(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증산교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조사항목 정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수계, 세례, 영세 또는 입교 등의 등을 한 사람과,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믿음을 갖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수계, 세례, 영세 또는 입교 등의 의식을 행한 사람과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갖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종교단체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신도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수계, 세례, 영세 또는 입교 등의 의식을 행한 사람과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갖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종교단체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신도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구시군)	공표(구시군)	공표(구시군)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 (2005 ACS)	일본 (2000)	영국(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권고항목	-	-	-종교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독교 (모든 종파포함) <input type="checkbox"/> 불교 <input type="checkbox"/> 힌두교 <input type="checkbox"/> 유대교 <input type="checkbox"/> 이슬람교 <input type="checkbox"/> 시크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사항목 정의	1) 대표하는 조직화된 단체 유무를 불문하고 종교적 영적인 믿음을 같은 것 2) 특정 종교적인 교리를 가진 단체에 가입하는 것 *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정의 사용하고 보고서에 정의 수록	-	-	-	-

6. 최근 조사결과 : 종교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1995		2005		'95~'05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증감	증감율
총인구	44,554	100.0	47,041	100.0	2,487	5.6
종교 있음	22,598	50.7	24,970	53.1	2,372	10.5
불교	10,321	23.2	10,726	43.0	405	3.9
개신교	8,760	19.7	8,616	34.5	△143	△1.6
천주교	2,951	6.6	5,146	20.6	2,195	74.4
유교	211	0.5	104	0.4	△106	△50.4
기타	355	0.8	129	2.3	227	64.1
종교 없음	21,953	49.3	21,865	46.5	△88	△0.4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종교단체별 종교인구 : 각 종교단체에서 문화관광부(종무실)로 보고하는 내용과 조사내용의 차이가 큼 (보고된 수치 합계가 조사된 수치보다 훨씬 많게 나타남)
- 신흥종교관련 조사 및 조사결과 발표에 주의해야 함.

항목번호 9 : 출생지

1. 조사실시년도

1955 <small>(본적 또는 국적)</small>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생애 인구이동 파악 <출생지→(5년전거주지)→(1년전거주지)→현거주지>
- 인구이동 방향 및 이동량 파악
- 수도권인구집중 방지대책 등 인구이동 관련 대책 수립 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출생지 거주인구 비율, 인구이동
- ◎ 출생시도별 인구분포, 북한출신인구
- 출생지별 현 거주지·성·연령별 인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현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출생한 지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지와 ① 같다 ② 다르다 1. ___ 시도 ___ 구시군 2. ___ 국	-	어느 곳에서 태어났습니까? ① 같은 구시군 ② 다른 구시군 ___ 시도 ___ 구시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① 같은 집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___ 시도(국) ___ 구시군
조사항목 정의	-	-	-	호적에 기재된 출생지와 는 관계없이 실제로 태어 난 곳을 말한다. 그러나 산모의 상주지와 실제 출 생지가 다를 경우(병원 또는 친정집에서 분만하 였을 경우)에는 산모의 상주지를 출생지로 한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p> <p>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 명을 기입합니다.</p> <p>※북한의 경우에는 출생당시의 시·도, 구·시·군 명을 기입하시되 시도명 앞에는 북한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p> <p>※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_____ 시도 (국) _____ 구시군</p>	<p>출생지는 어디입니까?</p> <p>· 출생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p> <p>·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그곳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북한일 경우에는 당시의 행정구역명을,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구시군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_____ 특별·광역시·도(국) _____ 시·군·구</p>	<p>9. 출생지</p> <p>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p> <p>· 태어날 당시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을 말합니다.</p> <p>다른 시·군·구일 때는 시·도,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북한일 경우에는 당시의 시·도, 시·군명을,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 또는 다른 시·도 ④ 북한 또는 외국 _____ 특·광역시·도(국가명) _____ 시·군·구</p>	-
조사항목 정의	본적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난 곳을 조사한다. 다만, 산모가 출산을 병원, 친정등에서 하였을 때에는 산모의 상주지를 출생지로 본다	출생지(태어난 곳)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적지(또는 원적지)와 관계없이 출생당시 어머니(산모)가 주로 살았던 곳(상주지)을 말한다.	출생지(태어난 곳)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적지(또는 원적지)와 관계없이 출생당시 어머니(산모)가 주로 살았던 곳(상주지)을 말한다.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기본항목(2.58) 2.58. the concept of place of birth usually refers to the geographical unit of the country in which the mother of the individual resided at the time of the person's birth</p>	<p>- 출생지는 어디 입니까 ○ 미국 내(state명) : ○ 미국 외 (국가이름, 푸에르토리코, 괌, 기타 출생지 이름) -미국 시민입니까? ○미국출생시민 ○푸에르토리코,괌,버진아일랜드,북마리아나출생시민 ○미국부모가 해외에서 출생 ○ 귀화 ○시민아님</p>	-	<p>-출생국은 어디입니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 ○기타()</p>	<p>-출생지는 어디 입니까? ○캐나다 출생(지역을 선택) ○캐나다 외 출생(국가를 기입) -캐나다 시민입니까? ○캐나다 출생 ○귀화 ○기타 국가</p>
조사항목 정의	출생시 모의 거주지	-	-	-	-

6. 최근 조사결과 : 출생시도별 인구분포

(단위: 천명, %)

	1995				2000			
	현거주지별		출생지별		현거주지별		출생지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43,836	100.0	43,836	100.0	45,985	100.0	45,985	100.0
서울	10,057	22.9	6,490	14.8	9,854	21.4	7,070	15.4
부산	3,746	8.5	2,583	5.9	3,655	7.9	2,752	6.0
대구	2,406	5.5	1,604	3.7	2,474	5.4	1,742	3.8
인천	2,276	5.2	1,230	2.8	2,466	5.4	1,386	3.0
광주	1,235	2.8	859	2.0	1,351	2.9	941	2.0
대전	1,252	2.9	721	1.6	1,366	3.0	815	1.8
울산	-	-	-	-	1,012	2.2	653	1.4
경기	7,547	17.2	4,366	10.0	8,938	19.4	4,954	10.8
강원	1,437	3.3	2,237	5.1	1,485	3.2	2,280	5.0
충북	1,372	3.1	2,113	4.8	1,463	3.2	2,148	4.7
충남	1,729	3.9	3,367	7.7	1,840	4.0	3,366	7.3
전북	1,860	4.2	3,193	7.3	1,887	4.1	3,264	7.1
전남	2,019	4.6	4,496	10.3	1,994	4.3	4,499	9.8
경북	2,623	6.0	4,741	10.8	2,716	5.9	4,822	10.5
경남	3,780	8.6	4,707	10.7	2,971	6.5	4,159	9.0
제주	495	1.1	529	1.2	513	1.1	544	1.2
기타	-	-	585	1.3	-	-	591	1.4

* 외국인 및 특별조사구 인구 제외

1) 출생지 미상을 포함한 수치임.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출생지의 도/농 구분문제

- 시군구까지 조사할 경우 도/농 구분문제 발생 → 동부/읍면부 조사여부 검토

○ 출생당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여 출생당시의 지역 특성이 반영 안 됨

○ 출생지에서의 이동시기 및 이동시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없어 출생지와 조사기준시의 특성만을 연계하여 분석 가능함

- 이동자의 특성, 유형, 이동사유 등은 분석할 수 없음

항목번호 10 : 1년전 거주지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전입자 구분)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최근 인구이동 방향 및 규모 파악
- 수도권 인구집중현황 및 분산정책 기초자료
- 지역별 인구추계 기초자료
- 도·농간 인구이동 및 도시화 현상 분석
- 이동자의 특성분석 및 이동에 따른 대책수립 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전입, 전출, 이동을
- 1년전 거주지별 현거주지·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혼인상태별 이동인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	-	지금으로부터 1년 전(1979.11.1)에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 ① 같은집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_____ 시도(국) _____ 구시군	지금으로부터 1년 전(84.11.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 ① 같은집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_____ 시도(국) _____ 구시군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	-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p>지금으로부터 1년 전(89.11.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p> <p>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p> <p>-----</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_____ 시도(국) _____ 구시군</p>	-	<p>10. 1년전 거주지</p> <p>1년 전(1999년11월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p> <p>① 1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p> <p>-----</p> <p>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되는 시·도,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p> <p>_____ 특별시·광역시·도(국가명) _____ 시·군·구 □□ □□□</p>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 (2000)	영국 (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2.69 the major or smaller division or the foreign country, in which the individual resided at a specified date preceding the census.	<p>-1년 전에 이 집이나 아파트에 거주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1살 이하의 다음 질문으로</p> <p><input type="checkbox"/> 예</p> <p><input type="checkbox"/> 미국이외의 지역</p> <p><input type="checkbox"/> 미국내 다른 집</p> <p>-1년 전에 어디서 거주했습니까?()</p> <p>-이 도시에서 살았습니까?</p>	-	<p>1년 전 상시 거주지는?</p> <p><input type="checkbox"/> 현재 거주지</p> <p><input type="checkbox"/> 거주지없음 (2000년4월29일이후출생자)</p> <p><input type="checkbox"/> 거주지기입</p> <p>·1년 전에 기숙학교에 있거나 학생이었다면 그 당시 거주했던 곳</p>	<p>1년 전(2006년5월16일)에 어디에 계셨습니까?</p> <p>○ 현재 거주지 ○ 같은 도시내 다른 거주지 ○ 캐나다내의 다른 지역</p> <p>()</p> <p>○ 해외</p> <p>()</p>
조사항목 정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1년전 또는 5년전 거주지를 조사하는 데 1년 전은 국내간 과 국제간 이동의 현재 통계를 제공하고 5년전 거주지는 국제간 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적정하다	-	-	-	-대도시 보다는 읍면동의 명칭을 기입

6. 최근 조사결과 : 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총인구 (1세이상)	이동자 구성비	이동자수(구시군경계 기준)			
			계	시부	군부	기타
1990	42,758	8.3%	3,535	2,678	829	28
2000	44,623	7.8%	3,486	-	-	-

* 이동자의 지역구분은 이동전 거주지 기준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이동자의 도/농 구분문제
 - 시군구까지 조사할 경우 도/농 구분문제 발생 → 동부/읍면부 조사여부 검토
- 1년전 행정구역명이 아닌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지역명 모르는 경우 다수 있음
- 이동시의 이동자의 특성이 아닌 이동 후 현재의 특성만이 조사되어 이동자의 특성, 유형, 이동사유 등은 분석할 수 없음
 - 이동자의 규모, 이동방향 등만 파악이 가능함.

항목번호 11 : 5년전 거주지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인구이동 방향 및 규모 파악
- 수도권 인구집중현황 및 분산정책 기초자료
- 지역별 인구추계 기초자료
- 도·농간 인구이동 및 도시화 현상 분석
- 이동자의 특성분석 및 이동에 따른 대책수립 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전입, 전출, 이동을
- 5년전 거주지별 현거주지·성·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별 이동인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5년전에도(1965년 10월 1일) 에도 이곳에서 살았습니까? ① 같다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④ 외국	5년전에도(1970년 10월 1일) 에도 이곳에서 사셨습니까? ① 같은집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④ 외국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전(1975.11.1)에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① 같은집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80.11.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① 같은집 ② 같은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다른 "구시군" 또는 외국에 서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국	다른 구시군과 외국에서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국	_____ 시도(국) _____ 구시군	_____ 시도(국) _____ 구시군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2005
조사표 내용	<p>지금으로부터 5년 전 (85.11.1) 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p> <p>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이름을 기입합니다.</p> <p>-----</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_____ 시도(국) _____ 구시군</p>	<p>1990년 11월 1일(5년전)에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p> <p>·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입합니다.</p> <p>-----</p> <p>① 5년전에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 _____ 특별·광역시·도(국) _____ 시군구</p>	<p>11. 5년전 거주지 5년 전(1995년11월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p> <p>① 5년 전에는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⑤ 북한 또는 외국</p> <p>-----</p> <p>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되는 시·도,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p> <p>-----</p> <p><input type="checkbox"/> 특별사·광역시·도(국)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 □□□</p>
조사항목 정의	-	-	-시·군·구에서 구(區)란 서울 및 6대 광역시만 해당되며, 그 이외의 시에 있는 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 (2005 ACS)	일본(2000)	영국 (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기본항목 :과거 특정 시점의 거주지 (2.69-2.70)</p>	-	<p>5년 전(1995.10.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p> <p>* 95.10.1일 이후 출생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p> <p>* 다른 시정촌의 경우는 도도부현과 시구정촌명(13 대도시는 구명)을 기입</p> <p>1. 같은 집 2. 같은 시정촌내 다른곳 3. 다른 시구정촌 4. 외국</p> <p> _____ 도도부현 _____ 시군지청 _____ 구정촌</p>	-	<p>5년전(2001.5.16)에 어디서 살았습니까?</p> <p>○현재 거주지 ○같은 도시내 다른 거주지 ○캐나다 내의 다른 지역 () ○해외()</p>
조사항목 정의	-	-	-	-	-대도시 보다는 읍면동의 명칭을 기입

6. 최근 조사결과 : 인구이동 추이('90, '95, 2000 : 5세이상)

(단위 : 천명, %)

	총이동	이동율(%)	시도내 이동1)	시도간 이동
1990~1995 (구성비)	10,087 (100.0)	25.0	4,397 (43.6)	5,690 (56.4)
1995~2000 (구성비)	9,577 (100.0)	22.8	4,191 (43.8)	5,386 (56.2)
2000~2005 (구성비)	8,968 (100.0)	20.4	3,730 (41.6)	5,238 (58.4)

1) 시도를 벗어나지는 않고 시도안에서 구시군간 이동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이동자의 도/농 구분문제

- 시군구까지 조사할 경우 도/농 구분문제 발생 → 동부/읍면부 조사여부 검토

○ 5년전 행정구역명이 아닌 현재의 행정구역을 조사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지역명 모르는 경우 다수 있음

○ 이동시의 이동자의 특성이 아닌 이동 후 현재의 특성만이 조사되어 이동자의 특성, 유형, 이동사유 등은 분석할 수 없음

- 이동자의 규모, 이동방향 등만 파악이 가능함.

항목번호 표본 12, 13, 14, 15 :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출발·도착시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 80년에는 소요시간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90년에는 출발도착시간이 95년에는 통근학 소요시간이 각각 조사됨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주·야간 인구변동 분석 및 교통대책 수립 자료
- 대도시 중심지역의 주간인구에 대한 행정수요 추정 자료
- 교통망 건설 및 도시계획 수립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통근율, 통학율, 통근통학율
- ◎ 지역별 주간인구, 상주인구, 주간인구지수, 주간인구밀도
- ◎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 O(출발지) - D(도착지) 표
- 행정구역, 성, 연령, 가구규모, 이용교통수단별 통근통학인구
- 거처의 점유형태, 소요시간, 학급학교별 통근통학인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조사표 내용	-	-	<p>현재 학업·직업 때문에 매일 아침 통근하고 있습니까? ① 한다 ② 안한다</p> <p>-----</p> <p>하고 있다면 학교(원) 또는 직장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① 같은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p> <p>-----</p> <p>주로 통근통학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시내버스 ② 승용차 ③ 철도 ④ 자전거 ⑤ 통근버스 ⑥ 도보 ⑦ 택시 ⑧ 기타</p>	-	<p>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① 한다 ② 안한다</p> <p>-----</p> <p>통근·통학을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②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기입하시고 모를 경우에는 직장 또는 학교(원)의 이름이나 인근 유명한 건물 이름 또는 특징 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직장학교, 주요건물 이름</p> <p>-----</p> <p>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시 몇분입니까?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① 오전 _____ 시 _____ 분 ② 오후 _____ 시 _____ 분 · 직장 또는 학교(원) 도착하는 시간 _____ 시 _____ 분</p> <p>-----</p> <p>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시내버스 ② 좌석버스 ③ 시외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p>
조사항목 정의	-	-	-	-	-
자료공표 여부	-	-	공표	-	공표

조사 년도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어디로 합니까?</p> <p>·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p> <p>·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직장·학교이름이나 인근의 널리 알려진 건물이름 또는 특징 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p> <p>① 안함 ② 통근함 ③ 통학함</p> <hr/>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 특별·광역시·도 — 시군구 — 직장, 학교, 건물이름, 장소</p> <hr/> <p>평소 맥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할때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p> <p>· 2개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수단 2개에만 O표 합니다</p> <p>· 「9도보로만」은 걸어서만 통근통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p> <p>① 시내버스 ② 좌석버스 ③ 기타버스 ④ 전철·지하철 ⑤ 기차 ⑥ 승용차 ⑦ 택시 ⑧ 자전거 ⑨ 도보로만 ⑩ 기타(트럭등)</p> <hr/> <p>평소맥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할 때 까지 얼마나 걸립니까?</p> <p>① 15분미만 ② 15-30분미만 ③ 30-45분미만 ④ 45-60분미만 ⑤ 60-90분미만 ⑥ 90-120분미만 ⑦ 120분이상</p>	<p>세는 나이 13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p> <p>15. 통근·통학여부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p> <p>① 통근함 ② 통학함 ③ 안함⇒19번으로 감</p> <hr/> <p>16. 통근·통학장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다른 읍면동으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 다른 시·군·구 └─□□□□□□□□□□ □□□□□□□□□□ □□□□□□□□□□</p> <hr/> <p>17. 이용교통수단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수단 2개에만 O표 합니다</p> <p>· 「①도보로만」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p> <p>①도보로만 ②시내·좌석·마을버스 ③기타 버스(통근·통학버스 등) ④고속·시외버스 ⑤전철·지하철 ⑥기차(지역간 열차) ⑦승용차(개인승합차 포함) ⑧택시 ⑨자전거 ⑩기타(오토바이, 트럭등)</p> <hr/> <p>18. 통근·통학 소요시간 평소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하는데 까지 얼마나 걸립니까?</p> <p>①오전 □□시 □□분 ②오후 □□시 □□분 □□시간 □□분</p>	<p>세는 나이 13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p> <p>11. 통근·통학여부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p> <p>① 통근함 ② 통학함 ③ 안함⇒15번으로 감</p> <hr/> <p>12. 통근·통학장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다른 읍면동으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직장, 학교(학원)명이나 주위의 잘 알려진 건물 및 장소 이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다른 읍면동 └─□□□□□□□□□□</p> <hr/> <p>13. 이용교통수단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두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것 두개에만 O표 합니다</p> <p>· 「①걸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p> <p>①걸어서 ②승용차, 소형승합차 ③시내·좌석·마을버스 ④통근·통학버스 ⑤고속·시외버스 ⑥전철·지하철 ⑦기차 ⑧택시 ⑨자전거 ⑩기타(오토바이, 트럭등)</p> <hr/> <p>14. 통근·통학 소요시간 통근·통학 장소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p> <p>□□시간 □□분</p>
	조사항목 정의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 ※ 11. 통근통학여부: ①통근함의 의미: 살고있는 거처 이외의 직장(일터, 근무지)에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
 ②통학함의 의미: 학교(학원)에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를 의미
13. 이용교통수단은 출퇴근 및 등하교때 서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할 경우는 출근 및 등교를 기준으로 조사
14. 통근통학소요시간은 평소 집에서(일터·근무지)또는 학교, 학원으로 다니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출근 및 등교기준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권고항목 : 통근지 2.320-2.321 Place of work 일을 한 장소 (a) Worked at home (b) No fixed place of work (c) With a fixed place of work outside the home</p>	<p>-지난주에 어느 장소에서 일하였습니까?(한 장소이상에서 일했다면 가장 최근의 곳을 기입) a. 주소 _____ b. City, Town,우체국 ____ c. 일하는 장소가 City, Town 경계내입니까? o 예 o 아니오 d. County _____ e. State _____ f. 우편번호 _____</p> <p>-지난주에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이용수단은? o 승용차, 트럭, 밴 o 버스 o 전차 o 지하철 o 기차 o 배 o 택시 o 오토바이 o 자전거 o 도보 o 집에서 일함 o 기타 _____</p> <p>지난주에 본인을 포함하여 몇 분이 함께 자동차, 트럭, 밴 등을 사용하셧습니까? ()명 _____</p> <p>-지난주에 집에서 출근한 시간은? _____ 오전, 오후</p> <p>-지난주에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소요 시간은? _____ 분</p>	<p>* 경제활동상태 질문에서 일한자와 재학생인자는 통근항목을 기입해야함 -----</p> <p>다른 구나 시정촌의 경우에는 도도부현, 시구정촌명(13대도시는 구명)을 쓴다. 1. 집에서 2. 같은 구 3. 다른 구·시정촌 _____ 도도부현 _____ 시군지청 _____ 구, 정촌 -----</p> <p>이용교통수단 1. 도보로만 2.철도,전차 3. 승합버스 4.통근학버스 6. 승용차 7. 택시 8. 오토바이 9. 자전거 10. 기타 -----</p>
조사항목 정의	<p>-2.320 근무지는 근무자 자신의 주요 직업을 수행하는 장소이며 고용상태, 산업, 직업 같은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일을 수행하는 곳이다. 근무지의 종류는 근무지의 특성과 고정여부와 관계없이 집과 근무지의 차이점에 관련되어 있다.</p>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주요 작업장소의 주소는? (창고에서 일한다면 창고의 주소)</p> <p><input type="checkbox"/>주택 <input type="checkbox"/>해안<input type="checkbox"/>고정된 장소 없음</p> <p>-통근방법(가장 긴 경로를 선택)</p> <p><input type="checkbox"/>주택근무<input type="checkbox"/>지하철, tram<input type="checkbox"/>기차<input type="checkbox"/>버스, 미니버스<input type="checkbox"/>오토바이, 스쿠터 <input type="checkbox"/>승용차, 밴 <input type="checkbox"/>택시 <input type="checkbox"/>자전거 <input type="checkbox"/>걸어서 <input type="checkbox"/>기타</p>	<p>46. 주로 일하는 장소는?</p> <p>· 만약 거리가름을 알 수 없다면 가까운 교차로나 건물이름을 기입</p> <p>· 대도시 보다는 읍면동을 기입</p> <p>· 만약 근무지가 고용인의 주소와 다르다면 실제로 일하는 장소를 기입 (예: 교사는 교육청이 아닌 학교의 주소를 기입)</p> <p><input type="checkbox"/>주택 <input type="checkbox"/>해의 <input type="checkbox"/>고정된 장소 없음 <input type="checkbox"/>특정 주소로 자세히 기입</p> <p>47.통근방법가장 긴 경로를 선택</p> <p><input type="checkbox"/>승용차,트럭,밴운전 <input type="checkbox"/>승용차,트럭,밴승객 <input type="checkbox"/>대중교통 <input type="checkbox"/>걸어서 <input type="checkbox"/>자전거 <input type="checkbox"/>오토바이 <input type="checkbox"/>택시 <input type="checkbox"/>기타</p>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표> 통근·통학 인구규모 및 통근·통학율 (단위 : 천명, %)

	1995			2000			2005			95-2000 증감		00-05 증감	
	12세 이상 인구	통근통학 인구	통근통학율	12세 이상 인구	통근통학 인구	통근통학율	12세 이상 인구	통근통학 인구	통근통학율	통근통학 인구	증감율 (%)	통근통학 인구	증감율 (%)
전국	35,995	23,044	64.0	37,404	23,609	63.1	39,465	24,181	61.3	565	2.5	572	2.4
남자	17,514	14,341	81.9	18,179	14,261	78.4	19,186	14,449	75.3	-80	-0.6	188	1.3
여자	18,482	8,703	47.1	19,225	9,348	48.6	20,279	9,732	48.0	645	7.4	384	4.1

<표> 지역별 이용교통수단(2000-2005)

(단위 : 천명, %)

	2000			2005			증감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
계	23,609	18,467	5,141	24,181	19,533	4,648	572	2.4
- 단일수단	22,474 (95.2)	17,398 (94.2)	5,076 (98.7)	23,421 (96.9)	18,809 (96.3)	4,612 (99.2)	947	4.2
버 스	6,748	5,740	1,008	5,502	4,762	740	-1,246	-18.5
도 보	6,168	3,974	2,195	7,088	5,172	1,915	920	14.9
승용차	6,498	5,360	1,138	7,803	6,422	1,381	1,305	20.1
전철·지하철	1,489	1,485	5	1,750	1,742	7	261	17.5
자전거	308	189	119	290	207	83	-18	-5.8
택 시	178	164	14	118	108	11	-60	-33.7
기 차	41	34	7	31	25	5	-10	-24.4
기 타	1,043	452	591	841	372	469	-202	-19.4
- 복합수단	1,135 (4.8)	1,069 (5.8)	66 (1.3)	759 (3.1)	723 (3.7)	36 (0.8)	-376	-33.1

- ※ 1. 버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타버스 등 포함
- 2. 도보는 도보로만 통근통학하는 경우이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표> 이용교통수단별 평균 통근소요시간(2000, 2005)

(단위 : 분)

교통수단	소요시간	
	2000	2005
계	32	31
단일수단	30	30
시내버스	39	39
좌석버스	58	
기타버스	79	
전철·지하철	51	57
기 차	78	85

교통수단	소요시간	
	2000	2005
승용차	33	32
택 시	20	17
자전거	17	19
도 보	14	14
기 타	22	21
복합수단	61	64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통근학 인구의 도/농 구분문제
 - 시군구까지 조사할 경우 도/농 구분문제 발생 → 동부/읍면부 조사여부 검토
- 통근학 소요시간 : 선택형 및 기입형 응답의 타당성 검토
- 자료제공의 시의성 문제
 -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시의성 있게 자료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표본결과 발표시 우선 순위 부여

항목번호 16 : 초혼연령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초혼연령 자료를 이용한 출산력 분석
- 초혼연령 변화 분석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연령별 초혼연령별 기혼자
- 모의연령 및 초혼연령별 출생아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	언제 결혼하셨습니다? (15세이상 기혼남녀에게 질문) _____ 살 _____ 년 _____ 월 (음) (양)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 살 때 하였습니다? * 재혼의 경우에는 초혼의 연 령을 묻는다. _____ 살, 생일 전, 후 _____ 년도	-
조사항목 정의	-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한 연령을 말 하며 두 번 이상 혼인한 경우는 최초에 혼인한 연 령을 말한다.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 상의 혼인연령을 말하며 두 번 이상 혼인한 경우는 최초 에 혼인한 연령을 말한다.	-
자료공표 여부	-	공표	공표	-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결혼은 세는나이로 몇 살 때 하였습니까? 결혼한 날짜 는 생일전입니까? 후입니까? 결혼은 몇 년도에 하였습니까? 살 때 ① 생일 전 ② 생일 후 년도	-	-	결혼(초혼)은 언제 하였습니까? · 재혼의 경우 초혼을 기준으 로 기입합니다. □□□□ 년 □□ 월 ①양력 ②음력
조사항목 정의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의 혼인연령을 말하며 재혼한 사람은 첫 혼인연령을 말한다.	-	-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년월을 말하며, 두 번 이상 혼인한 경우는 최초 혼인한 시 기를 기입합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	-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 (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권고항목	-	-	-	-
조사항목 정의	최초 결혼한 연월일을 말한다. 조사가 어려우면 결혼 시 연령 이나 결혼기간을 조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	-	-	-

6. 최근 조사결과 : 성·연령별 혼인연령 구성비(2005)

초혼연령	기혼인구(15세이상)			기혼인구 구성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6,540	12,126	14,414	100.0	100.0	100.0
19세이하	2,784	392	2,392	10.5	3.2	16.6
20-24	9,034	2,350	6,684	34.4	19.4	46.4
25-29	10,983	6,625	4,358	41.4	54.6	30.2
30-34	2,911	2,214	697	54.0	18.3	4.8
35-39	543	380	163	11.0	3.1	1.1
40세이상	229	143	86	0.9	1.2	0.6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Privacy 문제로 응답 거부 또는 회피하는 항목중의 하나임.
 -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조사방법, 질문방법 개발 필요
- 초혼연령 자료는 현재 3가지 작성이 가능
 - 센서스 자료의 미혼율을 이용해 작성한 초혼연령(Hajnal Method)
: 지역단위의 자료만 작성이 가능
 - 인구동태에서의 신고통계 : 당해 연도 혼인자만 분석이 가능
 - 센서스에서 직접 초혼연령을 물어 작성하는 방법 : 가장 현실에 근접하면서도 전 인구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이 가능. 따라서 조사가 가능하다면 최고의 혼인지표가 됨

항목번호 표본 17, 18, 19 : 총출생아수, 생존아수, 사망자녀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출생아수	-	●	○	○	○	○	●	○	-	○	○
생존아수	-	-	-	○	○	-	●	○	-	-	-
사망자녀수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출산력 조사 기본항목
- 출산수준 및 출산행태 변화 분석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적생아, 출산력
-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 및 출생아수별 기혼여성
- 연령 및 생존아수별 기혼여성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1970	1975/1980	1985/1990
조사표 내용	부인께서는 자녀분이 몇분입니까? 총 몇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1. 생존아수 ___명 2. 총출생아수 ___명	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현재 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몇입니까? 남자 ___명 여자 ___명 ----- 출가, 취업 등으로 현재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녀는 몇입니까? 남자 ___명 여자 ___명 ----- 낳으신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입니까? 남자 ___명 여자 ___명 ----- 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입니까? ___명	부인이 낳은 자녀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는 모두 몇명입니까? 부인이 낳은 자녀 중 외자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남 ___명 여 ___명 계 ___명 ----- 낳은 자녀 중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모두 몇명입니까? 남 ___명 여 ___명 계 ___명 ----- 지금까지 부인이 낳으신 자녀는 모두 몇명입니까? 남 ___명 여 ___명 계 ___명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p>세는나이 16세 이상부터 모두 기입합니다.</p> <p>25. 총출생아수 (기혼여성만 기입합니다) 지금까지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 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한 자녀, 외지에 사는 자녀, 사망한 자녀도 모두 포함하며 입양한 자녀는 제외합니다. <p>딸 □□명 아들 □□명 계 □□명</p>	<p>기혼(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여성만 기입 합니다.</p> <p>-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직접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작성한다.</p> <p>남 □□명 여 □□명</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남 □□명 여 □□명</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학업,취업,결혼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남 □□명 여 □□명</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남 □□명 여 □□명</p>
조사 항목정의	-	<p>지금까지 직접 낳은 자녀로서 결혼 한 자녀·외지에 사는 자녀·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기입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사망한 자녀인 경우는 누락 되지 않도록 사망자녀를 포함한 출생아수를 질문하도록 유의합니다. ·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p>여성의 출산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출생아수는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만을 대상 으로 조사합니다. · 사망한 자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입양해 온 자녀는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낳은 자녀, 함께 사는 자녀, 다른 곳에 사는 자 녀, 사망한 자녀를 반드시 각각 질문하여 기입 합니다. -일부 내용만 묻고 나머지를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 · 미혼모도 기입해야 합니다. <p>*여성의 출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불 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합니다.</p>
자료공표 여부	공표	-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 (2000)	영국 (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p>-출생자녀수 (a)평생동안 출산한 아들의 수(살아서 태어난 경우) (b)센서스일 현재 살아있는 아들의 수 (c)살아서 출생했으나 센서스일 전에 죽은 아들의 수 (d)평생동안 출산한 딸의 수 (살아서 태어난 경우) (e)센서스일 현재 살아있는 딸의 수 (f)살아서 출생했으나 센서스일 전에 죽은 딸의 수.</p> <p>(b)(c)(e)(f)의 응답은 (a)(d)의 응답에 대한 체크기능을 한다. 만약 불일치가 존재하면 면접으로 해결해야 한다.</p> <p>-생존자녀수 (a)가구내에 살고 있는 총 아들의 수 (b)다른 곳에 살고 있는 총 아들의 수 (c)살아서 태어나 센서스일 전에 사망한 총 아들의 수 (d)가구내에 살고 있는 총 딸의 수 (e)다른 곳에 살고 있는 총 딸의 수 (f)살아서 태어나 센서스일 전에 사망한 총 딸의 수</p>	<p>18. 지난 12개월 동안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	-	-
조사항목 정의	-	-	-	-	-

* 미국은 1990년은 출생아수(사산 및 입양은 제외) 조사
: 없음, 1명, ……., 12명 이상으로 구분

6. 최근 조사결과 :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사망아수(2005)

	기혼여성(15세이상)		기혼여성 구성비	
	출생아수	사망아수	출생아수	사망아수
계	14,414	14,414	100.0	100.0
0명	921	13,775	6.4	95.6
1명	2,255	452	15.6	3.1
2명	6,312	113	43.8	0.8
3명	2,332	74	16.2	0.5
4명	1,122	-	7.8	-
5명	706	-	4.9	-
6명이상	408	-	2.8	-
7명	205	-	1.4	-
8명	91	-	0.6	-
9명	32	-	0.2	-
10명이상	18	-	0.1	-

* 기혼여성에는 미상 포함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Privacy 문제로 응답 거부 또는 회피하는 항목 중의 하나임.
 -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조사방법, 질문방법 개발 필요
 - 2000년부터는 생존자녀수를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하지 않았음
- 출산력 항목은 인구기본항목중의 하나로 이용자 의견수렴 결과 전문가들의 조사 요청이 많았음.(한국교원대 김태현교수, 보사연부원장, 노동부등)
 - 저출산 사회일수록 출산행태에 관한 통계가 중요

항목번호 20 : 경제활동상태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경제활동 상태 및 취업구조 파악
- 노동력 수급계획 및 고용대책 수립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율
- 성·연령·혼인상태·교육정도·산업·직업별 취업자
- 거처의 종류, 가구규모별 취업자 가구
- 산업·직업 및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1970	1975	1980
조사표 내용	지난 1주일간 (9월21일-9월27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①일하였음 ②일시휴직 ③구직 ④가사 ⑤통학 ⑥연로 ⑦불구 ⑧기타 -----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지난 1주일간(9월21일-9월28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①일하였음 ②일시휴직 ③실직 ④신규실업 ⑤가사 ⑥통학 ⑦연로 ⑧불구 ⑨기타 ----- 조금이라도 일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지난 1주일간(10월25일-10월31일) 동안에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다습니까? ①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 ②놀고 있었다. ③학교(원)에 다녔다. ④집안일을 돌보았다 ⑤기타 ----- 조금이라도 수입을 위하여 일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없다면 일자리는 구해 보았습니까? ① 구해보았다 ② 특별한 사유로 구해보지 못했다 ③ 구하지 않았다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85	1990
<p>조사표 내용</p>	<p>이분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일이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이외에도 직접 자기 사업을 하는 분도 포함되며 수입있는 일을 돕는 경우에도 일하는 사람으로 봅니다.</p> <p>① 일하고 있음(직장에 다니고 있음) ② 가사를 돌보며 틈틈이 일하고 있음 ③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일하고 있음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고 있음 ⑤ 직장(일자리)을 구하고 있음 ⑥ 가사만 돌보고 있음 ⑦ 학교만 다니고 있음 ⑧ 기타</p>	<p>이분은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p> <p>*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11월1일 직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되고, 11월 1일 직전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에 해당됩니다.</p> <p>[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p> <p>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쉬고 있다</p> <p>[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p> <p>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p>
<p>조사항목 정의</p>	<p>※경찰: 평상시 개념</p>	<p>-</p>
<p>자료공표 여부</p>	<p>-</p>	<p>공표</p>

조사 년도	1995	2000
조사표 내용	<p>지난 1개월('95.10.1-10.31)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이란 상점의 일, 농사, 가내부업 등을 돕거나, 시간제 일,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수입과 관련된 모든 일) · 가사(집안일)란 밥짓기, 세탁, 육아 등을 말하며 이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한 경우는 [2], 오직 집안 일만 한 경우는 [7]에 해당됩니다. · 통학은 정규학교는 물론 입시학원, 이·미용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원등에 무보수로 다니는 것도 포함됩니다. <p>[1] 주로 일하였음 [2]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3] 학교(학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4] 다른 활동(종교·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5] 일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고 있었음 [6]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음 [7] 가사만을 돌보았음 [8] 학교(학원)만을 다녔음 [9] 기타(연료·연소, 장기질병 등)</p>	<p>(세는 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p> <p>19.경제활동상태 지난 일주일(2000.10.22-10.28) 동안 수입 있는 일을 잔적이 있습니까? · 수입 있는 일에는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돕거나 부업, 아르바이트 등 조금이라도(1시간이상)수입이 있는 일을 한 것도 포함됩니다. ①있음 ②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①② ⇒20번으로 감 ③없음(가사, 학업 등) ㄱ</p> <p>-----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면 지난 달(10월)에 수입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까? · 「②찾아보았음」은 원서제출, 취직시험 응시, 전화취업 상담, 직업소개소 등록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찾아보지 않았음→24번으로 감 ②찾아보았음 ㄱ</p> <p>----- 만약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①일할 수 있었음 ②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 할 수 없었음 ⇒24번으로 감</p>
조사항목 정의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조사 년도	2005
조사표 내용	<p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2px;">(세는 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p> <p>15.경제활동상태 지난 일주일(2005.10.23-10.29) 동안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돕거나 부업, 아르바이트 등 조금이라도(1시간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①있음 ②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①② ⇒16번으로 감 ③없음(가사, 학업 등) ↵</p> <hr/> <p>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면 지난 달(10월)에 수입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까? ①찾아보지 않았음→20번으로 감 ②찾아보았음 ↵</p> <hr/> <p>만약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①일할 수 있었음 ②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 할 수 없었음 ⇒20번으로 감</p>
조사항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적인 직업이 없더라도 1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을 한 경우 ·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수입 있는 일(가게, 식당, 농사일 등)을 도운 경우도 수입 있는 일을 한 것으로 간주 - 「②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연가, 교육, 휴가, 노사분규, 원료부족 및 일기불순에 따른 작업중단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 - 「③없음(가사, 학업 등)」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가사, 통학, 취업준비, 연로, 장애, 군입대대기, 혼인준비, 쉬고있음 등 · 지난 1개월(2005년10월)에 일자리를 찾아보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함 <p>-구직활동이 ②찾아보았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난 주 동안 (2005.10.23~10.29)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p> <p>*일자리를 찾아보았음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등록, 면담 또는 전화상담, 광고게재, 구인광고란을 찾아봄,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노동 관련기관에 일자리 알선의뢰, 일자리를 찾아 사업장·농장·건설공사장등을 방문, 친구·친지에게 부탁 등</p>
자료공표 여부	공 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기본항목	<p>23. 이분은 지난주에 급료를 받는 일이나 소득이 되는 일을 하였습니까?(1시간만 일한 경우나 보수 없이 15시간 이상 가족사업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 군복무의 경우에도 “예”로 표시)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p> <p>29. -지난주에 직장에서 임시해고를 당하였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지난 주, 직장 또는 비즈니스에서 잠시 결근하였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휴가, 일시적인 병, 노동쟁의, 기타 <input type="radio"/> 아니오 -6개월 이내에 직장으로 복귀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나 복귀 날짜를 받았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p> <p>30. 지난 4주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p> <p>31. 만약 취직되었거나 재복귀통지를 받았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직장에 갈 수 있었음 <input type="radio"/> 아니오, 일시적인 병 <input type="radio"/> 아니오, 기타이유(학교등)</p> <p>32. 며칠이라도 이분이 마지막으로 일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input type="radio"/> 지난 12개월내 <input type="radio"/> 1~5년전 <input type="radio"/> 일한 적 없거나 5년이상</p> <p>33. 지난 12개월동안 몇 주를 일하였습니까? (유급휴가, 유급병가, 군복무포함) ()주</p> <p>34. 지난 12개월동안 일했던 주중에서 보통 주에 몇 시간을 일하였습니까?</p>	<p>이분은 지난주(9월 24-30일)에 일을 하였습니까?</p> <p>* 일이란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며 농사나 점포 등에서의 무급가족종사자 및 파트타임종사자, 가내수공업종사자도 포함됩니다.</p> <p>* 통학중은 예비학교 전문학교 등도 포함됩니다.</p> <p>-조금이라도 일한 사람은</p> <p><input type="checkbox"/> ① 로 일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② 집안일을 하면서 일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③ 학교(학원)를 다니면서 일하였음</p> <p>-조금도 일을 안 한 사람은</p> <p><input type="checkbox"/> ④ 일을 하여 왔으나 잠시 쉬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⑤ 일을 찾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⑥ 가사에 종사</p> <p><input type="checkbox"/> ⑦ 학교(학원)에 다님</p> <p><input type="checkbox"/> ⑧ 기타(연로, 연소 등)</p>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18. 지난주에 일을 하셨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용인 혹은 정부지원훈련으로 · 자영업/프리랜스 또는 가족사업으로 <p>-보건휴가, 공휴일, 임시해고,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안 한 경우도 “예”</p> <p>-임시적인 일을 포함하여 단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경우는 “예”</p> <p>-자가영업이나 가족사업에서 유급/무급으로 일한 경우는 “예”</p> <p>○예 ○아니오</p> <p>19.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보수 있는 일을 찾으셨나요?</p> <p>○예 ○아니오</p> <p>20. 지난주에 일을 구할 수 있었다면 2주내에 시작 할 수 있었을까요?</p> <p>○예 ○아니오</p> <p>21. 지난주에 이미 구한 일을 시작하려고 기다리셨나요?</p> <p>○예 ○아니오</p> <p>22. 지난주에 다음 중 어떤 상태였나요? ○은퇴 ○학생 ○가족 돌봄 ○장애/지병 ○해당없음</p> <p>23. 일한 적이 있으세요?</p> <p>○예(마지막으로 일한 년도를 적어주세요) ○일한 적 없음</p> <p>35. 주로 하는 일에서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시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시간 · 지난 4주 동안 평균시간 	<p>지난주는 2006년 5월 7~13을 말합니다. 33번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더라도 각 활동에 소요한 총 시간을 기입합니다.</p> <p>33. 지난주에 다음 활동을 하는데 몇 시간을 소요하셨나요?</p> <p>(a) 가구원이나 기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급의 가사노동을 하시나요? (예:식사준비, 세차, 세탁, 잔디깎기, 쇼핑 등)</p> <p>○없음 ○5시간미만 ○5-14시간 ○15-29시간 ○30-59시간 ○60시간 이상</p> <p>(b)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한 명이상의 자녀를 보수 없이 돌보시나요? (예:목욕이나 놀이, 야외활동 도와주기, 숙제도와주기, 청소년 고민상담 등)</p> <p>○없음 ○5시간미만 ○5-14시간 ○15-29시간 ○30-59시간 ○60시간 이상</p> <p>(c)한 명이상의 노인을 무보수로 돌보시나요?(예:돌봄, 방문, 전화로 대화, 쇼핑 도와주기, 은행업무, 약복용 돕기등)</p> <p>○없음 ○5시간미만 ○5-14시간 ○15-29시간 ○30-59시간 ○60시간 이상</p> <p>34. 지난주에 자영업이나 유급으로 몇 시간이나 일하셨나요?</p> <p>(임금, 월급, 수수료, 팁을 받고 일하는 경우, 혼자 또는 합동으로 자기사업, 농장이나 전문직업을 가진 경우, 정규보수체계없이 가족농장이나 사업을 직접 수행 등을 포함)</p> <p>일한 시간() ○없음</p> <p>35. 지난주에 임시해고나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오 ○예, 복귀할 예정으로 임시해고 ○예, 휴가, 병가, 파업, 기타의 사유</p> <p>36. 지난주에 다음 4주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p> <p>37. 지난 4주 동안 보수 있는 일을 찾아 보셨나요? (예:고용센터 방문, 고용주와 면담, 신문광고에 응모 등)</p> <p>○아니오 ○예, 종일근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예,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1주에 30시간미만)</p>

		<p>38. 지난주에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일을 시작하셨나요?</p> <p>○예 ○아니오, 이미 일하고 있음 ○아니오, 일시적 장애 또는 병 때문에 ○아니오, 개인적 또는 가족의 일 때문에 ○아니오, 학교에 감 ○아니오, 기타 다른 이유로</p> <p>39. 몇 일동안만이라도 자영업이나 보수 있는 일을 언제 하셨나요?</p> <p>○2006년 ○2005년 ○2005년 이전 ○없음.</p> <p>49. 2005년에 몇 주나 일하셨나요?(2005년에 했던 유급노동 이나 자영업의 총 기간을 기입)</p> <p>-유급휴가 또는 유급병가 -종일 또는 파트 타임근무 -임금, 월급, 팁, 수수료 받고 근무 -자영업 -정규보수체계없이 가족농장 이나 사업을 직접 수행 등을 포함 ○없음 또는 ()주</p> <p>50. 일한 주의 대부분을 종일근무하셨나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셨나요?</p> <p>○풀 타임(1주에 30시간 이상) ○파트 타임(1주에 30시간 이하)</p>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 성,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p

		2000		2005		증감	
취업자	계	18,456	100.0	19,277	100.0	821	0.0
	남	11,540	62.5	11,902	61.7	362	-0.8
	여	6,916	37.5	7,375	38.3	459	0.8
경제활동참가율	계	54.2		53.9		-0.3	
	남	70.3		68.7		-1.6	
	여	39.1		39.9		0.8	
실업율	계	4.3		4.4		0.1	
	남	4.7		4.3		-0.4	
	여	3.6		4.4		0.8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조사방법 및 기준문제 : 노동력 접근법, 평상상태 접근법, 유업자 접근법 등

- 노동력 (현재상태) 접근법

· 조사대상 기간 : 1주간

· 취업자 기준 : 1시간이상 수입목적으로 일을 함

- 평상상태 접근법

· 조사대상 기간 : 지속적인 기간(통상 1년)

· 취업자 기준 : 30일간 수입목적으로 일을 함

- 유업자 접근법

· 취업자 기준 : 기간에 관계없이 일의 여부로 판단

○ 센서스와 경제활동조사와의 결과 대치문제

- 과거 수차례의 조사에서는 양조사의 결과 차이가 비전문가 및 일반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조사방법을 달리 유지

- 하지만 센서스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접근법(노동력 접근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계절적 취업이 줄어들고 있어 노동력 접근방법이 취업자 파악에 보다 용이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모집단으로서 벤치마킹의 역할을 수행

3) 세계적으로 노동력 접근법에 의해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비교를 위해서도 필요

항목번호 21 : 종사상의 지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취업 형태 및 구조 파악
- 노동력 수급계획 및 고용대책 수립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유업상태 및 성,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
- 산업, 직업 유업상태 및 성별 유업자
- 가구주의 성, 종사상의 지위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90
조사표 내용	하시던 일에는 다 음 중 어디에 해 당됩니까? ① 단독 자영업주 ② 고용주 ③ 가족종사자 ④ 상용고 ⑤ 임시고 ⑥ 일 고	하시던 일에서의 지 위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주 ② 영세자영업주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고 ⑤ 임시고 ⑥ 일 고	어떠한 형태로 사 업에 참여 하였습 니까? ① 고용원을 둔 사업 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 영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임금봉급근로자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 습니까? 상단의 종사상의 지위 기입 예를 참조하여 기 입합니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임금봉급근로자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기입합니다.</p> <p>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임금봉급근로자</p>	<p>20. 종사상의 지위 수입이 있는 일에 어떠한 형태로 종사하였습니까? · “자유직업인”은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해당됩니다.</p> <p>①임금·봉급근로자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무급가족종사자</p>	<p>16. 종사상 지위 수입이 있는 일에 어떠한 지위로 종사하셨습니까? · ‘자유직업인’은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해당합니다.</p> <p>①임금근로자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④무급가족종사자</p>
조사항목 정의	<p>2005년 기준 : ①임금근로자는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고 그 대가로 봉급, 급여, 임금 또는 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급여를 주는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④무급가족 종사자는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 단 가족관계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 해당</p>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경제활동인구는 다음 고용상태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한다.</p> <p>(a)고용인, 안정적 계약을 맺은 고용인과 다른 고용인사에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p> <p>(b) 고용주 (c) 자영업자 (own-account worker) (d)무급가족종사자 (e)생산조합의 조합원 (f)분류할 수 없음. 고용인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어떤 분석적 목적 등으로 고용주와 함께 그룹화하는 것이 좋을 주식회사의 소유주와 관리자는(owner-managers) 각각 분리하는 것이 좋다</p>	<p>다음 질문은 지난 5년간 일하였던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p> <p>35-40번 질문은 현재 또는 가장 최근 근로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의 주요 근로활동이나 거래내용을 분명하게 기술하십시오. 만약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했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일을 기술하고 지난주에 아무 일도 안했다면 마지막으로 했던 일에 관해 대답하세요)</p> <p>35. 당신은_?</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사업체 개인회사 직원으로 임금, 급여, 커미션을 받음 ○ 민간비영리단체,세금면제단체,자선단체 고용자 ○ 지방정부 고용자 ○ 주정부 고용자 ○ 연방정부 고용자 ○ 자영업주(개인소유) ○ 자영업주(공동소유) ○ 무급가족종사자 	<p>고용인지 자영업인지 구분</p> <p>*임시직은 매일 또는 1년미만 기간으로 고용</p> <p>*자영업주는 개인사업(농가포함)이나 자유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용 2. 임시직 2. 회사 등의 임원 3. 고용주 4. 자영업주 5. 가족종사자 6. 가정내 샅일
조사항목 정의	<p>UN권고안의 정의 : 고용상태는 경제활동 하는 사람이 그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기관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맺은 고용계약의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분류 집단을 정의하는데 사용된 기본적 기준은 경제적 위험의 유형, 개인과 직업사이의 결속요소, 개인의 직업 또는 미래직업에서 다른 근로자와 사업체등 과의 권한의 유형 등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직업”, “산업”, “부문”에 의해 개인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 동일기반의 고용상태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한다.</p>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24. 아래 질문은 지난주에 주로 한 일을 기입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주로 한 일로 대답하세요. 주로 한 일이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하는 일입니다.</p> <p>25. 피고용인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자영업주 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피고용인 <input type="checkbox"/> 피고용인을 둔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프리랜서</p> <p>26. 작업장에 몇 명의 직원이 있나요? (당신이 자영업주라면 고용인 수를 체크) <input type="checkbox"/> 1-9 <input type="checkbox"/> 10-24 <input type="checkbox"/> 25-499 <input type="checkbox"/> 500이상</p>	<p>44. 근로형태 ○ 임금, 월급, 수수료, 팁을 받고 일하시나요? ○ 가족농장 또는 가족사업에서 배우자 또는 다른 친척을 위하여 보수 없이 일하시나요? ○ 무보수의 도움을 받아 자영업(혼자 또는 합동)? ○ 보수를 지급하고 도움을 받아 자영업(혼자 또는 합동)?</p> <p>45. 자영업을 하신다면 개인농장이나 사업체이십니까? ○ 아니오 ○ 예</p>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2005)

○ 종사자의 지위별 취업자(15세이상)

(단위 : 천명, %)

	계	임금 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계	19,277	12,524	4,029	1,292	1,431
남	11,902	7,767	2,922	1,050	162
여	7,375	4,757	1,107	242	1,269
구성비					
계	100.0	65.0	20.9	6.7	7.4
남	100.0	65.3	24.6	8.8	1.4
여	100.0	64.5	15.0	3.3	17.2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임시고용자 구분 여부 및 방법

항목번호 22 : 산업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영농가 비동가의 구분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취업 형태 및 산업구조 파악
- 노동력 수급계획 및 고용대책 수립
- 산업구조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산업·직업 및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별 취업자
- 산업 및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5	1980	1985	1990
조사표 내용	<p>구 체 적 으 로 어떤 사업체 또는 분야에서 일하셨습니까?</p> <p>* 실업자는 전 산업을 쓰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입 (예) 내가 경 작하는 논</p>	<p>하신 사업이나 다니신 직 장의 이름과 사업의 내용 은 무엇입니까?</p> <p>*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논 밭 양식장 점포 사장 등 일한 곳을 물어 기입한다.</p> <p>직장이름 _____ 주된 사업내용 _____</p>	<p>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나 다니는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직장명 이나 사업체명이 있으 시 면 말씀하여 주십시오.</p> <p>주된 사업내용 _____ 직장 사업체명 _____</p>	<p>이분이 다니시는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 까? 직장명이나 사업 체명이 있다면 기입하 여 주십시오.</p> <p>상단 산업 기입 예를 참조하시고 주된 사업 내용을 기입할 때에는 생산품목 이름을 구체 적으로 기입합니다.</p> <p>주된 사업내용 _____ 직장 사업체이름 _____</p>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년도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일을 한 직장이나 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장소를 기입합니다. ·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p>직장 사업체 이름 _____ 주된 사업내용 _____</p>	<p>21. 산업</p> <p>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장소를 기입합니다. <p>그 직장(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p>직장·사업체 이름 <input type="text"/> 주된 사업 내용 <input type="text"/></p>	<p>17. 산업</p> <p>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취급상품명이나 제공 서비스 등 산업활동을 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p>그 직장(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p>직장·사업체 이름 (서울화학 영등포 1공장) 주된 사업내용(기초화장품 제조·영양크림, 스킨 로션 등)</p>
조사항목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사업체이름에서 상호가 없이 장사하거나 농사짓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기입합니다. · 주된 사업내용은 조사대상자가 속한 사업체가 어떤 일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사용된 원료, 생산 시설, 생산 공정, 산출물의 명칭이나 종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사업체 이름과 이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사업내용을 기입하며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체이름과 사업내용을 기입합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기본항목 2.223. The questionnaire should ask each active person</p> <p>1. What is the name of Your Employer and What is the address of your place of work?</p> <p>2. What are the main products and services produced at the place of work or what are the main functions?</p>	<p>36. 일한 곳은 어디입니까? * 군복무중이면 O에 마크하시고 군부대명을 적으시오 _____</p> <p>37.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나 직장이었습니까?(예: 병원, 출판사, 우체국, 자동차제조사, 은행 등) _____</p> <p>38. 주로 취급하는 일이 O 제조업입니까? O 도매 거래를 합니까? O 소매 거래를 합니까? O 기타(농업, 건축, 서비스, 공무원 기타)</p>	<p>사업체의 이름 및 사업 내용</p> <p>일을 하고 있는 사업소(사무소, 공장, 가게 등)의 명칭을 기입하십시오</p> <p>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p> <p>사업체이름 _____</p> <p>사업내용 _____</p>
조사항목 정의	경제활동상태 조사기간에 일을 한 사업체의 활동을 말하며 분류기준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제산업분류(ISIC) 체계에 의한다.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30. 당신의 고용주는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예 : 신발 제조, 차량수리, 고등교육, 음식도매, 의류소매, 의사의 수술</p> <p>-당신이 자영업자/프리랜서 또는 자기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특성을 기입하십시오.</p> <p>-공무원인 경우는 부서를 기입</p> <p>32. 당신이 일하는 사업체(기관)의 명칭을 적어주세요. ()</p>	<p>40.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명을 쓰시고 사업명이 없다면 개인의 이름을 쓰세요. 회사명, 정부기관 등()</p> <p>가능하면 부서까지 써주세요()</p> <p>41. 어떤 종류의 사업 또는 산업입니까? (자세하게 기입. 예:주택건축, 초등학교, 시경찰, 밀농장, 신발가게, 음식도매, 자동차공장)</p> <p>사업, 산업, 서비스업명()</p>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2005)

○ 산업별 취업자(15세이상)

(단위 : 천명, %)

산업	인구주택총조사(A)		경제활동인구조사(B)		차(A-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9,277	100.0	22,856	100.0	△3,579	
A. 농림어업	2,100	10.9	1,815	7.9	285	3.0
B. 광업	20	0.1	17	0.1	3	0.0
C. 제조업	3,804	19.7	4,234	18.5	△430	1.2
D.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529	7.9	1,885	8.2	△356	△0.3
E. 도매 및 소매업	2,897	15.0	3,748	16.4	△851	△1.4
F. 숙박 및 음식점업	1,493	7.7	2,058	9.0	△565	△1.3
G. 운수·통신업	1,117	5.8	1,428	6.2	△311	△0.4
H.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1,095	5.7	1,243	5.4	△148	0.3
I. 사업서비스업	1,122	5.8	1,540	6.7	△418	△0.9
J.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	2,740	14.2	3,005	13.1	△265	1.1
K. 오락문화개인서비스업	1,300	6.7	1,856	8.1	△556	△1.4

※계에는 산업미상 및 기타 포함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응답 거부 및 기피 해소방안
 - Privacy 문제로 거부하는 경우
 - 응답자가 가구원 개개인 사업체의 산업을 모르는 경우
- 산업란의 작성 예시 개발
 - 응답자 입장에서 쉽게 사업체의 산업을 기재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 개발
- 산업란 Coding 방법 개선
 - 지역별 사업체 조사자료 이용방법 검토
- 산업분류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 : 소분류 및 세분류

항목번호 23 : 직업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취업 형태 및 직업구조 파악
- 노동력 수급계획 및 고용대책 수립
- 교육 및 직업의 연계성 검토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직업 및 취업상태, 성, 연령, 산업, 혼인상태별 취업자
- 가구주의 직업 및 세대구성, 가구규모별 가구
- 직업 및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80	1985	1990
조사표 내용	무슨 일을 하셨습니 까?	어느 부서에서 일 을 하였습니까? 부서 _____ 직책 _____ ----- 맡은 일 또는 한 일의 내용을 자세 히 말씀하여 주십 시오. _____	이분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위 또는 직명도 말 씀하여 주십시오. 맡은 일의 종류 _____ 직위 또는 직명 _____	이분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 습니까? 부서 및 직책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상단의 직업 기 입 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 니다. 맡은 일의 종류 _____ 부서 및 직책 _____
	1975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일하는 곳에서의 부서 및 직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하고 있)습니까?</p> <p>* 위의 기입 예를 참조하여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p> <p>부서 및 직책 _____</p> <p>하고 있는 일의 종류 _____</p>	<p>22. 직업</p> <p>일하는 곳에서의 부서 및 직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서 응답한 일을 말합니다. · 직장이나 사업체를 옮겼더라도 같은 일이면 포함됩니다. <p>부서 및 직책 <input type="checkbox"/></p> <p>하고 있는 일의 종류 <input type="checkbox"/></p>	<p>18. 직업</p> <p>이 분이 일하는 곳의 부서와 직책(또는 직업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및 직책(또는 직업명)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부서'란에 일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조사항목 정의	-	-	조사대상자가 일하고 있는 부서 및 직책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기입하되 업무(임무)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주된 것을 기입합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기본항목	<p>39. 직업은 무엇입니까?</p> <p>_____</p> <p>(예: 간호사, 인사담당, 구매담당 관리자, 비서, 회계사)</p> <p>40.이분이 맡고 있는 주요활동이나 임무는 무엇입니까?</p> <p>_____</p> <p>(예: 환자돌보기, 인사관리, 고용정책수립, 직원 감독, 금융관련 중재자)</p>	<p>본인의 일의 종류</p> <p>본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p> <p>_____</p>
조사항목 정의	경제활동상태 조사기간에 일을 한 형태를 말하며 분류기준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제표준직업분류 (ICLS-87, ISCO-88)체계에 의한다.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27. 직업의 이름을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예:초등학교교사, 주등록간호사, 자동차정비, TV수리, 자산관리사, 시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p> <p>28. 직장에서 하시는 일을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p> <p>29. 다른 고용인을 감독하는 일을 하시나요?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p>42.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기입. 예:법률비서, 배관공, 낚시가이드, 목재가구조립, 고등학교교사 등. 군인이라면 계급을 기입)</p> <p>직업명()</p> <p>43. 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을 적어주세요.(자세하게 기입. 예:법률서류준비, 배관설치, 낚시터안내, 목재가구제품생산, 수학과목 교사)</p> <p>주요 업무()</p>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2005)

○ 직업별 취업자(15세이상)

(단위 : 천명, %)

직업	인구주택총조사(A)		경제활동 인구조사(B)		차 (A-B)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19,277	100.0	22,856	100.0	△3,579
0.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693	3.6	574	2.5	119
1. 전문가	1,912	9.9	1,839	8.0	73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732	9.0	2,363	10.3	△631
3. 사무종사자	3,144	16.3	3,269	14.3	△125
4. 서비스종사자	1,864	9.7	2,962	13.0	△1,098
5. 판매 종사자	2,116	11.0	2,663	11.7	△547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2,053	10.6	1,708	7.5	345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928	10.0	2,436	10.7	△508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239	11.6	2,563	11.2	△324
9. 단순노무종사자	1,447	7.5	2,479	10.8	△1,032
10. 기타	79	0.4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응답 거부 및 기피 해소방안
 - Privacy 문제로 거부하는 경우
 - 응답자가 가구원 개개인의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
- 직업란의 작성 예시 개발
 - 응답자 입장에서 쉽게 가구원의 직업을 기재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 개발
- 산업란 Coding 방법 개선
 - 지역별(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종류 리스트 작성 및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시군별로 자기 지역에 있는 주요 직업 리스트 및 예시자료 작성 제공
 - 직업은 그 지역의 산업현황과 밀접한 관계있음
- 직업분류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 : 소분류 및 세분류

항목번호 24 : 개인소득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소득계층별 주거, 교육, 출산력 수준, 통·근학 특성 등 분석
- 지역별 소득분석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지난 한달(9.1~9.30일) 동안 의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 직업란에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득 란은 질문하지 않음. 단, 임금 농업 종사자는 질문 ① 임금 및 봉급 _____원 ② 사업이윤 _____원 (개인사업소득 등) ③ 기타 _____원 계 _____원	-	-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	-	-
자료공표 여부	-	미공표	-	-	-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 내용	권고항목 (2.304~2.308)	<p>41. 지난 12개월간 소득</p> <p>이 사람이 받은 모든 형태의 수입을 yes박스예, 지난 12월간 총수입의 최상의 추정치를 기입(지난 12개월은 오늘로부터 1년 전), 순수입이 손실이라면 오른쪽 "loss"란에 기입. 결합수입인 경우 각 개인의 할당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 사람에게 모든 수입을 적고 다른 사람은 "no"로 기입.</p> <p>a. 모든 직장에서 받는 임금, 급여, 커미션, 보너스 또는 팁(세금차감전)</p> <p>○ 예, 연간 _____ 달러 ○ 아니오</p> <p>b. 개인경영이나 공동 경영의 비농장 또는 농장업에서 자영으로 번 소득(순수입)</p> <p>○ 예, 연간 _____ 달러 ○ 손실 ○ 아니오</p> <p>c. 이자, 이익배당금, 임대소득 (순소득), 특허권사용료 수입, 또는 부동산이나 신탁물에서의 소득</p> <p>○ 예, 연간 _____ 달러 ○ 손실 ○ 아니오</p> <p>d. 사회보장(SS) 혜택 및 철도퇴직금</p> <p>○ 예, 연간 _____ 달러, ○ 아니오</p> <p>e. 생계보조비(SSI)</p> <p>○ 예, 연간 _____ 달러, ○ 아니오</p> <p>f. 주정부나 지방복지기관에서의 보조금</p> <p>○ 예, 연간 _____ 달러, ○ 아니오</p> <p>g. 퇴직금, 유족, 장애 연금</p> <p>○ 예, 연간 _____ 달러, ○ 아니오</p> <p>h. 재향군인 보조금, 실업수당, 자녀양육비, 별거 수당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주택판매나 유산 같은 일시금은 제외)</p> <p>○ 예, 연간 _____ 달러, ○ 아니오</p> <p>42. 지난 12개월간 총 소득은?(41번a-h까지 더하고 손실은 뺀다. 순수입이 손실이면 손실액을 적고 손실란에 체크)</p> <p>○ 없음 또는 _____ 달러 ○ 손실</p>	<p><가구에 관한 항목으로 조사></p> <p>가계수입의 종류</p> <p>*주된 것 하나에 체크하고, 다음 줄에는 기타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p> <p>○ 현금, 급여</p> <p>○ 농업수입</p> <p>○ 사업수입 및 기타</p> <p>○ 내직수입</p> <p>○ 연금</p> <p>○ 송금</p> <p>○ 기타수입</p>
조사 항목 정의	(a)각 가구원이 벌어들인 현금 또는 동종의 수입과 (b)모든 소득 원으로부터 전체 가구의 현금 또는 동종의 수입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p>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52번에 응답하는 대신 이미 작성한 소득세 파일을 이용하여 통계청이 소득정보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옵션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환급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 이 자료는 오직 통계목적용 위해서만 사용된다. <p>51. 당신은 2005년 12월31일까지의 당신의 소득세 파일을 통계청에 제공합니까?</p> <p>o 예(질문 53) o아니오(질문52)</p> <p>52. 2005년 말까지 당신은 아래 소득원으로부터 받은 수입이 있었나요? (“Yes”라면 금액을 써주시고 손실이 있는 경우는 “loss”에 마킹, 없는 경우는 ”No”에 마킹하세요)</p> <p><임금근로자></p> <p>(a)수수료, 보너스, 팁, 연구비, 로얄티 등을 포함한 세금차감 전 총 월급 또는 임금 o 예()달러 o 아니오</p> <p><자영업자></p> <p>(b)순농장소득(총수입-비용), 농장지원프로그램에 의한 보조금, 지원금, 총보험수익, marketing board payment포함</p> <p>(c)비법인기업, 전문직 관습으로부터의 순비농장소득(총소득-비용)</p> <p><정부이전></p> <p>(d)아동세금보조, 가족수당 같은 child benefits(연방, 지방)</p> <p>(e)연방정부로부터의 노령자안전연금, 보증수입보조, 수당, 생계수당</p> <p>(f)캐나다나 퀘백연금계획으로부터의 보조금</p> <p>(g)고용보험소득(세차감전)</p> <p>(h)정부로부터의 기타소득(지방정부소득보전과 보조, GST/QST/HST 공제, 지방정부세금공제, 근로자의 보상, 상이군인연금, 복지수당 등)</p> <p><기타소득></p> <p>(i)배당금, 채권이자, 예금과 저축증서와 부동산의 순임대수입, 저당 이자같은 기타투자소득(자본이득/손실은 불포함)</p> <p>(j)퇴직연금, RRSPs와 RRIFa같은 연금.(연금이나 RRSP의 철회 등 불포함)</p> <p><모든 소득원에서의 2005년 총소득></p> <p><2005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연방, 지방)></p>
조사항목 정의	-	-

6.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조사필요성 및 센서스에서 조사가능성
- 응답 거부 및 기피 해소방안
 - 세금 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대답 또는 대답 자체를 기피함

**항목번호 25 :
심신장애&거동불편 여부**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불구상태: Physical disability)	-	-	-	-	●	-	-	-	○ (거동불편 여부)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장애인 복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노인의 생활불편정도를 파악하여 노인시설 및 인력,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장애인구 비율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p>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하여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맥에는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p> <p>※()안에 가구원 일련번호를 기입한다.</p> <p>1. 있다</p> <p>① 병어리()</p> <p>② 붕 사()</p> <p>③ 지체손실()</p> <p>④ 지체마비()</p> <p>⑤ 정신박약()</p> <p>⑥ 정신이상()</p> <p>⑦ 기 타()</p> <p>2. 없다</p>	-	<p>29. 거동불편여부 집안 활동(식사, 목욕, 화장실 출입 등)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p> <p>① 혼자서 할 수 있음</p> <p>② 혼자서 할 수 없음</p> <p>-----</p> <p>-----</p> <p>-----</p> <p>바깥 활동(산책, 시장 또는 병원 가기 등)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p> <p>① 혼자서 할 수 있음</p> <p>② 혼자서 할 수 없음</p>	<p>10. 활동계약</p> <p>6개월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p> <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p>① 시각청각언어장애</p> <p>② 치매 ③ 중풍</p> <p>④ 걷기, 계단오르기, 들고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 ⑤ 학습의 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p> <p>⑥ 없음</p> <p>11.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까?</p> <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p>· 취업활동은 세는 나이로 16세이상만 표시합니다.</p> <p>①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p> <p>②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p> <p>③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p> <p>④ (16세이상) 취업활동</p> <p>⑤ 없음</p>
조사항목 정의	-	-	-	-	<p>-육체적·정신적장애, 육체적 불편(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 교령에 의한 노환 등에 따른 활동제약을 모두 포함</p> <p>-육체적·정신적 제약과 활동계약은 각각 별개 항목으로 조사</p> <p>-6개월 기준은 이미 6개월이 지났거나 앞으로 6개월이상 제약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p>
자료공표 여부	-	-	-	-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2.258~2.277. Disability</p> <p>UN에서는 장애항목을 조사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항목은 1980년 WHO가 제기한 사항으로서 3가지 차원에서 분류하고 있다. (2.258~2.260.)</p> <p>Impairment : 신체기관이나 신체부위의 생리학적, 신경학적,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손실이나 일탈한 상태(신체기관 차원)</p> <p>disability : 개인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서의 활동(배우기, 말하기, 걷기 등과 같은 활동)능력이 제한적이거나 부족한 상태(개인적인 차원)</p> <p>handicap : 장애인과 사회 및 물리적 환경(예를 들면, 교육, 직업, 정보통신 분야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제약(사회적 차원)</p>	<p>15.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장기지속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p> <p>a. 소경, 귀먹음, 또는 시력이나 청각에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까? b. 걷기, 계단오르기, 펴기, 들어 올리기, 나르기 등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까?</p> <p>16. 6개월 이상의 장기적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인 건강상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a. 배우기, 기억하기, 또는 집중하기 b.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집 안 여기저기 다니기</p> <p>17.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인 건강상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p> <p>a. (15세 이상만) 쇼핑을 가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 혼자 집을 나서기 d. (15세 이상만) 직장 일이나 사업 일하기</p>	-
조사항목 정의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11. 지난 12개월 간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어떠셨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좋음? <input type="checkbox"/> 상당히 좋음? <input type="checkbox"/> 좋지 않음?</p> <p>13. 장기질병, 건강문제 또는 일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습니까?(고령으로 인한 것도 포함)</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7. 당신은 듣기, 보기, 의사소통, 걷기, 계단오르기, 구부리기, 배우기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가끔 <input type="radio"/> 예, 자주 <input type="radio"/> 아니오</p> <p>8. 육체적, 정신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활동에 제약이 있으십니까? (a)집에서? <input type="radio"/> 예, 가끔 <input type="radio"/> 예, 자주 <input type="radio"/> 아니오 (b)직장이나 학교에서? <input type="radio"/> 예, 가끔 <input type="radio"/> 예, 자주 <input type="radio"/> 아니오 <input type="radio"/> 적용할 수 없음 (c)교통수단이용이나 레저같은 다른 활동은? <input type="radio"/> 예, 가끔 <input type="radio"/> 예, 자주 <input type="radio"/> 아니오</p>

6. 최근 조사결과(2005)

○ 활동제한형태

(단위 : 천명, %)

	정신적, 육체적 활동제한			일상생활 활동제한	
	활동제한자	비율		활동제한자	비율
하나라도 있음	2,439	5.5	하나라도 있음	1,769	4.0
시각·청각·언어장애	470	1.1	배우기·기억·집중하기	630	1.4
치매	81	0.2	집안활동(옷입기, 목욕하기 등)	397	0.9
중풍	183	0.4	집밖 활동(쇼핑, 병원가기 등)	1,203	2.7
육체적 제약(걸기, 계단오르기, 들고운반하기 등)	1,829	4.2	취업활동(15세이상)	555	1.3
정신적 제약(학습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377	0.9	-	-	-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장애인 조사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 : 조사방법 및 가능성 검토 필요
- 80년 이후 장애인 항목은 조사되지 않았음
- 현재 5년단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 통계가 표본추출되어 조사되고 있음

항목번호 26 : 전공학과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분야별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성, 연령, 지역별로 파악
- 국민의 지식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산업 및 직업의 연관성, 잠재적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파악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교육정도, 산업, 직업, 현직업 근무연수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	-	전공 학과 또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실업고, 초대, 대학 졸업자에만 묻는다. ※ 전공학과 구분 - 실업고 : 11. 농업계, 12. 공업계, 13. 상업계, 14. 수산 및 해 양계, 15. 가정계, 16. 예술계, 17.철도 18. 체신, 19. 기타 - 초대 : 21. 사회과학계, 22. 공학계, 23. 농림학계, 24. 수산 및 예술계, 25. 예술계, 26. 체육계, 27. 의약학계, 28. 이학계, 29. 기타(사범계) - 대학 : 31. 어문학계, 32. 예술학계, 33. 인문과학계, 34. 사회과학계, 35. 이학계, 36. 체육학계, 37. 중화학공 학계, 38. 경공학계, 41. 의약학계, 42. 농림학계, 43. 수산, 해양계, 44. 사범계, 49. 기타(공통)계	-	-	-	최종 졸업 또는 수료 한 학교의 전공분야 는 무엇입니까 * 대학이상 졸업, 수료인 경우만 기입합니다. ① 어문학계열 ② 인문학 계열 ③ 사회계열 ④ 이학계열 ⑤ 공학계열 ⑥ 농림학 계열 ⑦ 수산해양학 계열 ⑧ 가정학 계열 ⑨ 의학계열 ⑩ 약학계열 ⑪ 예술학계열 ⑫ 체육학계열 ⑬ 사범계열
조사항목 정의	-	-	-	-	-	-	-
자료공표 여부	-	-	-	-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에 의거 2자리수 까지 분류토록 권고 * ISCED 의 2자리 분류 0. 일반프로그램(01 기본프로그램, 02 문학 및 수리, 03 개인발전), 1. 교육(13. 교사훈련 및 교육과학), 2. 인문 및 예술(21. 예술, 22인문학), 3. 사회과학, 사업 및 법률(31 사회 및 행동과학, 32 저널리즘 및 정보, 34 사업 및 행정), 4. 과학(42. 생명과학, 44. 물리학, 46. 수학 및 통계학, 48. 계산학), 5. 공학, 제조 및 건설(52. 공학 및 공학 무역, 54. 제조 및 처리, 58. 건축 및 건설), 6. 농업(62. 농림수산업, 64. 수의학), 7. 보건복지(72. 보건, 76. 사회서비스), 8. 서비스(81. 개인서비스, 84. 교통서비스, 85. 환경보호, 86. 보안서비스), 9. 미상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2000)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별	15세 이상 인구	대학 졸업·수료 이상 인구	어문학 졸업·수료	인문학 졸업·수료	사회학 졸업·수료	이학 졸업·수료	공학 졸업·수료	농림학 졸업·수료	수산해양학 졸업·수료
계	35,584,279	7,553,766	594,615	1,324,915	1,060,818	604,888	1,862,905	194,050	46,944
남	17,225,070	4,407,125	233,360	791,498	705,938	353,971	1,615,841	157,465	43,373
여	18,359,209	3,146,641	361,255	533,417	354,880	250,917	247,064	36,585	3,571
구성비(%)									
계	100.0	21.2	1.7	3.7	3.0	1.7	5.2	0.5	0.1
남	100.0	25.6	1.4	4.6	4.1	2.1	9.4	0.9	0.3
여	100.0	17.1	2.0	2.9	1.9	1.4	1.3	0.2	0.0

가정학 졸업·수료	의학 졸업·수료	약학 졸업·수료	예술학 졸업·수료	체육학 졸업·수료	사범 졸업·수료	전공미상 졸업·수료	대학·졸업 수료 미만 인구	미상
449,592	328,761	56,591	489,504	114,197	425,633	353	28,018,015	12,498
25,121	119,185	22,926	122,769	85,646	129,799	233	12,810,734	7,211
424,471	209,576	33,665	366,735	28,551	295,834	120	15,207,281	5,287
구성비(%)								
1.3	0.9	0.2	1.4	0.3	1.2	0.0	78.7	0.0
0.1	0.7	0.1	0.7	0.5	0.8	0.0	74.4	0.0
2.3	1.1	0.2	2.0	0.2	1.6	0.0	82.8	0.0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유사학과라도 학교에 따라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음
 - 통계학과 :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 응답자가 가구원의 전공계열을 잘 알지 못함

항목번호 27 : 아동보육실태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 및 이용실태
- 아동보육과 여성의 노동, 노인의 손자녀 보육부담 등 아동, 여성, 노인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교육정도
-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0	2005
조사표 내용	<p>8. 아동보육상태 이 아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5시)에 누가(어느 곳에서)돌보았습니까?</p> <p>· 세는 나이1세~초등학교 아동까지만 기입</p> <p>· 초등학교생은 방과 후의 상태를 기준</p> <p>·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곳 2개에만 ○표 합니다.</p> <p>① 자녀의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파출부, 가정부, 이웃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및 기타 보육시설 ⑦ 놀이방 ⑧ 학원(예, 체능 포함) ⑨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⑩ 기타()</p>	<p>8. 이 아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9시~오후6시)에 누가(어느곳에서)돌보았습니까?</p> <p>· 지난 일주일은 「2005년10월23일~10월29일」 입니다.</p> <p>· 학생은 방과 후의 보육상태를 기준</p> <p>·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p> <p>①자녀의 부모 ②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시설⑧ 학원(예, 체능 포함) ⑨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⑩ 기타()</p> <hr/> <p>이 아동의 어머니는 이 가구에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다면 어머니의 성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①함께 살고 있음 →성명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type="text"/></p> <p>②함께 살고 있지 않음</p>
항목정의	-	-
자료공표 여부	-	-

5. 최근 조사결과

2000								
계	단일수단 계	① 자녀의 부모	② 조부모	③ 기타 가족,친인척	④ 파출부,가 정부,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기타 보육시설	⑦ 놀이방
8,190,680	6,133,932	3,419,857	407,455	53,779	30,505	287,493	230,807	78,131
100.0(%)	74.9	41.8	5.0	0.7	0.4	3.5	2.8	1.0

⑧ 학원	⑨ 혼자,아동 끼리	⑩ 기타	복합수단 계	②③④ + ⑧	⑤⑥⑦ + ⑧	복합수단 기타	미상
1,364,464	248,724	12,717	2,054,987	98,422	46,704	1,909,861	1,761
16.7	3.0	0.2	25.1	1.2	0.6	23.3	0.0

2005								
아동인구	단일 보육상태 -계	부모	조부모(친 가·외가)	기타 가족 및 친인척	가사도우미 및 이웃사람	유치원	어린이집 및 놀이방	기타 보육시설
7,373,798	5,006,089	2,914,663	398,399	44,883	27,950	175,863	291,989	11,198
100.0(%)	67.9	39.5	5.4	0.6	0.4	2.4	4.0	0.2

학원(예 체능 포함)	혼자 또는 아동끼리	기타 단일 보육상태	복합 보육상태 -계	부모/학 원(예체 능 포함)	부모/어린이 집·놀이방	부모/유 치원	기타 복합 보육상태	아동 보육상태 미상
953,336	172,029	15,779	2,364,561	1,147,837	323,561	322,289	570,874	3,148
12.9	2.3	0.2	32.1	15.6	4.4	4.4	7.7	0.0

6.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가구주와 부자관계가 아닌 아동의 어머니를 찾기 곤란
- 사생활 침해요소
- 형태가 다양하여 시의적절한 응답범주 선정곤란

항목번호 28 : 고령자 생활비 원천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노인의 경제적인 자립도 분석
- 노인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성, 연령, 생활비 원천별 고령자
- 성, 세대구성, 생활비 원천별 고령자
- 성, 교육정도, 생활비 원천별 고령자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0	2005
조사표 내용	<p>27. 생계수단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아 생활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아 생활</p> <hr/> <p>28. 주부양자 다른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그 사람(단체)은 누구이며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여러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경우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단체)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장남, 며느리 ② 그 외의 아들, 며느리 ③ 딸, 사위 ④ 기타 친척 ⑤ 정부, 사회단체 ⑥ 기타 ()</p> <hr/> <p>① 함께 살고 있음 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p>	<p>24. 고령자 생활비 원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본인 및 배우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두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①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④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채권, 증권 ⑦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기타 ()</p>
항목정의	-	-
공표여부	-	공표

5. 최근 조사결과

생계수단별	2000년 계	구성비(%)	남	구성비(%)	여	구성비(%)
계	3,371,333	100.0	1,286,869	100.0	2,084,464	100.0
본인 배우자 전부 부담	1,096,823	32.5	617,582	48.0	479,241	23.0
일부 지원받아 생활	1,532,138	45.4	477,962	37.1	1,054,176	50.6
전부 지원받아 생활	740,898	22.0	190,718	14.8	550,180	26.4
미상	1,474	0.0	607	0.0	867	0.0

2005								
인구(65세 이상)	단일수단의 생활비원천-계	본인·배우자의 일	예금·적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함께 사는 자녀	따로 사는 자녀
4,367,265	3,258,340	685,240	132,828	136,459	27,465	91,337	928,371	912,112
100.0(%)	74.6	15.7	3.0	3.1	0.6	2.1	21.3	20.9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기타 단일수단	복합수단의 생활비원천-계	본인·배우자의 일 / 따로 사는 자녀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	예금·적금/따로 사는 자녀	기타 복합수단	생활비원천 미상
255,504	89,024	1,108,847	201,080	138,252	100,794	668,721	78
5.9	2.0	25.4	4.6	3.2	2.3	15.3	0.0

6.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고령화 사회현상· 복지항목 필요성과 관련하여 고령자 실태에 관한 항목 재검토
- 자료이용기관 설문조사(2003. 4) 결과 이용빈도 낮음(0.2%)

항목번호 29 : 컴퓨터 활용 상태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개인, 가구, 지역 특성별로 컴퓨터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정보화 수준 및 전자 상거래 시장의 잠재적 규모 파악
- 개인, 가구, 지역별로 국민의 정보통신 활용수준 및 실태를 파악

3.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0	2005
조사표 내용	<p>12. 컴퓨터 활용상태 평소 컴퓨터(PC)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직장, 학교, PC방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4개월 이상에 1번 사용하는 경우”는 「⑤사용하지 않음」에 ○표 합니다</p> <p>① 매일(주5일 이상) ② 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 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 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 사용하지 않음</p>	-
항목정의	-	-
공표여부	-	-

4. 최근 조사결과(2000)

성별	계	매일사용	1주일에 1번이상 사용	1달에 1번이상 사용	1달에 1번미만 사용	사용안함	미상
계	43,406,132	14,164,222	6,128,377	1,325,580	510,196	21,268,314	9,443
남	21,360,576	8,401,677	3,007,415	601,932	227,280	9,116,971	5,301
여	22,045,556	5,762,545	3,120,962	723,648	282,916	12,151,343	4,142
구성비(%)							
계	100.0	32.6	14.1	3.1	1.2	49.0	0.0
남	100.0	39.3	14.1	2.8	1.1	42.7	0.0
여	100.0	26.1	14.2	3.3	1.3	55.1	0.0

항목번호 30 : 인터넷 활용 상태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개인, 가구, 지역 특성별로 인터넷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정보화 수준 및 전자 상거래 시장의 잠재적 규모 파악
- 개인, 가구, 지역별로 국민의 정보통신 활용수준 및 실태를 파악

3.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0	2005
조사표 내용	<p>13. 인터넷 활용상태 평소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p> <p>· 직장, 학교, PC방 등에서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p> <p>· “4개월 이상에 1번 사용하는 경우”는 「⑤사용하지 않음」에 ○표 합니다.</p> <p>① 매일(주5일 이상) ② 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 1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음 ④ 2~3달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⑤ 사용하지 않음</p>	-
항목정의	-	-
공표여부	-	-

4. 최근 조사결과(2000)

성별	계	매일사용	1주일에 1번이상 사용	1달에 1번이상 사용	1달에 1번미만 사용	사용안함	미상
계	45,221,041	10,830,863	5,444,238	1,141,310	447,757	27,347,400	9,473
남	22,311,974	6,399,395	2,792,537	536,342	205,254	12,373,130	5,316
여	22,909,067	4,431,468	2,651,701	604,968	242,503	14,974,270	4,157
구성비(%)							
계	100.0	24.0	12.0	2.5	1.0	60.5	0.0
남	100.0	28.7	12.5	2.4	0.9	55.5	0.0
여	100.0	19.3	11.6	2.6	1.1	65.4	0.0

항목번호 31 :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개인, 가구, 지역 특성별로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를 조사하여 국민의 정보화 수준 파악
- 개인, 가구, 지역별로 국민의 정보통신 활용수준 및 실태를 파악

3.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0	2005
조사표 내용	<p>14.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 이동전화기나 무선호출기(삐삐)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동전화기나 무선호출기는 제외합니다.</p> <p>① 이동전화기(휴대폰 또는 차량전화) ② 무선호출기(삐삐) ③ 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모두 ④ 없음</p>	-
항목정의	-	-
공표여부	-	-

4. 최근 조사결과(2000)

성별	계	보유 계	이동전화기 보유	무선호출기 보유	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보유	없음	미상
계	42,091,518	21,298,828	21,025,308	70,946	202,574	20,783,226	9,464
남	20,670,910	12,846,277	12,684,441	37,201	124,635	7,819,351	5,282
여	21,420,608	8,452,551	8,340,867	33,745	77,939	12,963,875	4,182
구성비(%)							
계	100.0	50.6	50.0	0.2	0.5	49.4	0.0
남	100.0	62.1	61.4	0.2	0.6	37.8	0.0
여	100.0	39.5	38.9	0.2	0.4	60.5	0.0

항목번호 32 : 현직업 근무 연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직업별로 전문성 및 숙련도 축적을 간접 측정함으로써 노동, 교육, 정보화와 연계하여 국민의 지식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

3.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0	2005
조사표 내용	<p>23. 현직업 근무연수 현재하고 있는 일을 얼마 동안이나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하고 있는 일은 위의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서 응답한 일을 말합니다. · 직장이나 사업체를 옮겼더라도 같은 일이면 포함됩니다. <p>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2개월 미만 ③ 1년-3년 미만 ④ 3년-5년 미만 ⑤ 5-10년 미만 ⑥ 10년-15년 미만 ⑦ 15-20년 미만 ⑧ 20년 이상</p>	-
항목정의	-	-
공표여부	-	-

4. 최근 조사결과(2000)

근무년수별	2000년 취업자	구성비(%)	남	구성비(%)	녀	구성비(%)
계	35,584,279	100.0	17,225,070	100.0	18,359,209	100.0
6개월 미만	2,219,372	6.2	1,150,190	6.7	1,069,182	5.8
6 - 12개월	1,679,421	4.7	884,856	5.1	794,565	4.3
1 - 3년	3,298,565	9.3	1,854,639	10.8	1,443,926	7.9
3 - 5년	1,973,114	5.5	1,215,904	7.1	757,210	4.1
5 - 10년	3,274,224	9.2	2,237,543	13.0	1,036,681	5.6
10 - 15년	2,153,740	6.1	1,612,672	9.4	541,068	2.9
15 - 20년	1,113,693	3.1	830,297	4.8	283,396	1.5
20년 이상	2,742,984	7.7	1,753,156	10.2	989,828	5.4
미상	17,129,166	48.1	5,685,813	33.0	11,443,353	62.3

항목번호 33 : 자녀 거주 장소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노인을 돌 볼 수 있는 자녀의 거주장소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보호실태를 파악

3.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0	2005
조사표 내용	26. 자녀거주장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 ② 같은 읍면동내 다른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④ 같은 시도내 다른 시군구 ⑤ 다른 시도 ⑥ 해외 ⑦ 자녀 없음	-
항목정의	-	-
공표여부	-	-

4. 최근 조사결과(2000)

자녀의 거주장소별	계	구성비(%)	남	구성비(%)	여	구성비(%)
계	5,159,445	100.0	2,122,820	100.0	3,036,625	100.0
같은집	2,567,991	49.8	991,960	46.7	1,576,031	51.9
같은 읍면동	505,607	9.8	210,702	9.9	294,905	9.7
같은 시군구	628,701	12.2	277,898	13.1	350,803	11.6
같은 시도	382,884	18.2	171,949	8.1	210,935	6.9
다른 시도	939,341	18.2	425,229	20.0	514,112	16.9
해외	19,132	0.4	9,048	0.4	10,084	0.3
자녀없음	112,982	2.2	34,840	1.6	78,142	2.6
미상	2,807	0.1	1,194	0.1	1,613	0.1

항목번호 34 : 남북이산가족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남북이산가족을 파악하여 통일정책 기초자료 제공

3.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5
조사표 내용	7. 남북이산가족 북한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습니까? · 생사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 1명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①없음 ②부모 ③자녀 ④배우자 ⑤형제자매 ⑥기타 친인척 ----- -(남북이산가족이 있는 가구원만 기입)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①남한 ②북한 ③해외
항목정의	-
공표여부	-

4. 최근 조사결과(2005)

성별	내국인	남북이산 가족 있음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친인척	남북이산 가족 없음	미상
계	47,041,434	715,968	47,946	7,303	4,218	76,376	580,125	46,117,371	208,095
남	23,465,650	349,332	30,997	3,313	1,354	47,170	266,498	23,009,703	106,615
여	23,575,784	366,636	16,949	3,990	2,864	29,206	313,627	23,107,668	101,480
구성비(%)									
계	100.0	1.5	0.1	0.0	0.0	0.2	1.2	98.0	0.4
남	100.0	1.5	0.1	0.0	0.0	0.2	1.1	98.1	0.5
여	100.0	1.6	0.1	0.0	0.0	0.1	1.3	98.0	0.4

5. 문제점 및 검토방향

○ 변동이 거의 없음

항목번호 35 : 근로 장소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취약계층 노동 및 사회복지정책 자료
- 근로장소를 파악하여 노동의 질을 측정

3.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5
조사표 내용	19. 근로장소 주로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②자기 집」 은 사업장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거리」 는 배달, 방문 판매 및 서비스, 점포없는 노점상을 포함합니다. ① 사업장(건물 및 땅) ② 자기 집 ③ 남의 집 ④ 거리 ⑤ 야외 작업현장 ⑥운송수단 ⑦기타()
항목정의	-
공표여부	-

4. 최근 조사결과(2005)

성별	2005취업자 (15세이상)	사업장	자기집	남의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기타	근로장소 미상
계	19,277,370	14,370,006	628,440	366,914	709,066	2,663,460	468,929	68,584	1,971
남	11,901,983	8,721,131	292,024	148,533	506,305	1,729,007	455,250	48,291	1,442
여	7,375,387	5,648,875	336,416	218,381	202,761	934,453	13,679	20,293	529
구성비(%)									
계	100.0	74.5	3.3	1.9	3.7	13.8	2.4	0.4	0.0
남	100.0	73.3	2.5	1.2	4.3	14.5	3.8	0.4	0.0
여	100.0	76.6	4.6	3.0	2.7	12.7	0.2	0.3	0.0

5. 문제점 및 검토방향

- 명확한 노동의 질 측정이 힘들

항목번호 36 : 추가 계획 자녀 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추가계획 자녀수와 현 자녀수 차이의 원인 파악 및 향후 출산력 수준 예측

3.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2005
조사표 내용	23. 추가 계획 자녀 수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 ① 있음 → □□명 ② 없음
항목정의	-
공표여부	-

4. 최근 조사결과(2005)

연령	가임기 혼여성 (15~49세)	추가자녀계 획없음	추가자녀계 획있음	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 수	기대자녀수
가임연령	8,279 (100.0)	7,209 (87.1)	1,070 (12.9)	1.7	0.2	1.9
15-19	4	24.5	75.5	0.4	1.2	1.6
20-29	859	40.8	59.2	0.9	0.8	1.7
30-39	3,556	85.0	15.0	1.7	0.2	1.9
40-49	3,859	99.4	0.6	2.0	0.0	2.0

5.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응답의 신뢰성 저하 및 구체적인 정책 결정 반영이 힘들

항목번호 37 :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 2005년에 건물 층수가 추가됨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주택관련 표본조사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주택보급율
- 거처의 종류별 거처수, 가구수, 핵수 및 가구원
- 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형태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조사표 내용	거처의 종류 ①일반주택 ②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③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④병원,기숙사,수녀원,양육아원,양로원 등 공공목적을 위한 집 ⑤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 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⑥기타()	거처의 종류 ①일반주택 ②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③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④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⑤토목공사 현장 등 ⑥기타()	맥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연립주택 ④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⑤여관 등 숙박업소 ⑥기숙사, 특수사회시설 ⑦임시막사 ⑧기타(음막, 판자집 등)
조사항목 정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단위를 말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한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년도	1985	1990	1995
조사표 내용	이 책은 어떤 종류의 집에 사는 지 조사원이 판단하여 다음에 표하시오 주 택 주택 이외의 거처 ① 단독주택 ⑤ 여관 등 숙박업소 ② 아파트 ⑥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③ 연립주택 ⑦ 기타 ④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 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⑧ 사무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⑨ 기타(음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거처의 종류 택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① 단독주택 ⑥ 오피스텔 (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② 아파트 ⑦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③ 연립주택 ⑧ 기숙사 및 특수 사회 시설 ④ 다세대주택 ⑨ 기타(비닐하우스 등 판자집임시막사 등)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공장·점포·여관 등)
조사항목 정의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한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년도	2000		
조사표 내용	<p>14. 거처의 종류 15. 단독주택 종류 이 택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단독주택일 경우 일반단독입니까, 다가구주택입니까?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각 가구들이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나 가구 거주 단위별로 별도 매개는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p> <p>① 단독주택 → ① 일반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p> <p>② 아파트 ⑥ 오피스텔 ③ 연립주택 ⑦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④ 다세대주택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⑤ 영입용 건물 내 주택 ⑨ 기타(비닐하우스, 음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상가·공장·점포·여관 등) ⑥~⑨에 해당되면 작성을 마칩니다.</p>		
조사항목 정의	<p>·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합니다.</p> <p>· 거처는 크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나뉩니다.</p> <p>*1. 주택 : 주택여부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가. 주택의 요건 : 주택이란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영구건물이며,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나. 주택의 종류 : ① 단독주택(①일반단독주택(통상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②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집으로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별도로 분리해서 사거나 팔 수 없는 집), ②아파트, ③연립주택(4층이하의 빌라, 맨션 등 동당 건물연면적이 200평이 넘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④다세대주택(4층이하의 빌라, 맨션 등 동당 건물연면적이 200평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⑤영입용건물내주택(영입용 건물내에 사람이 사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 주거부분만 사고 팔 수 없어도 주택에 해당)</p> <p>2.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단위를 말합니다. ⑥오피스텔(사무실이지만 숙박이 가능한 거처), ⑦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대실료를 내고 숙박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⑧기숙사및 특수사회시설(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보육원, 수녀원 및 대사찰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이 해당), ⑨기타(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자집, 콘테이너, 음막, 압자,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등 임시적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p>		
자료공표 여부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1. Living quarters - type of (2.402~2.444)</p> <p>-거처란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주지를 지칭</p> <p>-거처는 사람 거주를 위해 건조, 건축, 개조, 변형되고, 센서스 기간 중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임시 거주지나 공동 주택과 그러한 자격이 있거나 비록 거주 목적으로 의도되지 않았으나 센서스 기간 중 그러한 목적으로 쓰인 구조물들도 포함</p>	<p>이 건물을 가장 잘 기술한 것은?</p> <p>○ 모빌홈</p> <p>○ 다른 주택과 분리된 일가구 주택</p> <p>○ 다른 주택과 붙어있는 일가구 연립주택</p> <p>○ 한 건물에 아파트 2채</p> <p>○ 한 건물에 아파트 3-4채</p> <p>○ 한 건물에 아파트 5-9채</p> <p>○ 한 건물에 아파트 10-19채</p> <p>○ 한 건물에 아파트 20-49채</p> <p>○ 한 건물에 아파트 50채 이상</p> <p>○ 보트, RV, 밴, 기타</p>	<p>주택의 건축형태?</p> <p>1. 단독주택</p> <p>2. 연립주택(테라스 하우스 포함)</p> <p>3. 공동주택</p> <p>○ 건물전체 ___층</p> <p>○ 주택이 있는 층수 ___층</p> <p>4. 기타</p>
조사항목 정의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
조사항목 정의	-	-	-

6. 최근 조사결과

○ 거처의 종류별 거처수

(단위 : 1,000호)

거처의 종류 년도	총 거처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계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기타
1995	9,253	9,204	4,337	3,455	734	336	343	48	6	3	6	33
%	100	99.5	47.1	37.5	8.0	3.7	3.7	0.5	0.06	0.03	0.06	0.36
2000	11,051	10,959	4,069	5,231	813	453	393	92	21	7	12	51
%	100	99.2	36.8	47.3	7.4	4.1	3.6	0.8	0.19	0.06	0.11	0.46
2005	12,701	12,495	3,985	6,627	520	1,164	199	207	157	5	9	36
%	100	98.3	31.3	52.1	4.0	9.1	1.5	1.6	1.2	0.04	0.07	0.28

※ 빈집 제외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거처 유형의 다양화
 - 주거부정자(Homeless)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침제시가 검토 필요(2000년)
- 일반단독, 다가구용 단독, 다세대 주택, 영업용건물내(비거주용건물내) 주택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조사에 혼란 초래(2000년)
- 주택이외의 거처들 중 일부 거처(ex, 오피스텔)의 주택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영업용건물내 주택」이 표현상 애매하여 교회 등 비영리 건물내 주택등에 적용 곤란

<한국과 외국(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및 UN)의 주택 정의>

1.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 정의 : 주택이란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 ① 영구건물이며, ②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③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 주택종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있음

법령상 주택정의

건축법	<p>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獨住宅(가정보육시설 포함) · 多重住宅(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多家口住宅 연면적 660㎡(200평), 4층 이하로서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된 건축물 -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 聯立住宅 棟當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 多世帶住宅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p>건축법 제2조(정의) ②第1項第2號의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99-2-8 法5895] 1. 單獨住宅 2. 共同住宅 3. 第1種 近隣生活施設 4. 第2種 近隣生活施設 5. 文化 및 集會施設 6. 販賣 및 營業施設 7. 醫療施設 8. 教育研究 및 福祉施設 9. 運動施設 10. 業務施設 11. 宿泊施設 12. 慰樂施設 13. 工場 14. 倉庫施設 15. 危險物貯藏 및 處理施設 16. 自動車關聯施設 17. 動物 및 植物關聯施設 18. 糞尿·쓰레기處理施設 19. 公共用施設 20. 墓地關聯施設 21. 觀光休憩施設 2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p> <p>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p> <p>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p> <p>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p>
주택건설촉진법	<p>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p> <p>2. "주택"이라 함은 世帶의 世帶員이 長期間 독립된 住居生活를 영위할 수 있는 構造로 된 建築物(이에 부속되는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 또는 建築物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單獨住宅와 共同住宅으로 구분한다.</p> <p>3. "共同住宅"이라 함은 空地 및 建物의 壁·樑·道·階段 기타 設備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共同으로 사용하는 각 世帶가 하나의 建築物에서 각각 獨立된 住居生活를 영위할 수 있는 構造로 된 住宅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2. 일본의 주택통계조사(1998)

- 주택이란 보통 1가구용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완전하게 구획된 건물의 일부로 1가구가 독립해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축 또는 개조시킨 것으로, 다음 4개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완전하게 구획된 것이란 콘크리트벽이나 나무판벽 등의 고정적인 칸막이로 같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완전히 차단된 것.

- ① 1개 이상의 거주방
- ② 전용의 취사용 설거지臺
- ③ 전용의 변소
- ④ 전용의 출입구

3. 미국의 센서스(2000)

-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이동주택(트레일러), 분리된 거처로서 점유된 또는 빈집일 경우 분리된 거처로서 점유 목적으로 지어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방
 - 분리거처는 점유자들이 건물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생활하며, 동시에 공동 출입구(현관)를 통하여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할 수 있는 거처

4. 캐나다의 센서스(2006)

- 주거지란 외부로부터 또는 건물 내부의 공동 복도나 계단으로부터 개별적인 출입구를 가진 분리된 거처를 말하며, 이 출입구는 다른 사람의 거처를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목번호 38 : 가구 구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가구추계 기초자료
- 가족 및 인구구조 분석
- 인력공급전망, 가구규모 결정요인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조사표 내용	가구구분을 조사원이 직접기입토록 함	가구구분을 조사원이 직접기입토록 함	택이 이집을 대표하는 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 니까? ①주가구 ②동거가구 (가구구분을 조사원도 하게 함)
조사항목 정의	가구라 함은 1인 혹은 2인 이상이 한데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모임을 말하 며 보통가구와 준가구 가 있다.(별첨 1참조)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한다. 이는 보통가구와 준 가구로 구분된다. (별 첨 2참조)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 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한다. 이는 일반 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별첨 3참조)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85	1990
조사표 내용	<p>택은 이 집의 주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①주가구(대표가구) ②동거가구 ③집단가구→ 조사 끝</p> <p>※이하 모두 사선「\」하시오. (가구구분을 조사원도 하게 함)</p>	<p>택이 이 집을 대표하는 주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p> <p>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가구입니다.</p> <p>①주가구(대표가구) ②동거가구 ③집단가구</p> <p>※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③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②①까지 사선「\」을 긋습니다.</p>
조사항목 정의	<p>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별첨 4참조)</p>	<p>가구란 한사람 또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별첨 5참조)</p>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5	2000
조사표 내용	<p>택은 이 집을 대표하는 가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가구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가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집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가 대표가구입니다. · 집단가구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6인 이상 살고 있는 가구와 고아원·양로원 등 특수 사회시설이 해당됩니다. <p>①주인(대표)가구 ①일반가구</p> <p>②주인(대표)가구가아님 ②집단가구</p> <p>* ②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 ~ ⑦까지 사전 「\」을 긋습니다.</p>	<p>16. 주인, 대표가구 여부</p> <p>이 택은 이 집의 주인 또는 대표 가구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대표가구는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독채로 세들어 살고 있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가구를 말합니다. <p>┌─① 주인가구 ├─② 대표가구 ↓ ③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동거 가구 → 작성을 마칩니다.</p> <p>※참고 : ①주인 ②대표가구는 주택에 관한사항 (5개 항목) 작성</p> <p>1. 가구구분</p> <p>이 택은 아래의 ①~ ⑩항중 어디에 해당합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③ 혼자서 살립하는 1인가구 ④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⑥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⑦ 보육원 등 아동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⑧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⑨ 장애인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⑩ 기타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p>⑥~⑩은 ⑭(거처의 종류)번으로 감</p>
조사항목 정의	<p>가구란 한사람 또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별첨6참조)</p>	<p>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된다. (별첨 7참조)</p>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조사 년도	2005
조사표 내용	<p>1. 가구구분</p> <p>이 가구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p> <p>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③ 1인가구 ④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⑥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⑦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⑧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⑨ 장애인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⑩ 기타 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⑥~⑩은 3.주택에 관한 사항 ■번으로</p>
조사항목 정의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로 구분된다. (별첨8참조)
자료공표 여부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household 가구는 혼자서 자신의 식사와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해결하는 1인가구와 2인 이상이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해결하는 다인가구가 있다. [가계비(살림살이)개념]</p> <p>선택적인 정의로는 가구에 거주(household-dwelling)개념을 준용하여 한 주택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을 조건으로 하기도 한다.</p> <p>* 가구는 주택 혹은 하숙집, 호텔, 기숙사 등에 위치할 수도 있고, 집이 없을 수도 있다.</p>	-	<p>가구형태는</p> <p>1.보통가구 2.1인가구(회사등 독신숙소 포함) 3.기숙시설내의 학생 4.병원 또는 요양소의 환자 5.사회시설 수용자 6.기타 ※조사원이 기입토록 되어있음</p>
조사항목 정의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 가구수

(단위 : 가구, %)

	1990	1995	2000	2005
총 가구	11,376,716	12,991,304	14,391,374	15,988,274
일반가구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887,128
집단가구	15,620	16,013	14,417	16,551
외국인가구	6,556	17,110	65,150	84,595

	'1990~1995' 증감		'1995~2000' 증감		'2000~2005'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총 가구	1,614,588	14.2	1,400,070	10.8	1,596,900	11.1
일반가구	1,603,641	14.1	1,353,626	10.4	1,575,321	11.0
집단가구	393	2.5	-1,596	-10.0	2,134	14.8
외국인가구	10,554	161.0	48,040	280.8	19,445	29.8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복지관련 사항으로 집단가구에 대한 분석자료의 필요성 대두
- 현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이 대표(사회적, 경제적 등)에 대한 개념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
 - 호주 등에서는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가구주 대신 미국식의 '참고인(reference person)'의 개념을 사용

별 첨

1. 1970(가구-보통가구, 준가구)

가. 보통가구

가구주를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 1) 가구주와 그 가족만이 살고 있는 가구
- 2) 가구주 및 그 가족과 친척 및 그 밖의 사람(하숙생, 동거인, 식모, 며슴, 점원 등)과 같이 살고 있는 가구
- 3) 혼자 살림하는 단독 가구

나. 준가구

보통가구 이외에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는 가구

2. 1975(가구-보통가구, 준가구)

가. 보통가구

가구주를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는 가구로서

- 1) 가구주와 그 가족만이 살고 있는 가구
- 2) 가구주 및 그 가족과 친척 및 그 밖의 사람(하숙생, 동거인, 가정부, 며슴, 점원 등)이 같이 살고 있는 가구
- 3) 혼자 살림하는 단독 가구

나. 준가구

보통가구 이외에 학교, 병원, 종교단체 등의 기숙시설과 고아원, 양로원 등의 일정한 거처를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는 가구

3. 1980(가구-일반가구, 집단가구)

가. 일반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모여 취침, 취사 등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가구를 포함한다.

- 1) 가구주와 그 가족만이 살고 있는 가구

- 2) 가구주 및 그 가족과 친척 또는 그 밖의 사람(하숙생, 가정부, 종업원 등의 동거인)이 같이 살고 있는 가구. 단, 동거인이 6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가구(집단가구)로 보았다.
- 3) 혈연관계가 없는 5명이하의 사람들이 집단시설이외의 거처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같이 살고 있는 가구
- 4) 혼자 살고 있는 가구(단독가구)

나. 집단가구

통상 혈연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 시설에서 기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와 6인 이상이 동일 거처에서 집단하숙 또는 자취를 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4. 1985(가구-일반가구, 집단가구)

가. 일반가구

- 1)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 2)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이하 가구)
- 3)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단독가구)

나. 집단가구

- 1) 혈연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 시설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집단시설가구)
- 2)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6인이상 가구)

5. 1990(가구-일반가구, 집단가구)

가. 일반가구

- 1)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 2)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 (비혈연 5인이하 가구)
- 3)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단독가구)

나. 집단가구

- 1) 혈연관계가 없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 시설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집단시설가구)
- 2)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6인이상가구)

6. 1995(가구-일반가구, 집단가구)

가. 일반가구

- 1)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 2)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이하 가구)
- 3) 혼자서 살람하는 가구(1인가구)

나. 집단가구

- 1) 혈연관계가 없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 시설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집단시설가구)
- 2)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6인이상가구)

7. 2000(가구 -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가. 일반가구

- 1)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원으로만 구성; 혈연가구원이라도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
- 2)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이하 가구원으로만 구성)
- 3) 혼자서 살람하는 가구(1인 가구)
- 4) 혈연+비혈연가구원(종업원, 친구 등 동거인 5인 이하)으로 구성된 가구
- 혈연+비혈연가구원(6인 이상이면 19인 이하이면) 각각 분리(2가구)

나. 집단가구(관리인 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

- 1) 혈연관계가 없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 특수사회 시설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집단시설가구)

2)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6인이상 19인이하 가구)

- 비혈연 20인이상이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조사

다. 외국인가구

- 1가구로 조사, 외국인+한국인이면 분리(별도가구로 조사)

8. 2005(가구 -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가. 일반가구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조사)

2)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가사사용인(가정부, 운전사 등) 또는 종업원은 주인가구에 포함)

- 가족이외의 사람은 5인 이하이며 6인 이상이면 별도의 가구로 분리

- 주인가구가 1인인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남남 함께 사는 가구에 해당

3) 1인 가구

4)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 20인 이상인 경우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에 해당

나. 집단가구(관리인 또는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

1) 기숙사나 양로원·고아원·보육원 등 사회시설에서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집단 시설가구)

2)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 20인 이상이면 집단가구 일지라도 기숙시설조사구로 분류

다. 외국인가구

o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한국인과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

항목번호 39 : 점유 형태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주거상황)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자가 및 전·월세 등 주거실태, 주택보급률, 주택 임차료수준 등 주택보유와 사용에 대한 분석을 위한 항목)
- 도시 및 농촌지역 소득, 주거 편의 시설 관련 정책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임차료
 -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
 - 가구주의 연령 및 점유형태별 가구
 -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별 가구
 - 타지 주택소유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주택의 소유관계 ①자기집 ②셋 집 ③세없이 빌려든 집	주택의 소유관계 ①자기집 ②월세 ③전 세 ④세없이 빌려든 집	이 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까? ①자기집 ④기 타 ②전 세 ⑤집단가구 ③월 세 ※⑤해당 집단가구는 ●~●까지 사전 「\」을 긋는다.	이 집은 대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세들어 살고 있습니까? 셋집이라면 세는 얼마나 됩니까? ①자기집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④월세 (삭월세) ⑤무상 전세 및 보증금 천 만 백 십 만 원 월 세 백 만 십 만 만 원 천 원
조사항목 정의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점유형태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의 겸용 입니까? 그리고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①자기집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④월세 (삭월세) ⑤무상 전세및보증금 천 만 백 십 만 원 월 세 백 만 십 만 만 원	점유형태 이 집은 자기집입 니까? 아니면 셋집 입니까? ①자기집 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 (삭월세) ⑤무상 ①주거 전용 ②영업 겸용	12.점유형태(전수) 13.임차료(표본) 이 집은 자기집입니까?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사글세인 경우에는 계약 개월 수와 한달 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①자기집 ②전세 (월세없음)→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사글세 (개월) ⑥무상 (관사,사택, 친척집 등) 전세및보증금 천 만 백 십 만 원 월세(사글세) 천 만 백 십 만 원
조사항목 정의	별첨5	별첨6	별첨7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주) 2000년의 임차료 금액은 표본항목으로 조사

조사 년도	2005						
조사표 내용	9.점유형태(전수) 10.임차료(표본) 이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영업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①주거 전용	①자기 집	전세·보증금				
		②전세 (월세없음)→	억	천	백	십	만
	②영업 겸용	③보증금 있는 월세 ↓					
④보증금 없는 월세 ↘		가					
	⑤사글세 (개월)	→	월세(사글세)				
	⑥무상 (관사,사택, 친척집 등)	월	천	백	십	만	원
조사항목 정의	별첨8						
자료공표 여부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 내용	UN에서는 주택의 소유형태(Type of Ownership) 와 보유(Tenure)항목을 조사하도록 권고.	이 거처는- <input type="checkbox"/> 귀하 또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주택용자를 해 소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귀하 또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주택용자 없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현금임대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임대료 없이 점유하고 있습니까?	거주유형 1. 자가 2. 도도부현, 시구정촌 운영 임대주택 3. 공단 및 공사 등 임대주택 4. 개인 임대주택 5. 사원주택 6. 회사 등 독신자숙소 7. 기타
조사항목 정의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 내용	이 거처는 자기집입니까 혹은 임대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직접 소유 <input type="checkbox"/> 주택용자 있는 소유 <input type="checkbox"/> 부분적 임대/부분적 소유 (공동 소유)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무상	이 거처는: <input type="radio"/> 자기집입니까? <input type="radio"/> 임차입니까?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거처의 점유형태

(단위 : 천가구, %)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1990	11,355	5,667	3,157	2,173	358
구성비	100.0	49.9	27.8	19.1	3.2
1995	12,958	6,910	3,845	1,875	328
구성비	100.0	53.3	29.7	14.5	2.5
2000	14,312	7,753	4,040	2,113	406
구성비	100.0	54.2	28.2	14.8	2.8
2005	15,887	8,828	3,557	3,012	290
구성비	100.0	55.6	22.4	19.0	3.1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점유형태가 자기집 거주여부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함
 -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자기 집을 임대 주고 자신은 다른 집에 세들어 사는 경우 등
 -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세들어 살고 있는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항목의 도입이 필요 : 예를 들면, 타지 자기 집 소유여부
- 이 항목은 소득조사가 어려운 여건에서 각종 분석시 소득 대체항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

별첨

1. 1970(주택의 소유관계)

가. 자기집

- 1)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
- 2) 법적등기가 미필된 경우 및 분할불 등으로서 그 금액이 미불된 경우에도 자기 집으로 하였다.
- 3) 혼자 살림하는 단독 가구

나. 셋집 : 자기집이 아닌 주택에서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집세를 물고 있는 가구

다. 세없이 빌려든 집 : 관공서,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면서 그 직원이나 노무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주택 또는 그 친척이나 친구집으로 세없이 빌려 사는 집

2. 1975(주택의 소유관계)

가. 자기집 :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법적등기가 미필된 경우 분할 불등으로 그 금액이 미불된 경우에도 자기 집으로 하였다.

나. 전세 : 자기집이 아닌 주택에서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방법으로 전세를 내고 계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이다.

다. 월세 :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거나 또는 보증금을 내고 매월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전부 월세로 하였다.

라. 세없이 빌려든 집 : 정부기관, 기업체등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면서 그 직원이나 노무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주택 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서 세없이 빌려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1980(주택의 소유관계)

가. 자기집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법률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포함된다.

나. 전세 : 자기집이 아닌 주택에서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

을 내고 일정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이다.

- 다. 월세 :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매월 집세를 내거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 라. 기타 :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대여 받았거나 친지로부터 세없이 빌려서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4. 1985(주택의 점유형태)

- 가. 자가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나. 전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라. 월세(삭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를 내는 경우와 보증금을 내고 그 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를 공제하는 삭월세도 포함되었다.
- 마. 무상 : 관공서, 회사 등에 있는 관사 또는 사택이나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1990(점유형태)

- 가. 자기집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나. 전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라. 월세(사글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를 내는 경우와 보증금을 내고 그 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를 공제하는 사글세도 포함되었다.
- 마.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1995(점유형태)

- 가. 자기집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나. 전 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가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무보증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마. 사글세 : 미리 몇 개월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 마.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7. 2000 (12.점유형태 및 13.임차료)

- 가. 자기집 :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나. 전세 (월세 없음)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만 내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세들어 사는 경우로 '전세·보증금'란에만 전세액을 기입한다.
- 다.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전세·보증금'과 '월세(사글세)'란에 모두 금액을 기입.
- 다.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또는 월세)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월세(사글세)'란에만 그 금액을 기입.
- 마. 사글세(개월) : 미리 몇 개월(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 마.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2005 (9.점유형태 및 10.임차료)

- 가. 자기집 :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
- 나. 전세 (월세 없음) : 전세금만 내고 세들어 사는 경우로
「전세·보증금」란에만 전세 금액을 기입하되, 세든 사람이 일부 방을 다시 세놓은 경우에는 원래의 전세액에서 다른 가구에 세를 놓아 받는

전세액 또는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

다.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내는 경우로 「전세·보증금」과 「월세(사글세)」란에 모두 기입

다.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집세(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로 「월세(사글세)」란에만 그 금액을 기입

마. 사글세(개월) : 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로, ()에는 계약 개월수를 기입하고 「월세(사글세)」란에는 전체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1개월분을 기입

마.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항목번호 40 : 사용방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주거의 질에 관한 통계
- 지역통계보고서 발간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총방수
- 거처의 종류, 가구원규모 및 사용방수별 가구
-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주거면적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조사표 내용	-	-
조사항목 정의	<p>방이라 함은 침실, 서재, 식당, 응접실, 식모방, 한옥의 대청마루, 개량문화주택의 마루와 같이 사방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고 어른 한 사람이 마음대로 기동할 수 있을 정도의 천정높이(6척 이상)와 방넓이(반평 이상)를 갖춘 거주용 공간을 말한다.</p> <p>부엌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실, 변소, 점포, 사무실 등은 방에서 제외된다.</p>	<p>방이라 함은 침실, 서재, 식당방,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와 같이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고 천정의 높이가 1.8m(6척)이상, 넓이3.3㎡(1평이상)의 거주용 공간을 말한다. 현대식 주택의 부엌이 식당방으로 겸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방으로 간주한다.</p> <p>그러나 부엌,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또는 낱하,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실, 변소, 다락방 그리고 점포, 사무실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p>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80	1985	1990
조사표 내용	<p>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개입니까? <input type="checkbox"/>1 <input type="checkbox"/>3 <input type="checkbox"/>5 <input type="checkbox"/>2 <input type="checkbox"/>4 <input type="checkbox"/>6이상 (개)</p>	<p>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개)</p>	<p>사용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input type="checkbox"/> 3개 <input type="checkbox"/> 4개 <input type="checkbox"/> 5개 <input type="checkbox"/> 6개 이상</p>
조사항목 정의	<p>방이란 침실, 서재, 식당방,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와 같이 사면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주용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부엌,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실, 변소, 다락방, 그리고 점포, 사무실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p>	<p>사용방수-주택의 총방수와 상관없이 조사 대상가구에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수를 말한다.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와 같이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현대식 주택의 주방 겸 식당은 방으로 보나,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p>	<p>사용방수 - 주택의 방수와는 상관없이 그 가구에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수를 말한다.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와 같이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현대식 주택의 거실 겸 식당은 방으로 보나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p>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5	2000
조사표 내용	<p>사용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침실(서재포함),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 등을 포함하여 모두 몇 개입니까?</p> <p>· 벽 또는 문으로 각각 차단된 경우만 별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서로 튀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벽 또는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2개로 봅니다. (개)</p>	<p>3. 사용방수 이 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은 각각 몇 개입니까?</p> <p>·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1.8m, 넓이는 1평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별도로 차단된 식당수」는 식당이 벽 또는 문 등으로 거실과 차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p> <p>· 사용방수 □□개 · 거실(대청마루)수 □개 · 별도로 차단된 식당수 □개</p>
조사항목 정의	<p>사용방수-주택의 방수와는 상관없이 그 가구에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수를 말한다.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와 같이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현대식 주택의 거실 겸 식당은 방으로 보나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p>	<p>사용방수 - 주택의 방수와는 상관없이 그 가구에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수를 말한다.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와 같이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p> <p>※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사람이 실제로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시키며, 단순히 물건만 쌓아 둔 경우에는 방으로 보지 않음.</p> <p>· 거실 식당도 반드시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각각 방으로 봄 - 거실, 식당, 현대식 부엌이 서로 튀어 있는 경우에는 거실 1개로 간주 - 식당과 부엌은 하나로 튀어 있으나 거실이 이들과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으면 2개로 간주 - 거실과 부엌은 하나로 튀어 있으나 식당과는 벽과 문으로 차단되어 있으면 2개로 간주 ·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p>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UN에서는 총방수를 기본 항목으로 규정. 침실은 침대가 있거나 잠을 자기 위해 이용되는 방.	얼마나 많은 방이 이 거처에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input type="checkbox"/> 3개 <input type="checkbox"/> 4개 <input type="checkbox"/> 5개 이상	이 가구는 얼마나 많은 방을 사용하십니까? 방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얼마나 많은 방이 이 거처에 있습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침실은 몇 개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조사항목 정의	방은 바닥에서 천정까지 벽으로 연결된 주택내의 공간으로 규정. -또한 최소한 높이2m와, 넓이4m ² (1坪이상)의 어른이 기거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기준으로 제시함	-	-	-

6. 최근 조사결과

○ 사용방수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1995	12,958	1,590	2,382	3,881	3,891	871	344
구성비	100.0	12.1	18.0	29.9	30.0	7.0	3.0
2000	14,312	1,124	1,673	4,352	5,279	1,413	471
구성비	100.0	7.9	11.7	30.4	36.9	9.9	3.3
2005	15,887	1,025	1,323	4,070	6,887	1,916	665
구성비	100.0	6.5	8.3	25.6	43.4	12.1	4.2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국제적인 방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 실정과 다소 달라 애매

- 거실(living room), 식당(dining room)을 우리나라 개념의 방으로 보는데 따른 이해부족
- 반면 부엌(kitchen room)은 방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혼란
- 특히, 2000년 조사표에서는 사용방수가 거실, 식당을 포함한 전체 방수인지 아니면 한국식 개념에서의 침실만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아 조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 초래

○ 이용방수의 정의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에 국한되어 있음

○ UN은 총방수 중 사용방수 이외의 빈방들이 단지, 빈방인지, 조사시점에서 단칸방세(for rent)를 내기 위한 것인지, 세가 내간 것인지(rented)에 대한 빈방 구분을 제시

○ 아파트 비중 및 1가구 1주택 점유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사용방수는 주택의 총방수 조사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검토

항목번호 41 : 식수종류(상수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사망률, 환경에 대한 기본지표
- 보건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거처의 종류, 식수의 종류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조사표 내용	-	-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 까? ①자기집 ④기타 ②전 세 ⑤집단가구 ③월 세	-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 까? 2개 이상인 경우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상수도 ② 간이수도 ③ 자가수도 ④ 수동펌퍼 ⑤ 우물 ⑥ 기타()
조사항목 정의	-	-	사용식수-거처 내에 식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 대 상가구가 실제로 이용하 고 있는 식수를 말한다.	-	식수의 종류-거처 내에 식 수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 대 상가구가 실제로 이용하 고 있는 식수를 말한다.
자료공표 여부	-	-	공표	-	공표

조사 년도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7. 상수도 시설 8. 식수 사용 형태 이 맥에는 상수도(간이, 자가수도 제외)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또 식수는 주로 어떻게 드십니까? ①설치되어 있음 ②설치되어 있지 않음 ①수돗물을 그대로 먹음 ②수돗물을 정수해 먹음 ③수돗물을 끓여 먹음 ④약수를 떠서 먹음 ⑤생수를 사서 먹음 ⑥지하수를 이용 ⑦기타()	-
조사항목 정의	-	간이수도나 자가수도는 상수도로 보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식수)의 형태가 2가지 이상이거나, 가구 원별로 다른 경우에는 많이 마시는 것 하나에만 표시합니다.	-
자료공표 여부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 상수도는 건강 관점에 매우 중요. ① 주택내 상수도 ○ 개별 ○ 공동체 ② 주택외 상수도(200m이내) ○ 공동체(단독, 공동) ○ 개별 (단독, 공동) ③ 시설없음(200m가 넘는 거리에서의 상수도 포함) · 식수 원천은 상수도, 지하수, 우물, 샘물, 빗물 탱크, 정수, 생수, 탱크 트 럭 등으로 분류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식수의 종류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상수도	간이수도	자가수도	수동펌퍼	우물	기타
1990	11,355	8,402	951	1,601	97	165	138
구성비	100.0	74.0	8.4	14.1	0.8	1.4	1.2

	계	상수도 설치								상수도 미설치				
		계	수돗물 그대로	수돗물 정수	수돗물 끓임	약수	생수	지하수	기타	계	약수	생수	지하수	기타
2000	14,310	12,526	308	1,486	8,326	1,122	853	407	25	1,783	38	19	1,600	126
구성비	100.0	87.5	2.2	10.4	58.2	7.8	6.0	2.8	0.2	12.5	0.3	0.1	11.2	0.9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환경에 대한 지표로서의 폭 넓은 활용이 필요

항목번호 42 : 취사연료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보건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거처의 종류 및 취사연료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	-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①연 탄 ④전 기 ②유 류 ⑤임산연료 ③개 스 ⑥기 타	맥에서는 취사연료로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 이 상인 경우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연 탄 ④전 기 ②유 류 ⑤임산연료 ③가 스 ⑥기 타
조사항목 정의	-	-	취사연료-취사용 연료로서 일년평균하여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 를 말한다. 다만 취사시설 이나 도구를 바꾸어서 다 른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연료를 조사하였다.	취사연료-취사용 연료로서 일년 평균하여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를 말한다. 다만 취사시설이나 도구를 바꾸어서 다른 연료 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기 간에 관계없이 그 연료를 조 사하였다.
자료공표 여부	-	-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 을 사용합니까? 2개 이상인 경우는 주 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p> <p>① 연 탄 ② 유 류 ③ 가 스 ④ 전 기 ⑤ 임산연료 ⑥ 기타()</p>	-	<p>5.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 2개 이상인 경우는 주된 것 하나만 ○표 합니다.</p> <p>① 도시가스 ⑤ 연탄 ② 유류 ⑥��감 등 임산연료 ③ 프로판가스(LPG) ⑦ 기타() ④ 전기</p>	-
조사항목 정의	<p>취사연료-취사용 연료로 서 일년평균하여 시간 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연료를 말한다. 다 만, 취사도구를 바꾸어 서 새로운 연료를 사용 하게 되는 경우는 기간 에 관계없이 새 연료를 취사연료로 사용하였다.</p>	-	<p>※ 취사(식사준비용)연료로서 일년 평균하여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연료를 물어 기입하되, 취사도 구를 바꾸어서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 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새로운 연료를 기입한다.</p> <p>※ 사례 : 밥은 전기밥솥으로 하지만 음식, 반찬 등은 프로판가스로 하는 경우는 주된 취사수단인 프로판 가 스에 표시</p>	-
자료공표 여부	공표	-	공표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p>기본항목에 해당하며, 가구의 고체 연료 사용, 실내 공기 오염, 산림 황폐화, 땅 침식,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과 중요한 연관관계 있음.</p> <p>취사연료는 가스, 전기, LPG, 석유, 석탄, 나무, 숯, 동물 배설물, 작물 찌꺼기, 기타로 분류</p>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취사연료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연탄	유류	가스	전기	임산연료	기타
1990	11,355	1,166	253	9,298	388	281	48
구성비	100.0	10.3	2.2	81.9	2.7	2.5	0.4

	계	도시가스	유류	프로판가스	전기	연탄	임산연료	기타
2000	14,310	7,348	132	6,624	57	35	25	89
구성비	100.0	51.3	0.9	46.3	0.4	0.2	0.2	0.6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환경, 에너지 문제 대두로 중요성이 크게 증가
- 아파트의 대량공급과 도시가스 확대로 인해 취사연료가 단순화되어가고 있으므로 항목에서 제외 검토

항목번호 43 : 난방연료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자원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환경지표로서도 중요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거처의 종류, 취사연료 및 난방연료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	난방 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①연탄 ②유류 ③임산연료 ④전기 ⑤중앙난방 ⑥기타	-	-	-	-	-
항목 정의	-	-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연료를 말한다.	-	-	-	-	-
공표여부	-	-	공표	-	-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일본 (2000)	영국 (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방연료는 권고 사항 중 추가항목에 해당 난방시설과 관련 주된 에너지원(난방연료)로는 석탄, 갈탄, 나무, 석유, 가스, 전기 등 	<p>이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연료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가스: 이웃과 연결된 지하 파이프관 <input type="radio"/> 가스: 독, 탱크, 또는 LP <input type="radio"/> 전기 <input type="radio"/> 기름연료, 가솔린 등 <input type="radio"/> 석탄 또는 코크 <input type="radio"/> 나무 <input type="radio"/> 태양열 <input type="radio"/> 기타 연료 <input type="radio"/> 연료사용안함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난방연료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연 탄	유 류	임산연료	전 기	중양난방	기 타
1980	7,969	5,570	159	1,829	9	159	242
구성비	100.0	69.9	2.0	22.9	0.1	2.0	3.0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환경 및 에너지 공급 및 소비 문제의 기초통계로서 효율
- 난방연료는 주로 난방시설 형태에 의해 좌우되므로 난방시설 형태에 통합

항목번호 44 : 난방시설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자원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거처의 종류 및 난방시설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조사표 내용	-	-	이 집의 주된 난방 시설은 무엇입니까? ①연탄아궁이 ②연탄보일러 ③단독기름보일러 ④중앙난방보일러 ⑤재래식 아궁이 ⑥기 타	이 집의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 까? (2개 이상일 경우 주 된 것 하나만 ○표 하시오) ①연탄아궁이 ②연탄보일러 ③기름보일러 ④가스보일러 ⑤중앙난방 ⑥재래식아궁이 ⑦기 타()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 어있습니까? 2개 이상일 경우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재래식아궁이 ②연탄아궁이 ③연탄보일러 ④단독기름보일러 ⑤단독가스보일러 ⑥중앙난방보일러 ⑦전기보일러 ⑧기타()
조사항목 정의	-	-	별첨1	별첨2	별첨3
자료공표 여부	-	-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이 거처는 난방시설이 있습니까? 난방시설은 다음을 포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석유 또는 석탄 난방 · night storage heaters · warm air heating · underfloor heating <p><input type="checkbox"/> 예, 일부 또는 모든 방 <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 난방시설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가 스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 판가 스보 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아 궁이	재래 식아 궁이	기타
1990	11,355	669	-	*	2,269	*	37	5,518	1,561	657	52
구성비	100.0	5.9	-	*	20.0	*	0.3	48.6	13.7	5.8	0.5
2000	14,310	1,194	919	5,298	5,764	483	228	217	44	108	55
구성비	100.0	8.3	6.4	37.0	40.3	3.4	1.6	1.5	0.3	0.8	0.4
2005	15,887	934	1,376	8,037	4,084	579	527	183	31	64	73
구성비	100.0	5.9	8.7	50.6	25.7	3.6	3.3	1.1	0.2	0.4	0.5

※ 1990년은 단독가스보일러 592천가구(5.2%)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난방시설의 재분류 집계 필요
- 환경 에너지 문제대두로 조사필요성 증대

별첨

1. 1980(난방시설)

주택의 주건물에 설치된 난방시설을 말하며 재래식 아궁이,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 단독기름보일러, 중앙난방보일러, 기타로 구분된다.

1) 재래식아궁이

짚, 나무 등을 태워 생기는 열이 직접 온돌장치를 통하게 함으로써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2) 연탄아궁이

연탄을 태워 생기는 열이 직접 온돌장치를 통하게 함으로써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3) 연탄보일러

연탄으로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4) 단독기름보일러

석유(경유, 방카C유 등)를 사용하여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5) 중앙난방보일러

개별 주택을 위한 난방시설이 아니라 다수의 주택을 동시에 난방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대규모의 연탄 또는 기름보일러를 말한다.

6) 기타

태양열, 실내난로 등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에 의한 난방시설을 말한다.

2. 1985(난방시설)

주택의 주건물에 설치된 난방시설을 말한다.

1) 연탄아궁이

연탄을 태워 생기는 열이 직접 온돌장치를 통하게 함으로써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2) 연탄보일러

연탄으로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3) 기름보일러

석유(경유, 방카시유 등)를 사용하여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4) 가스보일러

가스를 사용하여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5) 중앙난방

개별주택을 위한 난방시설이 아니라 다수의 주택을 동시에 난방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대규모의 연탄 또는 기름보일러를 말한다.

6) 재래식아궁이

짚, 나무 등을 태워 생긴 열이 직접 온돌장치를 통하게 함으로써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7) 기타

태양열, 실내난로 등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에 의한 난방시설을 말한다.

3. 1990(난방시설)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말하며, 2개이상인 경우 주로 사용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 1) 재래식아궁이 : 짚, 나무 등을 태워 생기는 열이 직접 온돌장치를 통하게 함으로써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2) 연탄아궁이 : 연탄을 태워 생기는 열이 직접 온돌장치를 통하게 함으로써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3) 연탄보일러 : 연탄으로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4) 단독기름보일러 : 석유(경유, 방카C유) 등을 사용하여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5) 단독가스보일러 : 가스(도시가스)등을 사용하여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6) 중앙난방보일러 : 개별주택을 위한 난방시설이 아니라 다수의 주택을 동시에 난방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대규모의 가스(도시가스) 또는 기름보일러를 말한다.
- 7) 전기보일러 :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8) 기타 : 태양열, 실내난로 등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에 의한 난방시설을 말한다.

4. 2000 (6.난방시설)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말하며, 2개이상인 경우 주된 것 하나만 조사하였다.

- ① 중앙난방 : 개별주택을 위한 난방시설이 아니라 다수의 주택을 동시에 난방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주택단지별 중앙집중식 대규모의 가스(도시가스) 또는 기름보일러를 말한다.
- ② 지역난방 : 대규모의 열생산시설(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일정지역 전체에 걸쳐 난방을 보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③ 도시가스보일러 :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④ 기름보일러 : 석유(경유, 방카C유) 등을 사용하여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⑤ 프로판가스보일러 : 프로판(LPG)가스를 사용하여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⑥ 전기보일러 :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 ⑦ 연탄보일러 : 연탄으로 물을 데워서 그것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⑧ 연탄아궁이 : 연탄을 태워 생기는 열이 직접 온돌장치를 통하게 함으로써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⑨ 재래식아궁이 : 짚, 나무 등을 태워 생기는 열이 직접 온돌장치를 통하게 함으로써 방의 온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⑩ 기타 : 태양열, 실내난로 등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에 의한 난방시설을 말한다.

5. 2005 (8.난방시설)

난방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사용하는 것 하나만 기입

- ① 중앙난방 : 공동주택 단지별 중앙집중식 난방
- ② 지역난방 : 대규모의 열생산 시설(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일정 지역 전체에 걸쳐 난방을 보급하는 방식

항목번호 45 : 문화시설 및 가재(정보통신기기)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문화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문화시설별 보급률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조사표 내용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①재봉틀 ⑤전화 ②라디오 ⑥냉장고 ③텔레비 ⑦피아노 및 울겐 ④전 축	가구의 문화시설 및 가재 ①신문 ⑥전기세탁기 ②텔레비전 ⑦피아노, 울겐 ③전축(혹은녹음기) ④전화 ⑧수도, 펌퍼시설 ⑤전기냉장고 ⑨전기시설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한다) ①신문구독 ⑤전기세탁기 ②텔레비전 ⑥피아노, 울겐 ③전화 ⑦기타() ④전기냉장고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p>택에서는 다음의 문화 시설 및 가재 중 어느 것을 갖고 있습니까?(해당되는 곳에 모두 O표 하시오)</p> <p>①칼라텔레비전 ②흑백텔레비전 ③냉 장 고 ④세 탁 기 ⑤전 화 ⑥자가용승용차 ⑦기 타 () ⑧브이.티.알(V.T.R.) ⑨에 어 콘</p>	<p>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 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p> <p>①텔레비전 ②냉장고 ③세탁기 ④전화 ⑤전축(오디오) ⑥녹화제생기(V.T.R.) ⑦에어컨 ⑧개인용컴퓨터 ⑨자가용승용차</p>	-	<p>이 택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보유하거나 이용중인 것은 모두 O표 합니다. 일반전화기는 보유회선을, 개인용 컴퓨터는 보유대수를 기입 합니다.</p> <p>① 팩스(모사전송기) ② 인터넷회선(ISDN, ADSL) ③ 케이블TV ④ 지역유선방송 ⑤ 위성방송수신기 ⑥ 일반전화기 ()회선 ⑦ 개인용컴퓨터 ()대</p>	-
항목정의	-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일본 (2000)	영국 (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수단은 라디오, TV, 유선전화, 휴대폰, PC, 인터넷접속으로 분류. 주요한 사회경제적 현상의 구조 및 경향을 변화시키는 장치로서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짐. 가구원이 가구 이외의 장소에서 ICT 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구 항목뿐만 아니라 가구원항목에 포함 될 필요. 	<p>걸고 받을 수 있는 전화 시설이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	-	-
조사항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디오는 라디오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 TV는 TV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자동차, 컴퓨터, 휴대장치 등에 통합될 수 있음) 휴대폰은 cellular 기술을 이용한 휴대 가능한 전화 PC는 가정, 사무실, 학교에서 한 번에 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고안된 컴퓨터 인터넷 접속은 TCP/IP protocols을 이용한 가구의 인터넷 접속 능력 내구재는 가구 단위에서 이용가능한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및 냉동고 등을 의미 	-	-	-	-

6. 최근 조사결과

○ 문화시설보유 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전화	전축(오디오)	녹화재생기	에어콘	개인용컴퓨터	자가용승용차
1990	11,355	11,034	10,576	7,302	9,616	4,172	3,157	367	508	1,536
보유율	100.0	97.2	93.1	64.3	84.7	36.7	27.8	3.2	4.5	13.5

	계	팩스	인터넷전용회선	케이블TV	지역유선방송	위성방송수신기	일반전화기	개인용컴퓨터
2000	14,310	456	3,110	1,481	7,448	199	13,474	7,663
보유율		3.2	21.7	10.3	52.0	1.4	94.2	53.6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이용과 시설 측면에서의 구분이 필요

항목번호 46 : 주거시설형태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시설형태별 보급률
- 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형태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주택의 급수시설 ①수도 ③우물 ②펌퍼 ④없음 주택의 등화시설 ①전기 ②기타 주택의 변소시설 ①재래식 ②수세식 ③없음	-	이 집의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부엌시설: ①재래식 ②입식 2. 변소시설: ①재래식 ②수세식 ③없음 3. 목욕시설: ①온수시설 ②비온수시설 ③없음 4. 상수도시설: ①있음 ②없음	이 집의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부엌시설: ①재래식 ②입식 2. 화장실시설: ①재래식 ②수세식 3. 목욕시설: ①온수 ②비온수 ③없음
조사항목 정의	-	-	별첨1.	별첨2.
자료공표 여부	-	-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p>시설형태</p> <p>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p> <p>①부엌시설: ①재래식 ②입식 ③없음</p> <p>②화장실시설: ①재래식 ②수세식 ③없음</p> <p>③목욕시설: ①온수 ②비온수 ③없음</p> <p>④상수도시설: ①있음 ②없음</p>	<p>주거시설형태</p> <p>택은 다음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p> <p>①입식 ①단독사용 부엌 ②재래식 ②공동사용 ③없음 ①수세식 ①단독사용 화장실 ②재래식 ②공동사용 ③공중화장실 ①온수시설 ①단독사용 목욕시설 ②비온수시설 ②공동사용 ③없음</p>	<p>4. 주거시설 형태</p> <p>이 택의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p> <p>①입식 ①단독사용 부엌은 ②재래식 ②공동사용 ③없음</p> <p>①수세식 ①단독사용 화장실 ②재래식 ②공동사용 ③없음</p> <p>①온수시설 목욕시설 ②비온수시설 ③없음 ☞ ①단독사용 ②공동사용</p>
조사항목 정의	별첨3	별첨4.	별첨5.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2005
조사표 내용	<p>4.주거 시설 형태</p> <p>이 가구의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p> <p>부엌 ①입식 <input type="checkbox"/> 이며 <input type="checkbox"/> ①단독 사용 ②재래식 <input type="checkbox"/> ②공동 사용 ③없음 ①상수도 수도 ②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③자가(전용)수도 ④없음 ①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이며 <input type="checkbox"/> ①단독 사용 화장실 ②재래식 <input type="checkbox"/> ②공동 사용 ③없음 ①온수시설 <input type="checkbox"/> 이며 <input type="checkbox"/> ①단독 사용 목욕시설 ②비온수시설 <input type="checkbox"/> ②공동 사용 ③없음</p>
항목정의	별첨6
자료공표 여부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 UN에서는 시설형태로 급수시스템, 화장실 및 하수도시설, 목욕시설, 부엌시설, 조명시설을 기본 항목으로 규정.</p> <p>· 이러한 시설은 거처 내/거처 밖(단독/공동)으로 구분</p>	<p>배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즉, 1)냉온수 시설, 2)수세식화장실, 3)욕조, 샤워기 <input type="checkbox"/> 예, 3개 모두 <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p>부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즉, 1)수도관을 겸비한 싱크대, 2)스토브, 레인지, 3)냉장고 <input type="checkbox"/> 예, 3개 모두 <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p>· 부엌수? 1. 1개 2. 2개이상 · 부엌종류 1. 전용 2. 식당부엌 3. 거실부엌 4. 다른 용도 방과 연결 5. 타가구와 함께 사용 · 전용화장실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수세식 화장실수? 1.1개 2. 2개이상 3.없음 · 재래식 화장실수? 1.1개 2. 2개이상 3.없음 · 목욕실이 있습니까? 1.예 2.아니요 · 세면기가 있습니까? 1.예 2.아니요</p>
조사항목 정의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이 거처는 단독 사용(self-contained)합니까? 부엌, 욕실,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방을 이 가구가 단독 사용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예, 모든 방은 우리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p>이 가구만 사용하는 욕조/샤워와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p> <p><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

(단위 : 천가구, %)

	계	부엌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재래식	없음	수세식	재래식	공동(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1995	12,958	10,897	1,970	91	9,728	3,156	74	9,696	407	2,855
구성비	100.0	84.1	15.2	0.7	75.1	24.4	0.5	74.8	3.2	22.0
2000	14,312	13,442	812	57	12,444	1,836	31	12,507	244	1,562
구성비	100.0	93.9	5.7	0.4	86.9	12.8	0.2	87.4	1.7	10.9
2005	15,887	15,554	275	59	14,935	928	24	15,227	52	608
구성비	100.0	97.9	1.7	0.4	94.0	5.8	0.2	95.8	0.4	3.8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시설형태는 그 나라의 주택정책 및 보건지표 작성에 필요한 항목임
- 과거 시계열 유지를 위해 기본항목은 유지하되 보급률 추이에 맞춰 항목선정 검토
- 최근의 결과를 보면, 90%이상 응답이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음. 주거의 질과 관련하여 차별 있는 항목으로서의 의미 감소. 향후 표본조사를 하거나 주택부문에서 주거시설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것 검토

별첨

1. 1980(부대시설)

주택내의 주거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1) 부엌시설

부엌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 취사, 싱크대 등 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을 말한다.

2) 변소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내는 시설을 수세식이라고 하며 수세식을 제외한 변소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한다.

2. 1985(편익시설)

1) 부엌시설

부엌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 취사, 싱크대 등 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을 말한다.

2) 화장실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내는 시설을 수세식이라고 하며, 수세식을 제외한 화장실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한다.

3) 목욕시설

목욕시설을 갖추고 따뜻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온수,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로 하였다.

3. 1990(시설형태)

1) 부엌시설

부엌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 취사, 싱크대 등 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을 말한다.

2) 화장실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내는 시설을 수세식이라고 하며, 수세식을 제외한 화장실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한다.

3) 목욕시설

목욕시설을 갖추고 따뜻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온수,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로 하였다.

3) 상수도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취수시설을 설치해 파이프를 통하여 각 가정에 공급하고 수도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4. 1995(주거시설형태)

1) 부엌시설

부엌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 취사, 싱크대 등 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을 말한다.

2) 화장실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내는 시설을 수세식이라고 하며, 수세식을 제외한 화장실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한다.

3) 목욕시설

목욕시설을 갖추고 따뜻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온수,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로 하였다.

5. 2000(4.주거시설형태)

1) 부엌시설

부엌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취사)시설, 싱크대 등이 현대식(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이 해당되며, 재래식은 싱크대 없이 재래식 아궁이를 갖추고 있는 부엌을 말함.

2) 화장실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을 수세식이라고 하며, 수세식을 제외한 화장실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한다.

3) 목욕시설

목욕시설(샤워실과 장소가 있는 경우)을 갖추고 따뜻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온수,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로 하였다.

6. 2005(4.주거시설형태)

1) 부엌

- 개수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①입식」은 조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을, 「②재래식」은 재래식 아궁이를 갖추고 있는 부엌을 말함

2) 수도

- 「①상수도」와 「②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도
- 「①상수도」는 광역수도 등 대규모의 수도시설로 일반가구에 공급
- 「②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는 일반주택이나 빌딩, 또는 일정한 지역 등의 소규모(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급수시설
- 「③자가(전용)수도」는 기숙사, 사택, 요양원, 학교 등의 특성시설에 공급되는 자가(전용)수도를 의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음)
- 우물, 샘물에 모터를 연결하여 가정마다 사용하는 수도형태의 시설은 「④없음」에 해당

3) 화장실

- 「①수세식」은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
- 이외의 화장실은 「②재래식」에 표시
- 조사가구의 주택 내에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③없음」에 해당

4) 목욕시설

- 사용하고 있는 목욕시설이 온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①온수 시설」에, 그렇지 않으면 「②비온수 시설」에 표시

- 5) 주거시설(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두 가지 이상의 형태일 때는 주로 사용하는 형태에 표시

항목번호 47 : 임차료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주거비용 및 주거와 관련한 삶의 질 파악

3. 관련항목 및 지표

- 거처종류, 사용방수,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혼인상태 및 임차료(전세, 월세, 사글세)별 가구수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조사표 내용	-	-	-	이 집은 닁의 소유입 니까? 아니면 세들어 살고 있습니까? 셋집 이라면 세는 얼마나 됩니까?	점유형태 임차료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의 겸용입니까? 그리 고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 니까? 셋집이라면 전세 및 보증 금과 월세는 얼마입니까?						
				전세 및 보증금	전세 및 보증금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월 세				월 세			
				백 만	십 만	만 원	천 원	백만	십만	만원	천원
조사항목 정의	-	-	-	-	-						
자료공표 여부	-	-	-	-	-						

조사 년도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점유형태 임차료 이 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사글세인 경우에는 계약 개월수와 한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12.점유형태 13.임차료 이 집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사글세인 경우에는 계약 개월수와 한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9.점유형태 10.임차료 이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은 주거 전용입니까, 영업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 ·사글세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1개월분을 기입											
	전세 및 보증금													
	억	천만	백만	십만	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월 세(사글세)			월세(사글세)			월세(사글세)							
	백만	십만	만원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조사항목 정의	(점유형태참조)	(점유형태참조)	(점유형태참조)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2006)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임차료는 UN권고안 중 기본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UN은 임대가구에 의한 임차료외에 주택에서 지불되는 월저당비, 세금, 기타시설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수도 있다. 임차료 데이터는 가구 특성 혹은 거처 특성과 관련되어 검토될 수 있다.	이 거처의 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매달 _____ 달러 매달 내는 렌트비에는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택의 주거지 월 임차료 및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만약 임차료가 무료이면 “엔 0”으로 기재할 것 <u>월임차료</u> _____엔 관리비(전기, 청소세 등) _____엔
조사항목 정의	임차료는 가구가 점유하는 공간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	-	-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여부를 묻고 융자가 있는 경우는 매월 얼마씩 불입하는지를 질문. 또한 부동산 세금 및 보험료, 부동산 예상 매매가, 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도 조사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세입자만 해당: 매달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1달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단위 : 가구)

전세		전세금(만원)									
		계	500미만	500 ~ 1,000	1,000 ~ 2,000	2,000 ~ 3,000	3,000 ~ 4,000	4,000 ~ 5,000	5000 ~ 1억	1억이상	2억이상
1995	전세(주거전용)	3,497,069	94,446	335,436	1,039,096	1,026,534	509,974	228,286	236,232	27,065	
	전세(영업겸용)	134,809	2,923	8,683	41,300	40,756	21,999	8,904	8,797	1,447	
2000	전세(주거전용)	3,783,471	56,386	16,4035	827,485	1,089,833	661,210	365,046	522,551	96,816	
	전세(영업겸용)	99,761	1,750	4,825	23,149	30,263	20,493	8,751	9,412	1,118	
2005	전세(주거전용)	3,238,215	38,146	61,049	393,238	662,346	518,075	338,399	848,027	316,181	62,754
월세		월세금(만원)									
		계	5미만	5 ~ 10	10 ~ 15	15 ~ 20	20 ~ 30	30 ~ 40	40 ~ 50	50이상	100이상
1995	월세(주거전용)	1,460,790	222,949	352,165	418,635	178,435	190,043	56,414	20,193	21,956	
	월세(영업겸용)	220,675	3,723	10,106	27,598	17,399	52,628	41,609	23,439	44,173	
2000	월세(주거전용)	1,766,115	181,517	285,506	443,688	252,420	371,054	137,511	44,664	49,671	
	월세(영업겸용)	150,323	951	5,332	17,810	13,299	37,547	28,747	15,830	30,786	
2005	월세(주거전용)	2,671,826	127,430	318,840	452,893	318,483	783,229	451,756	120,530	85,239	13,426
사글세		사글세(만원)									
		계	5미만	5 ~ 10	10 ~ 15	15 ~ 20	20 ~ 30	30 ~ 40	40 ~ 50	50이상	100이상
1995	사글세(주거전용)	308,242	14,982	81,787	95,745	49,234	39,416	13,083	4,002	9,993	
	사글세(영업겸용)	29,041	767	2,542	4,781	3,606	6,818	4,115	2,129	4,283	
2000	사글세(주거전용)	261,102	6,277	35,427	78,538	50,564	59,504	19,291	4,287	7,203	
	사글세(영업겸용)	20,615	604	1,654	3,576	2,237	5,100	3,519	1,576	2,339	
2005	사글세(주거전용)	209,645	31,90	15,125	39,205	34,443	65,910	25,105	4,736	7,375	14,556

※ 2000년 계에는 미상 포함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임차료는 UN의 권고사항 중 기본항목에 해당함.
- 임차료 자체보다는 부대 서비스 요금 조사도 타국가(일본, 미국)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화하고 많은 기관에서 전·월세 동향을 수시로 파악. 센서스에서 임차료는 지역별 통계보다는 가구의 주거부담 측면에서 다른 인구사회학적 항목과의 연계 분석이 더 큰 의미.

항목번호 48 : 가구소득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관련항목 및 지표

○ 가구소득지표

3.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가구단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지난 1년(1989.11.1-1990.10.31)동안의 총소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나 상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① 20만원미만 ②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③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④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⑤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⑦ 150만원이상-200만원 미만 ⑧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⑨ 300만원 이상	-	-	-
조사항 정의	-	-	-	-	-
자료공표 여부	-	미공표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UN에서는 소득을 인구항목에서 추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각 개인의 연간소득을 조사하고 있음.	모든 가구원의 세금 공제 전 연간 총 소득은? 1.2,000,000엔 이하 2.2,000,000-2,999,999 3.3,000,000-3,999,999 4.4,000,000-4,999,999 5.5,000,000-6,999,999	6.7,000,000-9,999,999 7.10,000,000-14,999,999 8.15,000,000-19,999,999 9.20,000,000이상
조사항목 정의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조사항목 정의	-	-

6.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가구소득은 90년에 한번 조사하였으나 미공표
- 많은 수요기관에서 소득항목을 추가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 조사사항의 정확성과 응답률의 저하 등을 고려하여 항목 검토

항목번호 49 : 외벽재료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지표

- 주택의 종류, 외벽재료 및 지붕재료별 주택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조사표 내용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 건축재료 ①나무 ②벽돌 및 돌 ③흙 또는 흙벽돌 ④철근콘크리트 ⑤시멘트 블록 ⑥기 타	주택의 외벽에 사용된 주 건축재료 ①나무 ②벽돌, 돌 ③흙, 흙벽돌 ④철근콘크리트 ⑤시멘트 블록 ⑥기 타	이 집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나무 ②철근콘크리트 ③적벽돌, 돌 ④흙, 흙벽돌 ⑤시멘트제품 ⑥기 타
조사항목 정의	별첨1.	별첨2	별첨3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①나무 ②적벽돌, 돌 ③시멘트제품 ④철근콘크리트 ⑤흙, 흙벽돌 ⑥기 타()	-	-	-
조사항목 정의	-	별첨4	-	-	-
자료공표 여부	-	공표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외벽재료별 주택

(단위 : 호)

	계	나무	적벽돌, 돌	시멘트제품	철근콘크리트	흙, 흙벽돌	기타
1990	7,160,386	1,352,534	1,149,912	1,806,505	2,260,099	570,559	20,777
%	100.0	18.9	16.0	25.2	31.6	7.9	0.3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주택유형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 센서스 항목으로서 이용도가 감소

별첨

1. 1970(외벽재료)

주택의 외벽에 주로 사용된 건축재료를 말하며 여러 종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편인 자재를 말하며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나무

외벽에 판자를 입힌 것과 또는 판자 쪽을 대고 위에 유지(油紙)를 입힌 것.

2. 흙 또는 흙벽돌

수숫대, 대, 갈대 등으로 엮어 흙을 바르거나 흙벽돌을 쌓아 만든 것을 말한다.

3. 시멘트 블록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은 것 또는 시멘트의 블록에 타일 또는 도료를 칠한 경우를 말한다.

4. 벽돌 및 돌

시멘트 블록과 돌을 섞어 쌓되 벽돌이나 돌을 바깥쪽으로 입힌 경우를 말한다.

5.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골조가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건물로서 기둥과 기둥사이의 칸막이는 보통벽돌, 시멘트 블록 등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2. 1975(외벽재료)

주택의 외벽에 주로 사용된 주건축재료를 말한다. 여러 종류가 사용되었을 경우는 면적이 넓은 편인 자재를 말하며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나무

기둥이 나무이고 외벽의 표면이 판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흙 또는 흙벽돌

한옥과 같이 수숫대, 대, 갈대 등으로 엮어 그 위에 흙 또는 회를 바르거나 흙벽돌을 쌓아 만든 것을 말한다. 주로 옛날 한옥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시멘트 블록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고 시멘트 또는 타일 등을 입힌 것을 말한다.

4. 벽돌, 돌

벽을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또는 블록)로 쌓고 밖에 돌 또는 인조석을 붙인 것을 말한다.

5.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골조가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건물을 말하며 기둥과 기둥사이의 칸막이는 벽돌, 시멘트 블록 등 어느 것을 사용하든 여기에 포함된다.

3. 1980(주택의 외벽재료)

주택의 외벽에 주로 사용된 건축 재료를 말한다.

1. 나무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2. 적벽돌, 돌

구운벽돌(적색, 흑색), 오지벽돌(적색, 흑색)또는 돌로 쌓거나 타일 등으로 치장한 집을 말한다.

3. 시멘트 제품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록(굽지 않은 것)등으로 벽을 쌓거나 치장을 한 집을 말한다.

4. 철근 콘크리트

벽에 사용된 재료와 관계없이 기둥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집을 말한다.

5. 흙·흙벽돌

토담집을 말한다.

6. 기타

상기 어느 항에도 속하지 않는 집

4. 1990(외벽재료)

주택의 외벽에 주로 사용된 건축재료를 말한다.

1. 나무 :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2. 적벽돌, 돌 : 구운벽돌(적색, 흑색), 오지벽돌(적색, 흑색)또는 돌로 쌓거나 타일 등으로 치장한 집을 말한다.

3. 시멘트 제품 :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록(굽지 않은 것)등으로 벽을 쌓거나 치장을 한 집을 말한다.

4. 철근 콘크리트 : 벽에 사용된 재료와 관계없이 기둥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집을 말한다.

5. 흙·흙벽돌 : 토담집을 말한다.

6. 기타 : 상기 어느 항에도 속하지 않는 집

항목번호 50 : 지붕재료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주택의 종류, 외벽재료 및 지붕재료별 주택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조사표 내용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①짚, 갈대 등 ④기와 ②함석(양철) ⑤스라브 ③스레이트 ⑥기타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①짚, 갈대 등 ④기와 ②함석(양철) ⑤스라브 ③스레이트 ⑥기타	이 집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 으로 되어있습니까? ①기와 ④함석 ②스레이트 ⑤짚, 갈대 ③스라브(-기와) ⑥기타
조사항목 정의	별첨1	별첨2	별첨3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이 집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①기와 ②슬레이트 ③슬래브(슬래브기와) ④함석 ⑤짚, 갈대 ⑥기타()	-	-	-
조사항목 정의	-	별첨4	-	-	-
자료공표 여부	-	공표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UN에서는 기본항목으로 지붕 재료를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재료 등 주요부문의 자재(벽돌, 콘크리트, 목재, 지붕, 바닥 등)가 무엇인지는 그 국가의 필요성과 특수성에 따라 달라 조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304~2.306)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지붕재료별 주택

(단위 : 천호)

	계	기와	슬레이트	슬래브	함석	짚, 갈대	기타
1990	7,160	1,732	1,728	3,486	166	19	29
%	100.0	24.2	24.1	48.7	2.3	0.3	0.4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현재 주택형태로 볼 때, 센서스 항목으로서 이용도가 크게 떨어짐

별첨

1. 1970(지붕재료)

주택의 지붕에 주로 사용된 건축재료를 말하며 두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중 면적이 큰 것을 주된 재료로 구분하였으며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가. 짚, 갈대 : 짚, 갈대 등 초목류의 지붕 .
- 나. 함석(양철) : 함석판, 동판, 알루미늄판 또는 금속판의 지붕.
- 다. 스테이트 : 천연스테인트, 인공스테인트, 함석 등의 지붕.
- 라. 벽돌 및 돌 : 시멘트 블록과 돌을 섞어 쌓되 벽돌이나 돌을 바깥쪽으로 입힌 경우를 말한다.
- 마. 스라브 : 철근 콘크리트 지붕.

2. 1975(지붕재료)

주택의 지붕에 사용된 주건축재료를 말한다. 여러 종류가 사용되었을 경우는 면적이 넓은 편외 자재를 말하며, 주택이 2개 이상의 건물로 되었을 경우는 주건물에 사용된 자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가. 짚, 갈대 : 짚, 갈대 등 초목류의 지붕
- 나. 함석(양철) : 함석판, 동판 등 금속판의 지붕.
- 다. 스테이트 : 천연 및 인공 스테이트 지붕.
- 라. 기와 : 시멘트 및 흙기와 지붕
- 마. 스라브 : 철근 콘크리트 지붕.

3. 1980(지붕재료)

주택의 지붕에 주로 사용된 건축재료를 말한다.

- 가. 기와 : 시멘트 또는 구운 기와로 덮힌 집을 말한다.
- 나. 슬레이트 : 각종 형태의 석면, 시멘트 제품의 지붕재료로 덮힌 집을 말한다.
- 다. 스라브(스라브기와) : 평스라브와 경스라브에 기와를 덮은 집을 말한다.
- 라. 함석(양철) : 양철, 함석판, 알루미늄판 또는 금속판으로 덮힌 집을 말한다.
- 마. 짚, 갈대 : 초가집을 말한다.

4. 1990(지붕재료)

주택의 지붕에 주로 사용된 건축재료를 말한다.

- 가. 기와 : 시멘트 또는 구운 기와로 덮힌 집을 말한다.
- 나. 슬레이트 : 각종 형태의 석면, 시멘트 제품의 지붕재료로 덮힌 집을 말한다.
- 다. 슬래브(슬래브기와) : 평슬래브와 경슬래브에 기와를 덮은 집을 말한다.
- 라. 함석(양철) : 양철, 함석판, 알루미늄판 또는 금속판으로 덮힌 집을 말한다.
- 마. 짚, 갈대 : 초가집을 말한다.

항목번호 51 : 연건평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인수별 주택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평)	-	이 집의 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①연 건 평 평 ②대지면적 평	이 집은 연건평이 얼 마나 됩니까? 연건평 (평)
조사항목 정의	주택의 총건평수 주택의 총건평수를 말 하며, 2층 이상의 경우 에는 각 층의 연건평수 를 말한다. 거주용 주 택의 부속건물은 건평 수에 포함시키고 주택 의 일부가 영업에 사용 되고 있다 해도 총건평 수에 포함시켰다.	-	건평 건평은 주거로 사용 되는 부분만을 말한 다. 따라서 창고, 외 양간, 차고 등은 제외 된다. 그러나 지하실 이라도 사람이 거주 하면 이 면적은 포함 된다.	건축연면적 (연건평) 건축연면적은 주거 로 사용하는 부분 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창고, 창고, 외양간 등은 제외 하였으나 지하실은 포함하였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	공표	공표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연건평 및 대지면적 (*두 문항임) 이 주택은 연건평과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을 기입합니다. ※평 또는 m ² 중 한쪽만 기입합니다. 연건평평m ² 대지면적.....평m ²	연건평 이 주택의 연건평은 얼마입니까?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 부분만 기입합니다. ()평 또는 ()m ²	17.연건평 이 주택의 연건평(전용면적)은 얼마입니까?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평형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평 (또는 □□□m ²)
조사항목 정의	연건평 연건평은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따라서 창고, 외양간, 차고 등은 제외한다. 그러나 지하실이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이 면적은 포함된다.	연건평 연건평은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따라서 창고, 외양간, 차고 등은 제외한다. 그러나 지하실이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이 면적은 포함된다.	연건평 연건평은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따라서 창고, 외양간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나 지하실이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이 면적은 포함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입하되, 주인(대표)가구만 작성합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2005
조사표 내용	2 연건평 이 주택의 연건평(주거용 면적)은 몇 평(또는 m ²)입니까? · 주거에 이용하는 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평형(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평 (또는 □□□m ²)
조사항목 정의	연건평 연건평은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따라서 창고, 창고, 외양간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나 지하실이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이 면적은 포함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입하되, 주인(대표)가구만 작성합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 (2005 ACS)	일본 (2000)	영국 (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p>7. Useful floor space (2.466~2.468)</p> <p>-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바깥 벽 안쪽의 공간 중 사람이 살지 않는 지하실이나, 다락방들은 대상에서 제외</p> <p>-다세대주택에서는 모든 공동 공간은 제외</p> <p>-연건평 측정은 조사하기가 어렵지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항목이므로, UN은 임대동의서 등의 공문서를 이용해서 이 항목에 응할 수 있게 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조사방법을 고려하도록 제안</p>	-	<p>이거주지의 총면적은?</p> <p>방충면적 뿐 아니라 거주지 공간 총면적까지 답해주십시오</p> <p>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전용면적에 응답해주십시오</p> <p>총면적 (평방미터) 1층면적 (평방미터) 지하층면적 (평방미터)</p>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연건평별주택

(단위 : 천호)

	계	7평미만	7-9	9-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평이상
1995	9,205	44	217	1,199	2,406	3,332	934	476	382	154	59
%	100.0	0.5	2.4	13.0	26.1	36.2	10.1	5.2	4.1	1.7	0.6
2000	10,959	38	209	1,208	3,198	3,970	1,120	545	408	174	89
%	100.0	0.3	1.9	11.0	29.2	36.2	10.2	5.0	3.7	1.6	0.8
2005	3,985	17	40	282	644	1,380	682	314	342	170	115
%	100.0	0.4	1.0	7.1	16.2	34.6	17.1	7.9	8.6	4.3	2.9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연건평은 중요한 주택지표
- 아파트에서는 분양면적으로 잘못 조사될 개연성
 - 2000년에는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용면적을 조사하여 활용 (공동주택기본정보 활용)
- 연건평의 정의 시 화장실, 목욕실, 부엌 등 빼버릴 수 있는 장소들도 상세하게 기술 할 필요(예 : 일본)

항목번호 52 : 대지면적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연건평 및 대지면적별 단독주택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	-	이 집의 건평과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①연 건 평 평 ②대지면적 평	-
조사항목 정의	-	-	대지면적은 텃밭을 제외한 담 내의 전면적을 말한다.	-
자료공표여부	-	-	공 표	-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연건평 및 대지면적(* 두 문항임) 이 주택은 연건평과 대 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 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 지면적은 담장 안의 전 면적을 기입합니다. ※평 또는 m ² 중 한쪽만 기입 합니다. 연건평평m ² 대지면적.....평m ²	대지면적 이 주택의 대지면적 은 얼마입니까? (단 독주택만 기입합니 다.) · 담장 안의 모든 면 적을 포함하되, 영업 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평 또는 ()m ²	18.대지면적(단독주택만기입 합니다.) 이 주택의 대지면적은 얼마입니 까? · 대지면적은 담장 안의 모든 면 적을 포함하되, 영업에 사용되 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평 (또는 □□□m ²)
조사항목 정의	대지면적은 텃밭을 제외 한 담 내의 전면적을 말 한다.	대지면적은 텃밭을 제외한 담 내의 전면 적을 말한다.	대지면적은 담장(울타리)내의 텃 밭을 제외한 전면적을 포함합니 다. ※ 평 또는 m ² 로 조사하되, m ² 는 환산하여 평(≒3.3m ²)으로 기입합 니다.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2005
조사표 내용	3 대지 면적(단독주택만 기입) 이 주택의 대지면적은 몇 평(또는 m ²)얼마입니까? ·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모든 면적 을 포함하되, 영업에 사용하는 부 분은 제외하고 기입합니다. □□□평 (또는 □□□m ²)
조사항목 정의	대지면적은 담장(울타리)내의 텃밭을 제외한 전면적을 포함합니다. ※ 평 또는 m ² 로 조사하되, m ² 는 환산하여 평 (≒3.3m ²)으로 기입합니다.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자료공표 여부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이 집의 부지는 얼마입니까? * 아파트나 세든 경우, 전체를 기입하지 말고, 자기 집이 사용하는 공간만 기입 (____ m ²) 또는 (____ 평)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대지면적별 단독주택

(단위 : 천호)

	계	10평 미만	10-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149	149-199	199-249	249-299	299평 이상
1995	4,337	369	669	123	368	532	574	896	678	595	251	130	34	50
%	100.0	0.8	1.5	2.8	8.5	12.2	13.2	20.6	15.6	13.7	5.8	3.0	0.8	1.1
2000	4,069	27	55	104	336	506	537	873	649	554	229	126	31	44
%	100.0	0.66	1.35	2.56	8.26	12.44	13.20	21.45	15.95	13.62	5.63	3.10	0.76	1.08
2005	3,985	9		166	329	482	488	825	599	560	250	162	41	75
%	100.0	0.23		4.17	8.26	12.10	12.25	20.70	15.03	14.05	6.27	4.07	1.03	1.88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대지면적별 주택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조사되고 있음
- 영업 및 주거겸용의 경우 주거전용만 환산하여 기입함에 따라 주택이 있다고 보기에는 과소한 정도로 조사되는 것이 문제

항목번호 53 : 건축연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건축년도별 주택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건물의 건축시기 ①1945년 이전(25년 전) ②1950년 이전(20년 전) ③1960년 이전(10년 전) ④1961년 이후→(19년)	주택의 건축시기 ①1970년 이전 ②1970년 이후()	이 집은 언제 지었습니까? ①1950년 이전 ②1950-1959 ③1960-1969 (년도) ④1970-1975 ⑤1976년 이후	-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p>건축년도</p> <p>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p> <p>①1950년 이전 ②1950년-1959년</p> <p>③1960년-1969년 ④1970년-1979년</p> <p>⑤1980년-1985년 ⑥1986년</p> <p>⑦1987년 ⑧1988년</p> <p>⑨1989년 ⑩1990년</p>	<p>건축년도</p> <p>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p> <p>· 증축·개축면적이 주택 총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증축·개축시기에○표합니다.</p> <p>① 1995년 ⑦ 1989년-1980년</p> <p>② 1994년 ⑧ 1979년-1970년</p> <p>③ 1993년 ⑨ 1969년-1960년</p> <p>④ 1992년 ⑩ 1959년-1950년</p> <p>⑤ 1991년 ⑪ 1949년</p> <p>⑥ 1990년</p>	<p>20. 건축연도</p> <p>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p> <p>· 증축·개축 면적이 주택 총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시기에 ○표합니다.</p> <p>① 2000년 ⑦ 1990~1994년</p> <p>② 1999년 ⑧ 1985~1989년</p> <p>③ 1998년 ⑨ 1980~1984년</p> <p>④ 1997년 ⑩ 1970~1979년</p> <p>⑤ 1996년 ⑪ 1960~1969년</p> <p>⑥ 1995년 ⑫ 1950~1959년</p> <p>⑬ 1949년 이전</p>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 년도	2005
조사표 내용	<p>⑤ 건축연도</p> <p>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p> <p>· 증축·개축 면적이 주택 총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시기를 표시합니다.</p> <p>① 2005년 ② 2004년</p> <p>③ 2003년 ④ 2002년</p> <p>⑤ 2001년 ⑥ 2000년</p> <p>⑦ 1995~1999년 ⑧ 1990~1994년</p> <p>⑨ 1985~1989년 ⑩ 1980~1984년</p> <p>⑪ 1970~1979년 ⑫ 1960~1969년</p> <p>⑬ 1959년 이전</p>
조사항목 정의	-
자료공표 여부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25. Year or period of construction(2.512~2.516)</p> <p>-10년 미만주기로 센서스가 시행될 경우에는 건물이 축조된 정확한 해를 조사하도록 권장</p> <p>-이 항목의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UN은 센서스 간격 기간에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효율적인 주택통계 보완책이 될 수 있고, 현 주택통계와 주택센서스의 통합방안을 제시</p>	<p>이 건물이 지어진 해는 대략 언제입니까?</p> <p>○ 1999 혹은 2000</p> <p>○ 1995-1998</p> <p>○ 1990-1994</p> <p>○ 1980-1999</p> <p>○ 1970-1979</p> <p>○ 1960-1969</p> <p>○ 1950-1959</p> <p>○ 1940-1949</p> <p>○ 1939년 또는 그 이전</p>	<p>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습니까?</p> <p>총면적의 반 이상이 재증축 되었을 경우 증축된 해를 기입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45.8.15일 종전일 이전 2. 종전과 1950년 사이 3. 1951-1960 4. 1961-1970 5. 1971-1975 6. 1976-1980 7. 1981-1985 8. 1986이전 ()
조사항목 정의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p>H4. 이 주거지는 원래 언제 건축되었습니까?</p> <p>나중에 개축, 증축 또는 개조된 시점이 아닌, 건물이 완공된 시기를 표시하십시오. 연도를 모르는 경우, 최선의 추정년도를 기입하십시오.</p> <p>○ 1920년 또는 이전</p> <p>○ 1921-1945년</p> <p>○ 1946-1960년</p> <p>○ 1961-1970년</p> <p>○ 1971-1980년</p> <p>○ 1981-1985년</p> <p>○ 1986-1990년</p> <p>○ 1991-1995년</p> <p>○ 1996-2000년</p> <p>○ 2001-2006년</p>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 건축년도별 주택

(단위 : 천호)

	계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0	1979 -1970	1969 -1960	1959 -1950	1949년 이전	
1995	9,205	-	-	-	-	-	452	661	684	685	534	619	2,736	1,368	581	368	516	
%	100.0	-	-	-	-	-	4.9	7.2	7.4	7.4	5.8	6.7	29.7	14.8	6.3	4.0	5.6	
2000	10,959	249	437	493	628	571	765						3,041	2,730	1,093	388	563	-
%	100.0	2.3	4.0	4.5	5.7	5.2	7.0						27.7	24.9	10.0	3.5	5.1	-

	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5	1994 -1990	1989 -1985	1984 -1980	1979 -1970	1969 -1960	1959년 이전
2005	12,495	236	445	521	611	468	475	2,873	2,836	1,463	982	872	302	411
%	100.0	1.9	3.6	4.2	4.9	3.7	3.8	23.0	22.7	11.7	7.9	7.0	2.4	3.3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건축년도별 주택의 정확한 통계작성 기법 개발 필요
- 조사원이 조사구내 건물대장 등을 참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조사연도별로 건축시기별 주택수를 비교하면 자료가 불일치함
(예, 1950년 건축주택수가 1995년보다 2000년 조사 시 더 많게 나타남)

항목번호 54 : 총방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주택의 종류, 거주가구수 및 총방수별 주택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 가구수 1.총방수.....(개).....(평) 2.주가구사용방수... (개).....(평) 3.동거가구수.....(가구) 2.동거가구사용방수. (개)..(평)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 가구수 1.총방수.....(개).....(평) 2.주가구사용방수.. (개)..(평) 3.동거가구수..... (가구) 2.동거가구사용방수. (개)..(평)	이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① 총 방 수 개 ② 거주가구수 가구	이 집에는 모두 몇 가 구가 살고 있습니까? 방은 몇 개나 됩니까? 1.총거주가구수(가구) 2.총 방 수 (개)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년도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p>총방수 및 거주 가구 수(*2문항임)</p> <p>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p> <p>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p> <p>총 방 수.....개 거주가구수.....가구</p>	<p>총방수</p> <p>이 주택에는 침실(서재포함),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 등을 포함하여 방이 모두 몇 개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고 있지 않는 침실(서재 포함)과 거실(대청마루), 식당도 포함됩니다. · 거실과 식당이 서로 튀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봅니다. · 거실과 식당이 벽 또는 문으로 서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2개로 봅니다. <p>()개</p>	<p>19.총방수</p> <p>이 주택에는 침실, 거실(대청마루), 별도로 차단된 식당은 모두 몇 개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1.8m, 넓이는 1평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사용하고 있지 않는 침실과 거실(대청마루), 식당도 포함합니다. ·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는 식당이 벽 또는 문 등으로 거실과 차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p>●방수(침실, 서재 등) □□개 ●거실(대청마루) □□개 ●별도로 차단된 식당 수 □□개</p>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조사년도	2005
조사표 내용	<p>4 총 방 수</p> <p>이 주택에는 방, 거실(대청마루), 식당이 각각 몇 개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주택 전체의 방수를 기입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도 포함합니다. · 벽 또는 문 등으로 차단되지 않은 거실 겸 식당은 거실에만 기입합니다. <p>● 방 □□개 ● 거실(대청마루) □□개 ● 식당(부엌이 딸린 식당 포함) □□개</p>
조사항목 정의	-
자료공표 여부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5. Rooms - number of (2.462~2.464)</p> <p>-기본항목으로 규정.</p> <p>-침실, 식당, 거실, 공부방, 거주다락방, 하인방, 부엌, 전문가용이나 사업용으로 쓰이는 방 등 거주용으로 쓰이는 칸막이된 공간</p> <p>-복도, 베란다, 로비, 욕실,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않음</p> <p>6. Bedrooms - number of (2.465)</p> <p>-침대가 있고 밤잠을 위해 사용하는 방</p>	<p>이 주택에는 몇 개의 방이 있습니까?</p> <p>(화장실, 현관, 발코니, 휴게실, 홀 및 반쪽 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p> <p>○ 1개 ○ 2개 ○ 3개</p> <p>○ 4개 ○ 5개 ○ 6개</p> <p>○ 7개 ○ 8개 ○ 9개 이상</p> <p>침실은 몇 개나 됩니까 (즉, 이 주택을 세 놓을 때 침실이 몇 개라고 합니까?)</p> <p>○ 1개 ○ 2개 ○ 3개</p> <p>○ 4개 ○ 5개 이상</p>	<p>택의 거처에는 얼마나 많은 방이 있습니까?</p> <p>*하숙처는 가구는 그 방을 포함. 식당 겸 부엌은 부엌을 뺀 나머지 부분이 다다미 3개보다 클 경우 방으로 카운트</p> <p>방수 () 개</p> <p>방의 다다미 수?</p> <p>* 다다미 수로 환산한 방의 크기(1.65m²/다다미)</p> <p>다다미 () 개</p>
조사항목 정의	-높이2m이상 넓이4㎡이상의 성인침대를 놓을 수 있는 충분히 구획된 공간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H3. 당신의 가족만이 사용하는 방의 수는 몇 개입니까?</p> <p>○ 욕실, 화장실, 복도 또는 층계참, 벽장 같이 창고로 쓰이는 방은 세지 마십시오.</p> <p>○ 주방, 거실, 침실, 다용도실, 공부방 같은 방은 세지 마십시오.</p> <p>○ 만약 2개의 방을 하나로 개조했다면 1개로 세십시오.</p> <p>방수 □□</p>	<p>H3. (a) 이 주거지에는 방이 몇 개 있습니까?</p> <p>부엌, 침실, 꾸며진 다락방 또는 지하실 등을 포함시키십시오.</p> <p>화장실, 복도, 현관과 사업용으로만 쓰이는 방은 제외하십시오.</p> <p>— ← 방 숫자</p> <p>(b) 이 방들 중에서 침실은 몇 개입니까?</p> <p>— ← 침실 숫자</p>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 총방수별 주택

(단위 : 호)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이상	주택당 평균방수
1995	9,205	87	621	2,458	3,512	959	461	251	856	4.6
%	100.0	0.9	6.7	26.7	38.1	10.4	5.0	2.7	9.3	
2000	10,959	86	361	2,376	4,724	1,510	586	278	1,038	4.8
%	100.0	0.8	3.3	21.7	43.1	13.8	5.3	2.5	9.5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이상	평균총방수
2005	12,495	102	322	2,363	5,996	1,802	606	257	183	152	713	4.8
%	100.0	0.8	2.6	18.9	48.0	14.4	4.8	2.1	1.5	1.2	5.7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국제적인 방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 실정과 다소 달라 애매

- 거실(living room), 식당(dining room)을 우리나라 개념의 방으로 보는데 따른 이해부족
- 반면 부엌(kitchen room)은 방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혼란
- 특히, 2000년 조사표에서는 사용방수가 거실, 식당을 포함한 전체 방수인지 아니면 한국 식 개념에서의 침실만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아 조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 초래

항목번호 55 : 동거가구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주택의 종류, 거주가구수 및 총방수별 주택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총방수.....(개)...(평) 2.주거구사용방수(개)...(평) 3.동거가구수.....(가구) 2.동거가구사용방수(개)...(평)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총방수.....(개)...(평) 2.주거구사용방수(개)...(평) 3.동거가구수.....(가구) 2.동거가구사용방수(개)...(평)	이 집에는 방이 몇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①총방수 개 ②거주가구수 가구	이 집에는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방은 몇 개나 됩니까? 1.총거주가구수(가구) 2.총 방 수(개)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조사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2문항임)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 총 방 수..... 개 거주가구수..... 가구	조항은 없으나, 집계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표는 작성됨	-	-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공표	공표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UN은 기본항목으로 규정 -가구분리의 중요성 강조 (예: 주택수요예측)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거주가구수별 주택

(단위 : 천호)

	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이상
1995	9,205	7,521	777	405	224	136	142
%	100.0	81.7	8.4	4.4	2.4	1.4	1.5
2000	10,959	9,550	637	334	181	120	138
%	100.0	87.1	5.8	3.0	1.7	1.1	1.3
2005	-	-	-	-	-	-	-
%	-	-	-	-	-	-	-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95년 총조사에서는 동거가구수 조항을 없애고, 자료처리시 집계통계표를 작성하여 통계표를 작성.

항목번호 56 : 거주가능가구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거처의 종류별 가구수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이 집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가구)	거주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가구	-	-	-
조사항목 정의	-	-	-	-	-
자료공표 여부	-	-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문제점 및 검토방향

- 거주가능 가구수는 향후 신규주택건설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조사됨
 - 보고서에 결과가 수록되지 않음

항목번호 57 : 편익시설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단독주택별 편익시설수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조사표 내용	-	-	-	다음의 편익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①부엌시설.....(개) ②화장실시설.....(개) ③출입구시설.....(개)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	-	-	-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조사표 내용	<p>편익시설수 이 주택에는 다음 시 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p> <p>1. 부 역 :.....개</p> <p>2. 화장실:.....개</p> <p>3. 출입구:.....개</p>	<p>편익시설수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 있습니까?</p> <p>· 독립된 출입구에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 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됩 니다.</p> <p>5-1. 부 역 수 : ()개</p> <p>5-2. 화 장 실 수 : ()개</p> <p>5-3. 독립된 출입구수: ()개</p>	<p>21. 편익시설수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 실, 독립된 출입구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p> <p>· 독립된 출입구에는 다 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 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 관문도 포함됩니다.</p> <p>● 부엌수 □□ 개</p> <p>● 화장실수 □□ 개</p> <p>● 독립된 출입구 수 □□ 개</p>
조사항목 정의	-	-	-
자료공표 여부	-	-	-

조사 년도	2005
조사표 내용	<p>6 편익시설 수</p> <p>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 입니까?</p> <p>· 독립된 출입구에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 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됩니다.</p> <p>● 부엌 □□ 개</p> <p>● 화장실 □□ 개</p> <p>● 독립된 출입구 □□ 개</p>
조사항목 정의	-
자료공표 여부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p>10. Toilet (2.475~2.478) -기본항목으로 규정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p> <p>12. Bathing facilities (2.480~2.481) -기본항목으로 규정</p> <p>13. Kitchen - availability of (2.482~2.485) -기본항목으로 규정 -모든 점에서 방을 위한 기준에 부합하고 주식 준비를 위한 장비가 있고 그와 같은 용도로 주로 쓰이는 공간</p>	-	<p>데에는 몇 개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1. 1개 2. 2개 이상</p>
조사항목 정의	-	-	-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p>H4. 당신의 가족들만 사용하는 목욕과 샤워 시설, 화장실이 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 편의 시설수별 단독주택

(단위 : 천호)

	부엌시설						화장실시설						출입구시설					
	계	1	2	3	4	5개 이상	계	1	2	3	4	5개 이상	계	1	2	3	4	5개 이상
1995	4,337	2,788	689	376	212	271	4,337	2,943	735	326	144	190	4,337	3,086	660	249	139	203
%	100.0	64.2	15.9	8.7	4.9	6.2	100.0	67.8	16.9	7.5	3.3	4.4	100.0	71.1	15.2	5.7	3.2	4.7
2000	4,069	2,654	613	335	186	281	4,070	2,499	825	342	157	247	4,068	2,703	649	290	163	263
%	100.0	65.2	15.1	8.2	4.6	6.9	100.0	61.4	20.3	8.4	3.8	6.0	100.0	66.4	16.0	7.1	4.0	6.5

	부엌시설							화장실시설							
	계	1	2	3	4	5	6개 이상	계	0	1	2	3	4	5	6개 이상
2005	3,985	2,637	574	303	166	120	185	3,987	9	2,268	809	369	191	135	206
%	100.0	66.2	14.4	7.6	4.2	3.0	4.6	100.0	0.2	56.9	20.3	9.3	4.8	3.4	5.2

출입구시설						
계	1	2	3	4	5	6개 이상
3,985	2,572	662	293	159	118	181
100.0	64.5	16.6	7.4	4.0	3.0	4.5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이 항목은 주택이 소유개념으로 조사되는 데 따른 보완항목으로서, 소유와 관계없이 몇 가구가 살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임
- 소유개념의 주택수를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주택수로 환산이 가능

항목번호 58 : 조명시설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등화시설별 주택 및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주택의 등화시설 ①전기 ②기타	-	-	-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	-	-
자료공표 여부	-	-	-	-	-	-	-	-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 (2000)	영국 (2001)	캐나다 (2006)
조사내용	기본항목이며, 만약 조명시설이 전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전기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예: 지역협동체, 일반발전소, 산업발전소, 광산 등). 부가적으로 전기의 용도(예:요리,운수 등)를 파악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등화시설별 주택 및 가구

(단위 : 호, 천가구)

	주 택			가 구		
	계	전기	없음	계	전기	없음
1970	4,360	2,178	2,182	5,793	3,463	2,330
%	100.0	49.9	50.1	100.0	59.8	40.2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등화시설에 대한 조사는 70년 표본조사 이래로는 조사되지 않음

항목번호 59 : 거주기간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전, 월세 가구의 주거 안정도를 측정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거주기간별 가구
-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및 거주기간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이 집에 살고 있는 기간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가 구원 기준)은 얼마나 됩 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5년 미만 ⑤ 5-10년 미만 ⑥ 10-15년 미만 ⑦ 15-20년 미만 ⑧ 20-25년 미만 ⑨ 25년 이상	이 집에 사신 지는 얼마 나 되었습니까? *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5년 미만 ⑤ 5-10년 미만 ⑥ 10-15년 미만 ⑦ 15-20년 미만 ⑧ 20-25년 미만 ⑨ 25년 이상	이 집에 사신 지는 얼마 나 되었습니까? *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5년 미만 ⑤ 5-10년 미만 ⑥ 10-15년 미만 ⑦ 15-20년 미만 ⑧ 20-25년 미만 ⑨ 25년 이상
조사항목 정의	-	-	-	-
자료공표 여부	-	-	-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조사내용	-	주택/아파트/모빌 홈에 언제 입주 하였습니까? Month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부양자가 언제 현재의 장소로 이사 들어 왔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이사 온 후에 재건축 되었다면 재건축전에 이사 온 시기를 기입합니다 ① 2차대전 종전 전 ② 1950년 전쟁 전 ③ 1951-1960 ④ 1961-1970 ⑤ 1971-1975 ⑥ 1976-1980 ⑦ 1981-1985 ⑧ 1986이후(년)
조사항목 정의	-	-	-

※ 미국의 경우 동일 주소에서 1년 중 몇 달 거주하는지 및 거주사유에 대해 질문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조사항목 정의	-	-

6. 최근 조사결과

○ 거주기간별 가구

(단위 : 천가구)

	계	1년미만	1-2년	2-3년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이상
1995	12,958	2,705	2,108	1,480	1,463	2,110	849	462	356	1,425
2000	14,310	2,598	2,230	1,235	1,510	3,176	1,135	489	413	1,522
2005	15,889	2,736	2,035	1,784	2,167	3,029	1,556	559	432	1,583

※ 2000, 2005 계에는 미상 포함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외국은 주부양자가 조사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구원 중 가장 오래된 사람 기준이어서 정확하게 전, 월세 가구의 안정성으로 보기 어려움

항목번호 60 : 거주층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 공간의 질 파악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 거주층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	-	이 가구가 살고 있는 곳은 건물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지하(반지하) ② 지상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15px;" type="text"/> 층 ③ 옥상(옥탑)
조사항목 정의	-	-	-	① 지하(반지하)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1/2 이상인 경우 ② 지상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15px;" type="text"/> 층 : 건물 전체 층수가 아닌 실제 살고 있는 층수를 기입 ③ 옥상(옥탑) : 건물 옥상에 설치된 주거 공간
자료공표 여부	-	-	-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	이 거처의 가장 낮은 층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지하 또는 반지하 <input type="checkbox"/> 지상층(street level) <input type="checkbox"/> 1층(street level보다 높은 층) <input type="checkbox"/> 2층 <input type="checkbox"/> 3층 또는 4층 <input type="checkbox"/> 5층 이상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거주층

(단위 : 천가구)

	계	지상	지하(반지하)	옥탑
2005	15,887	15,249	587	51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주거의 질과 관련하여 최소주거기준 미달가구 파악에 도움이 됨

항목번호 61 : 자동차 보유 대수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자동차 대중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련 정책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주차 시설
-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 가구주의 성, 연령, 경제활동상태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	이 맥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차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① 승용차 ()대 ② 승합차 ()대 ③ 트럭, 기타 ()대 ④ 없음 → 12 번으로	이 가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승용차(10인승 이하)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② 승합차(11인승 이하)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③ 화물 및 기타자동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④ 없음 → 8 번으로
조사항목 정의	-	-	-	별표
자료공표 여부	-	-	공표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자동차 수는 대개 거처의 점유자에 의해 이용 가능한 승용차(car)와 승합차(van)의 수를 의미	얼마나 많은 승용차, 밴, 트럭(1톤 이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개 이상	-	이 가구는 얼마나 많은 승용차 또는 밴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사적인 용도로 이용 가능한 회사 차 포함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대 이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대	-
조사항목 정의	“normally available”의 의미는 점유자가 소유하거나 임대차령 장기간 동안의 하에 있는 자동차를 말함	-	-	-	-

6. 최근 조사결과

○ 자동차 보유 대수

(단위 : 천가구)

	계	자동차 미보유가구	자동차 보유가구			
			소계	1대	2대	3대 이상
2000	14,310	5,976	8,334	7,230	995	109
2005	15,889	6,124	9,761	7,846	1,711	204

※ 2005 계에는 미상 포함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행정자료(자동차 등록대장)와 결과 비교·분석 필요
- 행정자료로 대체 가능 여부 검토

별첨

1. 2000(10. 자동차 보유 대수)

- 목적에 관계없이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해당
 - 승합차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지프형 승용차는 7인 이상 탑승여부에 따라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분류)

2. 2005(6. 자동차 보유 대수)

- 목적에 관계없이 가구에서 보유하여 사용 중인 자동차의 종류와 수를 기입
 - 회사 소유의 차를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출·퇴근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포함
 - 자신의 소유라도 회사에 놓고 다니면 제외
 - ① 승용차(10인승 이하)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레저용 차량도 10인승 이하이면 승용차에 해당
 - ② 승합차(11인승 이상) :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포함
- 중장비나 오토바이는 해당되지 않음

항목번호 62 : 주차 시설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자동차 대중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련 정책 기초자료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 자동차 보유 대수
-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주차시설별 가구
-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주차시설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	주로 주차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주차하는 곳이 다르면 주로 주차하는 2곳에만 O표 합니다. ① 자가 주차장(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 내) ②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 ③ 노상 주차장(주차 구획된 곳) ④ 도로변, 골목길(주차 구획 안된 곳) ⑤ 공휴지(공터) ⑥ 기타()	이 가구는 자동차를 주로 어디에 주차하십니까? ·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주차하는 곳이 다르면 주로 주차하는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① 자가 주차장(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 내) ②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 ③ 노상 주차장(주차선이 그려진 곳, 거주자 우선 주차 포함) ④ 도로변, 골목길(주차선이 없는 곳) ⑤ 공터(공휴지) ⑥ 기타()
조사항목 정의	-	-	-	별표
자료공표 여부	-	-	-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주차 시설

(단위 : 천가구)

	계	자동차 미보유 가구	자동차 보유가구								복합 주차 시설	
			소계	단일 주차 시설						공터		기타
				소계	자가 주차장	영업용 · 건물	노상 주차	도로변	기타			
2000	14,310	5,976	8,334	8,234	5,786	208	389	1,549	273	30	100	
2005	15,889	6,124	9,761	9,549	7,352	217	543	1,272	134	31	212	

※ 2005 계에는 미상 포함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주차시설이 다양하므로 문항에 대한 정의 및 조사원 교육 강화 필요

별 첨

1. 2000(11. 주차 시설)

○ 주·야간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주로 주차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하되,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 이상이며 주차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소 2곳만 기입

2. 2005(7. 주차 시설)

○ 주·야간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가구에서 주로 주차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하되,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 이상이고 주차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주된 주차 장소 2곳만 기입합니다.

- 노외 주차장은 「②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비용을 받는 도로 유효 주차장은 「② 노상 주차장(주차선이 그려진 곳, 거주자 우선 주차 포함)」에 해당

항목번호 63 : 주인가구 및 주택 소유 여부

1. 조사실시년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	-	-	-	-	-	-	-	○	●

전수항목 : ●, 표본항목 : ○

2.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주인가구 여부는 주택에 관한 항목을 해당 주택에서 1가구만 조사
- 주택 소유 여부는 실질적인 주택소유 통계를 작성
- 주택보급률 산정 및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 제공

3. 관련항목(◎) 및 통계표(○)

- 타지 주택소유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가구

4. 조사표 내용 및 조사항목 정의

조사 년도	1990	1995	2000	2005
조사표 내용	-	-	<p>이 태은 이 집의 주인 또는 대표 가구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가구」는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독채로 세들어 살고 있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가구를 말합니다. ① 주인가구 ② 대표가구 ③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동거 가구 → 작성을 마칩니다. <p>↳ 3. 주택에 관한 사항(1~2)을 계속 작성합니다.</p>	<p>이 가구는 주인가구입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 없이 세 들어 사는 가구만 있는 경우, 그 중 주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가구가 대표가구가 됩니다. ·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가구주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인가구 ② 대표가구 ③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가구 → 작성을 마칩니다. </div> <div style="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 ② 다른 곳에 주택을 미소유 </div> </div> <p>↳ 3. 주택에 관한 사항(1~6)을 계속 작성합니다.</p>
조사항목 정의	-	-	-	별표
자료공표 여부	-	-	-	공표

5. 주요국 사례 및 국제권고안

	UN권고안	미국(2005 ACS)	일본(2000)	영국(2001)	캐나다(2006)
조사내용	-	-	-	-	-
조사항목 정의	-	-	-	-	-

6. 최근 조사결과

○ 타지 주택 소유 여부

(단위 : 천가구)

		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계	15,887	8,828	3,557	2,395	333	284	490
	타지주택소유	1,794	1,047	505	132	16	14	79
	타지주택미소유	14,093	7,781	3,052	2,262	317	270	411

7. 문제점 및 검토방향

○ 타지주택소유 여부 기준을 모든 가구원으로 확대할 필요

별 첨

1. 2000(16. 주인가구, 대표 가구 여부)

- 주인가가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세든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중 주택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합니다. 주인 또는 대표가구에 해당하면 주택에 관한 사항(17-21)을 계속 조사합니다.

2. 2005(11. 주인가구 및 주택 소유 여부)

- 주인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세든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하되,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중 주택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는 모든 가구에 대해 가구주나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 「① 주인가구」 또는 「② 대표가구」에 해당하면 「3.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 계속 조사